行政事務監査特別委員會會議錄

第37回平昌郡議會 第 1 號

平昌郡議會事務課

日 時 : 1995年 11月 27日(月) 10時00分

場 所 : 行政事務監査特別委員會會議場

議事日程 (第1次 監査活動)

1. 1995年度行政事務監査實施의件

審査된 案件

1. 1995年度行政事務監査實施의件

가. 企 劃 室 所管 ——— 5 面

나. 文化公報室 所管 ——— 34 面

다. 內 務 課 所管 ——— 51 面

라. 社會振興課 所管 ——— 72 面

(10時00分監査實施)

○ 委員長 金鍾永 :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평창군에 대한 199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것을 선언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오늘부터 6일간에 걸쳐 2대 의회로써 처음으로 집행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게 되었습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는 지방자치법 제36조 제1항및 동법시행령 제17조의 4의 규정

에 의거 평창군의 자치사무와 단체 위임 사무에 대하여 업무전반에 대한 실태를 파악하여 잘못된 점은 시정, 건의하고 '96년도 예산안 심사에 필요한 자료와 정보를 획득하기 위하여 실시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관점에서 위원여러분은 주민을 대표하는 의사 결정기관으로서 주민의 의사를 군정에 반영하고 주민을 위한 행정이 성실하게 추진될수 있도록 적극적인 감사활동을 전개하여야 하겠습니다. 아울러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도 성의있고 책임감 있는 답변을 통하여 상호 공감할 수 있는 문제점이 도출되어 앞으로의 군정수행에 널리 반영하는 전기가 마련될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를 아끼지 말아야 할것입니다. 또한 감사기간동안 의회와 집행부간에 불편한 점이 많이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만, 서로 이해와 타협으로 원만한 감사활동이 이루어져 소기의 성과를 거양할 수 있도록 동료위원 여러분과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많은 협조를 당부 드리며 간단하게 인사에 가름 합니다 감사 합니다.

---

1. 1995年度行政事務監査實施의件

(10時 02分)

○ 委員長 金鍾永 :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1995년도 행정사무감사실시의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박상만 부군수님의 인사말씀과 간부 소개가 있겠습니다.

부군수님 발언대에 나오셔서 인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副郡守 朴商滿 : 부군수 박상만 입니다.

존경하는 김낙운 의장님, 그리고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김종영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 평소 군정발전과 군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헌신적으로 의정활동에 전념해오신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특히, 제2대 평창군의회 개원이후 군정전반에 걸쳐 각별한 관심과 애정을 가지시고 고견을 아끼지 않으신데 대하여 다시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회기는 제2대 평창군의회 개원이후 첫번째 정기회의 행정사무감사와 예산안 심의등 금년도의 군정전반에 관해서, 아울러 96년도 우리군의 살림살이를 확정짓는 매우 중요한 기간이라고 생각합니다. 특히 금일부터 6일간 실시되는 행정사무감사는 저희 집행기관이 1년간 추진한 행정사무전반에 대하여 군민의 대의기관인 군의회에 보고하고 평가받는 기간으로서 그 어느때 행정사무감사 보다 더 그 의미가 더욱 크다고 생각합니다. 저희 집행기관에서는 금년 한해동안 업무추진에 있어서 주민의 욕구를 최대한 충족시키고 지역발전에 보탬이 될수 있는 방향에서 최대한 노력을 기울여 왔습니다만, 공무원의 안목과 경험의 부족등으로 공무원의 기대에 미흡한 행정을 추진한 점도 없지 않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따라서 이번 감사기간동안 행정전반에 대하여 잘못되었거나 추진이 미진한 사항에 대하여는 과감히 시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불합리한 사항에 대해서는 조언과 대안을 제시해 주시고 본 행정감사가 집행부 공무원은 물론 군정전반이 발전의 계기가 될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이번 감사에 대해서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신 행정사무전반에 대하여 나름대로 정성을 다해서 자료를 작성하여 제출했습니다만 미흡한 부분도 없지 않을 것으로 생각 합니다.

이부분에 대해서는 의원님들께서 제차 요구하여 주신다면 힘껏 보완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이번 행정사무감사기간에 위원님들의 풍부한 경험과 탁월한 식견으로 보살펴 주심과 아울러 군정전반에 대하여 지도편달을 당부 드리겠습니다.

저와 같이 일하고 있는 군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유재국 농촌지도소장님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농촌지도소장 인사)

다음은 신대송 기획실장입니다.

(기획실장 인사)

다음은 고창식 문화공보실장 입니다.

(문화공보실장 인사)

다음은 이영덕 내무과장 입니다.

(내무과장 인사)

다음은 송재명 사회진흥과장 입니다.

(사회진흥과장 인사)

다음은 권혁승 재무과장 입니다.

(재무과장 인사)

다음은 남대현 지적과장 입니다.

(지적과장 인사)

다음은 김영주 사회과장 입니다.

(사회과장 인사)

다음은 이경수 환경보호과장 입니다.

(환경보호과장 인사)

다음은 박정자 가정복지과장 입니다.

(가정복지과장 인사)

다음은 김시한 산업과장 입니다.

(산업과장 인사)

다음은 강경석 지역경제과장 입니다.

(지역경제과장 인사)

다음은 정의수 축산과장입니다.

(축산과장 인사)

다음은 홍기표 건설과장입니다.

(건설과장 인사)

다음은 권순철 도시과장 입니다.

(도시과장 인사)

다음은 김창길 민방위과장 입니다.

(민방위과장 인사)

다음은 손동흠 보건사업과장 입니다.

(보건사업과장 인사)

다음은 윤철준 사회지도과장 입니다.

(사회지도과장 인사)

다음은 이우형 기술보급과장 입니다.

(기술보급과장 인사)

이상으로 군 간부소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委員長 金鍾永 : 부군수님 수고 하셨습니다. 지금부터는 평창군의 소관별 감사를 실시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 진행은 먼저 감사대상 부서별로 증인선서가 있은 다음 감사대상 사무처리 상황보고와 질의. 답변을 한후 종료하는 것으로 진행 하겠습니다.

오늘 감사대상부서는 기획실,문화공보실 내무과,사회진흥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감사장 좌석 정돈을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지한후 계속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0時10分 監事中止)

(10時17分 監事繼續)

○ 委員長 金鍾永 : 좌석이 정돈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 하겠습니다.

가. 企劃室 所管

그러면 먼저 기획실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것을 선언 합니다.

먼저 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는 평창군의회가 '9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출석 증언하는 관계공무원의 엄정한 감사수행과 책임성 있는 답변을 듣기 위하여 지방자치법 제36조 제4항에 의거 하는것으로 만일 허위 증언을 하거나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하는 때에는 동법 제36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한 고발 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그러면 기획실장 나오셔서 선서후 서명날인하여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 企劃室長 申大松 : 선서, 본인은 평창군의회가 지방자치법 제36조의 규정에 의거 소관업무에 대한 9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것이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하고 이에 선서 합니다. 1995년 11월 27일

기획실장 신 대 송

(기획실장 서명날인후 선서서 제출)

○ 委員長 金鍾永 : 다음은 발언대에 나오셔서 감사대상 사무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企劃室長 申大松 : 기획실장 신대송 입니다. 보고에 앞서 먼저 기획실의 간부소개를 하겠습니다.

장하진 기획계장 입니다.

(기획계장 인사)

장헌평 예산계장 입니다.

(예산계장 인사)

송재춘 법무계장 입니다.

(법무계장 인사)

정장용 통계계장 입니다.

(통계계장 인사)

그럼 기획실에 대한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는 끝에 실음)

이상 기획실에 대한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委員長 金鍾永 : 기획실장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위원여러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李相薰 委員 : 이상훈 위원입니다. 행정감사 자료를 준비하여 주신데 대하여 실장님께 감사드리면서 94년도 예비비 지출현황을 보니까 일반회계 예비비 총예산액이 5억8,104만8천원중 지출액이 68.27%에 해당하는 3억9,600만원으로서 대단위 토지과표 업무보조비, 퇴직금외 16건에 지출하고 지출내용 업무보조원 퇴직금, 또 그리 급하지도 않은 봉평, 진부상수도 설계 용역비등으로 지출이 되었습니다.

당초 예산심의때에 관계공무원들이 다수 신경을 썼더라면 이런 예비비에서 무려 3억9,000만원이나 되는 돈을 마구 꺼내서 쓸수가 없지 않느냐, 그래서 이것은 본위원이 생각할때 예산편성 당시에 공무원들이 당초예산에 집어넣을것은 집어넣고 또 예비비라는 것은 본위원이 생각할때 성격상 쓸수 있겠습니다만 꼭 그렇게 봉평하고 진부상수도를 하는데 설계용역비까지 예비비에서 쓸수있는 그런 급한사항은 아니지 않느냐, 여기에 대해서 예비비에 대한 정의와 지출경위에 대해서 상세한 답변을 해주시고 그다음 불용액이 많이 생겼습니다.

9억3,200만원이라는 불용액이 생겼는데 이것도 아울러서 실장님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강조하고 싶은것은 예비비에 대한 정의와 경위에 대해서 소상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 企劃室長 申大松 : 이상훈 위원님께서 지적해주신 예비비에 대한 정의와 사용내용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방재정법 제34조에 보면 지방자치단체는 예측할수 없는 예산외의 지출또는 예산초과지출을 충당하기 위해서 예비비로서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금액을 계상하도록 되어 있고 다만 보조금이라던가 업무추진비라던가 특수활동비에 대해서는 제외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94년도에 3억9,600만원에 대한 예비비 결산액을 검토해보면 주로 퇴직금이라던가 이상훈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대로 봉평, 진부상수도 설계용역비에 대한것이 지금 계상이 되어 있는데 이 내용도 사실상 예산을 계상할때에 이런것을 예측해서 계상을 해야만 마땅한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일부 공무원에 대한 퇴직금을 계상했습니다만, 그때 그때 필요한 예측할수 없는 사항들이 계속 발생했기 때문에 예비비에서 지출을 했고 특히 봉평, 진부상수도에 대한 설계는 국비가 25억, 보광에서 25억이라는 돈을 지원 받을 계획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확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이를 사전에 대비코져 설계용역비를 계상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업이 책정되게 되면 자연히 부대비로써 설계용역을 해야만 마땅합니다만 이것은 사업이 책정되기 전에 설계를 먼저 마련해 놓고 거기에 대한 사업비를 충당하기 위해서 설계를 하다 보니까 예비비에서 부득이 사용을 했습니다.

다음 불용액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불용액은 포괄적으로 말씀 드린다면 저희가 당초예산에서 계상을 해가지고 절감예산을 편성합니다. 절감예산을 편성하게 되면 각 집행기관에서는 예산이 계상되었다 하더라도 절감예산에 대해서는 절감을 하도록 그렇게 계획하고 있고 그다음 1회, 2회추경을 하는 과정에서 사업을 추진하고 남은 잔액이라던가 기타 예산은 사전에 계상을 했다 하더라도 불요불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그런 사업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심사분석하는 기회를 통해서 저희들이 사정을 해서 당초에 불용액을 거의 없애고 이듬해에 넘어가는 순세계 잉여금에 대한 불용액은 어쩔수 없는 경비만 이듬해로 넘어가는 추세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내용도 점차적으로 줄여나가는 방향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 李相薰 委員 : 본위원의 정확한 자료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자료를 검토해 보니까 예산집행으로 발생된 불용액이 과반수 이상의 불용액이, 당초예산이

17억원인데 불용액이 9억3,000만원입니다. 그러니 예산편성 자체가 뭔가 잘못한것이 아니겠습니까? 이렇게 불용액이 많이 생긴이유는 예산편성에 문제가 있는것이 아닌가, 당초에 알맞게 해가지고 시행을 했어야 되는데, 그다음 또한가지 질문하겠습니다.

95년도 읍면자료를 보면 소규모 숙원사업, 과거에는 읍면장들 포괄사업비였는데 집행내용이 대다수의 면민들이 면장이 하는 사업내용을 전혀 모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소규모 숙원사업 5,000만원씩 배정이 되는데 이것을 당초 읍면장들이 포괄사업비에 사업계획서를 군에다 제출 합니까?

○ 企劃室長 申大松 :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94년도까지는 포괄적으로 계상이 되었다가 95년도에는 3년간 사업집행에 대한 실적을 감안해서 부기를 명시하도록 되어 있어가지고 95년도에는 5,000만원 범위내에서 세부사항으로 부기를 명시했던것이 지난번 추경때 예산심의때도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그것이 사실상 집행하는 과정이 불합리 하다보니까 지난번에 정리를 했습니다만, 96년도 예산에서 다시 포괄적으로 일괄 계상이 되어가지고 금년도 보다는 문제점이 없겠습니다만, 당초에는 저희들이 보고를 받습니다.

○ 李相薰 委員 : 그래서 제2회 추경예산안 심의과정에서 본위원이 부기변경에 대한 문제로 실장님께 말씀드린 기억이 나는데 사업계획서를 제출했으면 감독은 누가 합니까?

○ 企劃室長 申大松 : 사업에 대한것은 일단 읍면장 책임하에 사업을 추진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 李相薰 委員 : 감독관청은 ?

○ 企劃室長 申大松 : 감독은 군에서 하구요. 읍면장의 모든 행정집행사항에 대해서는 군수가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 李相薰 委員 : 내가 감사자료에 요구를 하지 않았는데 추후에 읍면장들의 사업계획서를 사본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企劃室長 申大松 : 95년도 것을 말씀

하시는 겁니까?

○ 李相薰 委員 : 네.

○ 企劃室長 申大松 : 알겠습니다.

○ 李相薰 委員 : 그리고 면장 포괄사업비라 하면 이장이나 개발위원회라던가 자생단체 이런 사람들을 모아놓고 사실 우리면은 어떤 소규모 숙원사업을 하겠다 하고 공개행정을 해야 하는데 면장이 무슨사업을 하는지 전혀 내역을 모르고 있습니다. 이런것도 명년도부터는 사업계획서를 받는다고 했으니까 시험과정에서 주민들과 대화를 나누어서 공개행정을 할수 있도록 선처해 주시기 바랍니다.

○ 企劃室長 申大松 : 그내용은 이상훈 위원님께서 말씀이 계셨습니다만, 어느 면장에 해당되는지는 자세히 모르겠지만 그렇다면 면장에 문제가 있지 않는가 생각됩니다. 면장이라면 당연히 자기 지역내에서 이루어지는 사업에 대해서는 이장회의라던가 그다음 지역의 다른 체널을 통하여 당연히 공개를 하고 사업계획서를 작성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계속적으로 그런 해당되는 읍면을 지도 감독을 철저히 하겠습니다.

○ 李相薰 委員 : 이상입니다.

○ 禹康鎬 委員 : 우강호 위원입니다. 26쪽을 보아주시기 바랍니다.

94년도 예비비지출 현황인데 5.19 이상저온현상 피해작물 대파대 지원 3,698만 2천원 산업과, 또 벼 물바구미 대파대 지원 780만원 산업과, 그다음 28쪽입니다. 건설과소관에 수해복구 응급복구 비지출 8,300만원, 측량여비지출 772만 5천원, 환경보호과소관 평창읍쓰레기매립장범람에따른 농작물피해보상210만5천원인데 건설과 것은 나중에 건설과에다 직접 여쭈어 보겠습니다.

94년도 예비비에서 피해작물 대파대에 지원했던 것은 어떤 명분에서 지원했던 내용입니까?

○ 企劃室長 申大松 : 그러니까 94년도 5월 19일 그기간동안에 저온현상이 계속되어가지고 작물에 피해를 입었습니다. 수도작에 대한 피해를 입어가지고 수도작의 피해를 입은 농가에 대해서는 대파

대를 지원하도록 기준이 책정이 되어가지고 거기에 대한 예산을 지원했고 마찬가지로 벼물바구미 대파대 지원도 수도작에 대해서 벼물바구미가 만연되어가지고 피해가 났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대파대로 예비비에서 지출했습니다.

○ 禹康鎬 委員 : 이상 저온현상을 천재지변으로 봐서 예비비에서 지출한것 입니까?

○ 企劃室長 申大松 :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평창군 현상이 아니라 이것은 강원도에 기준이 같이 책정된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라서 피해작물별 대파대를 지원했습니다.

○ 禹康鎬 委員 : 그러면 평창읍 쓰레기 매립장 범람에 따른 농작물 피해보상 210만5천원인데 군정질문에서도 말씀 드렸지만 피해에 따라서 210만5천원을 수박밭을 보상했는데 이것도 실질적으로 공공시설물의 피해로 인해서 보상이 되었지만 실질적인 보상내용은 천재지변으로 인한 수해피해로 210만5천원이 예비비에서 지출된것이 아닙니까?

○ 企劃室長 申大松 : 먼저 국가배상법의 내용을 간략하게 말씀 드리겠습니다. 국가배상법 제5조에 보면 공공시설등의 하자로 인한 책임, 도로, 하천, 기타 공공의 용적물의 설치 또는 관리에 하자가 있기 때문에 타인에게 손해를 발생하게 하였을때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라고 규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 규정에 의해서 예비비에서 지출을 했습니다.

○ 禹康鎬 委員 : 제가 다시 원리원칙으로 말씀 드리겠습니다. 이러저러한 이유, 천재지변이던, 공공시설물이던 이러저러한 이유를 들어서 예비비에서 각 과별로 지원된 부분이 상당히 많이 있는데 유독 임도피해 시설에 대한 농작물 피해보상은 어떠한 면으로 예비비에서 지출해줄수 있는 방법을 강구해 보실 생각이 없는지요.

○ 企劃室長 申大松 : 기획실장 입장에서는 우강호 위원님께서 질문한 내용에 대해서는 국가에는 배상심의회라는것이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사전에 소송을 제기하지 않고 그러니까 강원도 같으면 강원도 춘천지방검찰청내에 배상심의회가 구성되어 있습니다. 배상심의회에다가 손해배상 청구를 하게되면 거기에 따라서 결정을 해주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배상심의회에서 이것은 천재다, 인재다 라고 판단이 되고 지급해줘라 하고 판결이 나게 되면 저희가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예산을 편성해서 지원해 줄수 있고 거기에서 이것은 지원해 줄수 없다라고 할때에는 다시 행정소송을 제기할수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여기서 객관적으로 판단을 했을때는 그것을 인재아닌 천재로 보기 때문에 현재까지는 보상을 못해주고 있기 때문에 국가배상심의회 같은 기구를 이용해 주시면 좀더 소송비용도 안들고 또 객관적으로도 주민들도 수긍이 갈수 있는 명확한 답변자료가 되지 않겠는가 생각됩니다. 그런것을 이용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 禹康鎬 委員 : 천재이기 때문에 보상이 안된다는 겁니까?

○ 企劃室長 申大松 : 그렇습니다.

○ 禹康鎬 委員 : 그러면 26쪽에 관한 이상저온현상 피해작물 대파대 지원에 대해서 기획실장께서 분명히 천재지변으로 인해서 보상이 되었다 라고 답변하셨습니다. 똑같은 천재인데 왜 산업과 소관은 보상이 되고 산림과 소관은 보상이 안됩니까? 그것도 예비비에서,

○ 企劃室長 申大松 : 그것이 농작물피해보상이라던가 그것은 관계법령에 나오는 지금 우강호 위원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는 사실상 도로가 유실이 되어가지고 농경지를 범람시켜서 피해를 입은 것이고 이것은 저온현상이 오랫동안 계속 되므로써 결실이 안되었기 때문에 법으로 명시되어 있기 때문에 이런 사항에 대해서는 대파대, 종자대, 비료대 이런것을 지원해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기준을 잡았을 뿐이지 이것을 구분해가지고 어디는 지원해주고 어디는 지원해주지 않는다는 개념은 없습니다.

○ 禹康鎬 委員 : 똑같은 천재지변인데 똑같은 농민이 보상을 못받으니까 이것은 문제가 있다고 생각되기 때문에 제가 여러번, 군정질문이든 현지조사에서도 말씀드렸는데, 그러면 쓰레기매립장침출수 210만5천원 보상은 확실하게 공공시설물 피해보상규정에 의해서 지급했습니까?

○ 企劃室長 申大松 : 국가배상법에 의해서 했는데 그전에 답변을 하기전에 5월 19일 냉해피해농가 특별지원 관계를 자세하게 말씀 드린다면 5월 19일날 이상저온이 계속 되어서 피해를 입었는데 도비가 25%, 군비가 25%, 자부담50%로 소생불능 면적에 대한 대파대를 지원하도록 그렇게 계획이 되었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그때당시에 마을협의회등을 구성해가지고 자율적으로 조성토록 해가지고 민원이 야기되지 않도록 하라는 지시가 와서 지원이 되었고,

○ 禹康鎬 委員 : 그럼 그때 관선시대때도의 지침에 의해서 그렇게 보상을 해준겁니까?

○ 企劃室長 申大松 : 도비의 지원이 있었습니다. 종자대, 대파대의 도비지원이 25%가 있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군비부담금 25%를 예비비에서 지출을 했습니다.

○ 禹康鎬 委員 : 그러니까 피해자도 똑같은 농민이고 수해자도 똑같은 농민인데 형평의 원칙에 상당히 어긋난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 企劃室長 申大松 : 물론 우강호 위원께서 지난 군정질문때도 말씀하셨습니다만, 저희가 그내용에 있어서 보상할 방법이 있으면 나름대로 해드릴려고 계획을 잡고 여러가지 법규도 연찬을 했고 타시군에도 전화로 문의를 해가지고 이런내용을 알아봤습니다만, 지금 다른군도 마찬가지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말씀드린 국가배상심의회란 기구를 거친다면 가장쉽게 농민들도 이해할수 있지 않은가 생각되기 때문에 그 내용에 대해서는 그렇게, 절차를 잘 모르신다면 저희 기획실에서 그 절차를 밟아가지고 농민들의 대행을 해드리겠습니

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 禹康鎬 委員 : 그러니까 천재로 인한 보상도 실장님께서 말씀하신 배상심의위원회를 거치지 않고 3,600만원을 지원하고 공공시설물에 의한 피해보상도 210만 5천원을 그런것을 거치지 않고 다해주었는데 유독 임도피해시설 농작물에 대해서만 지원이 안된다는것이 이상하잖아요

○ 企劃室長 申大松 : 3,600만원에 대한 것은 법상 지원해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 禹康鎬 委員 : 예비비에서 지출해줬는데 법상지원이 어디 있습니까?

○ 企劃室長 申大松 : 법상 지원해 주도록 되어 있는데 예산이 계상되지 않았기 때문에 도비 25%가 지원이 되었기 때문에 예비비에서 25%를 지원한것 뿐입니다 꼭 예비비에서 지원해주라는 것은 없습니다. 예산이 계상되지 않았기 때문에 도비는 내려왔고, 그래서 군비에서 25%를 부담을 해야하기 때문에 예비비에서 지원을 한것입니다.

○ 禹康鎬 委員 : 그럼 기획실에서 예비비에서 산림과하고 협의를 거쳐서 천재지변으로 인한 보상도 제가 말씀드렸던 그런 행정절차를 거치지 않고 공공시설물로 인한 피해보상도 그런절차를 거치지 않고 실지 보상이 가능하다면 한번 연구해볼 필요가 반드시 있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부분에 대해서는 각별한 관심을 가지고 다시한번 해주시기를 제가 부탁 드리겠습니다. 안된다는 자체가 모순이라고 생각 합니다.

그다음 28쪽에 산불우범지역 유급감시원 인건비 지출이 무려 8,100만원이 예비비에서 지출되었는데 이렇게 많은 돈이 당초예산에 편성이 안되었습니까?

○ 企劃室長 申大松 : 산불우범지역 유급감시원에 대한 일용직으로서 각읍면별로 배치되어 있는 유급감시원은 사전 당초예산에 인건비를 계상합니다. 그런데 이것은 공익근무요원 80명이 배정되어 계상이 되었는데 공익근무요원 8명만 인건비에서 나가고 72명은 유급감시요원으로 배치를 했기 때문에 72명에 대한 인건비로 8,160만원이 지출되었습니다.

○ 禹康鎬 委員 : 8,160만원이 적은돈이 아닌데 이것이 왜 당초예산에 안들어 있고 예비비에서 이렇게 많은돈이 지출이 되었는지?

○ 企劃室長 申大松 : 그것은 당초에는 공익근무요원으로 하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산불감시라던가 하천감시라던가 이런것을 과거에는 유급감시요원을 주도록 되어 있었는데 95년도는 공익근무요원제가 생기면서 공익근무요원으로 쓰라는 계획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공익근무요원으로 계획을 했는데 산불발생시기가 도래했는데도 불구하고 공익근무요원들이 평창군에 배정된 인원이 8명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부득이 일반인으로 유급감시요원을 다시 채용하다 보니까 예비비에서 지출하게 되었습니다

○ 禹康鎬 委員 : 최초로는 공익근무요원이 80명정도 배정받을 것이였는데요?

○ 企劃室長 申大松 : 계획이 그랬었는데 공익근무요원이 자원이 굉장이 많을 것으로 저희 민방위과에서 계획을 짜가지고 교통감시요원 이라던가 산불, 하천감시로 되어 있었습니다만, 아직까지는 평창군에 자원이 부족하다 보니까 자원이 제대로 들어오지 못하고 있습니다.

○ 禹康鎬 委員 : 다음 32쪽입니다. 평창 소방안전기동대 장비구입 600만원은 어떤장비를 구입했습니까?

○ 企劃室長 申大松 : 저희가 장비명은 하나하나 구체적으로 파악을 못했습니다만 주요장비는 보트라던가 그런것을 구입하는것이 가장큰 장비대가 아닌가 생각 합니다.

○ 禹康鎬 委員 : 활동사항은 어느정도입니까?

○ 企劃室長 申大松 : 인명구조 실적에 대해서는 제가 정확히 모르겠습니다. 여름철에는 계속 평창강 옆에다가 초소를 지어놓고 계속적으로 상근을 하고 있습니다. 평창강은 물론이고 인근지역에서도 인명 익사자라던가 이런 연락이 오면 즉각 출동을 해서 구조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 禹康鎬 委員 : 장비를 600만원어치 사주고 급식비라 해가지고 200만원 100

만원 이렇게 지급을 했는데 실질적으로 구분이 안전사고예방및 수상기동대원 급식비 200만원 그뒷장에도 보면 100만원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렇게 많은 예산을 투자해가지고 평창강에만 집중적으로 한다는 것은 상당히 전체적인 군민 수혜차원에서 문제성이 있다고 생각되서 제고 검토를 말씀 드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한가지 더 여쭈어 보겠습니다.

풀보상금 지원내역에 일본어교육 초빙강사수당이 94년도에는 35만원 95년도에는 40만원씩 지급되고 있습니다.

지금 일본어교육을 하고 있습니까?

○ 企劃室長 申大松 : 네. 하고 있습니다.

○ 禹康鎬 委員 : 어디서 합니까?

○ 企劃室長 申大松 : 4층 전산실에서 하고 있습니다.

거기서 매일 아침에 하고 있습니다.

○ 禹康鎬 委員 : 강사는 어느분이 하고 있습니까?

○ 企劃室長 申大松 : 일본여자인데 통일교에 다니시는 분입니다.

○ 禹康鎬 委員 : 물론 좋은 아이템을 가지고 교육을 받으시지만 엄격하게 강사수당을 지급해 가면서 다른곳에서 강의를 한다는것은 사회교육법상 엄격한 불법입니다. 지출했을때 예를들어서 평창군수를 상대로 해가지고 형사고발을 하게 되면 반드시 처벌을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참고로 해주시기 바라고 지정된 교육장소외에, 인가받은 교육장소외에서는 교육을 못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장소를 옮겨서 교육할때는 교육청에 다시 승인을 받도록 되어 있는데 교육청에 승인받은 학원의 강사도 아니고 여러가지 문제점이 반드시 있다고 보는데 다른곳도 아니고 군청에서 이러한 원인행위들이 이루어 진다는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또 강사하시는 분이 얼만큼 유능하시고 강사 자격을 가지고 있는지는 모르지만 그부분도 심도있게 검토를 해보시는 것이 필요할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몇분정도 받으십니까?

○ 企劃室長 申大松 : 당초에 시작할때

에는 35명정도 했습니다만, 현재는 15명 정도 되는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禹康鎬 委員 : 주로 어떤내용의 강의를 받습니까?

○ 企劃室長 申大松 : 기초부터 시작해 가지고 중급까지 하고 있습니다. 일부 잘하는 직원들은 상당한 수준에 도달하고 있고 사실상 수당관계는 공무원들도 영어나 중국어나 일본어 관계 하나쯤 알아야 되겠다라는 차원에서 각시군 자치단체별로 하고 있습니다만 우강호 위원께서 지적해 주신대로 사실상 일반 사설학원을 가서 강의를 받아야 하는데 그렇다 보면 공무원들에 대한 수강료도 물론 문제이지만 시간적으로 여유가 되지 않기 때문에 이루어 지지 않습니다.

지금 일본어 강사는 순수한 일본사람으로서 일본에서 대학까지 나온사람이고 그다음 과거에도 평창에 오기 전에도 강의를 했던 경험도 있고 그래서 저희가 평창읍에 거주하고 있기 때문에 희망하는 공무원들을 대상으로 하다보니까 수당을 지급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위배된다라고 한다면 다시 검토를 해서 시정을 하겠습니다.

○ 禹康鎬 委員 : 법에 분명히 위배되고 있는 사항입니다.

○ 企劃室長 申大松 : 그 내용을 잘 몰랐습니다.

○ 禹康鎬 委員 :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 劉燉文 委員 : 유돈문 위원입니다.

군수 포괄사업비 94년도를 볼것같으면 주민의 숙원사업에 지출되어야할 예산이 타 공공기관에 또 목적외 사업에 지출된 바 있는데 이로 인해서 주민의 숙원사업이 많이 손해를 본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95년도에는 또 추가로 94년도에 타 목적에 지출된만큼 추가가 되어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81쪽을 보면 소규모 숙원사업이라고 자료가 나와 있는데 이것이 군수포괄사업비하고 목적이 같습니까?

○ 企劃室長 申大松 : 네.

○ 劉燉文 委員 : 그러면 여기에 3,000만원이 숙원사업에 의해서 작년 94년도

타지역 기관에 제출된것에 중한것인지 아니면 물가상승으로 해서 우리가 95년도에 숙원사업에 더 증액된 금액인가 어떻게 생각하면 물가상승에 의한 3,000만원의 더 증액이라면 작년 94년도 공공기관에 투자된 2,400만원, 나머지 샛강살리기라던가 보건의료원에 지출된 금액은 당연히 숙원사업비에서 나가지 않아야 될 돈이 나갔기 때문에 95년도에는 그만큼 더 계획을 했어야 하는데 안되있는 것으로 생각되어 본위원이 질의를 드립니다.

○ 企劃室長 申大松 : 군수포괄사업비가 94년도에는 2억4,000만원이고 95년도에는 2억7,000만원은 3,000만원 계상은 저희가 임의로 계상한것이 아니라 예산편성지침에 의해서 그만큼 증액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96년도에는 5억으로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유돈문 위원님께서 지적해주신 94년도 공공청사시설 개보수, 샛강살리기, 보건의료원 당직실 창문설치비를 말씀드리기 전에 소규모 주민생활 편익사업의 성격을 예시를 간략하게 말씀드린다면 노후보도블럭 정비라던가, 하수도정비, 그다음 가로등이라던가 방범등 설치 보수, 공동수도라던가 도로정비, 소하천정비, 마을회관, 경로당, 그다음 여러사람이 쓸수 있는 그런 시설물 등에 대해서 계상하도록 되어 있는데 운교지서 담장 2,400만원은 국도변에 위치하고 있고 사실상 방범상 문제가 되어 있다고 생각이 되었고, 또 경찰서에서는 이만한 경비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갔는데 이런내용은 앞으로 시정을 해서 이런곳에 반복되는 지원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 劉燉文 委員 : 본위원이 왜 이런 말을 드렸나 하면 미탄면사무소 청사는 83년도에 지었습니다. 그런데 지금현재까지 울타리가 없는 실정입니다. 그러면 집행부에서 관장하는 기관에다 이것을 해줘야 되는데 왜 여기까지 갔느냐 하는것이 의문이나 질의를 드린것입니다.

○ 企劃室長 申大松 : 미탄면청사 담장 관계는 제가 정확하게는 답변을 못하겠

습니다만 아마 담장설치가 불필요하지 않겠느냐 생각되는것 같기도 하고 그다음 만일 미탄면청사에 담장이 필요로 하다면 예산을 계상해가지고 담장설치를 해야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劉燉文 委員 : 지금 현재 미탄에 피로연장 있는 쪽으로는 허허벌판 입니다. 그래서 지금 아무래도 올지훈련이나 이런것을 할때보면 면사무소 직원들이 아주 양팔을 벌리면 닿을정도로 훈련이니까 예고하고 하니까 그렇지만 서있는 상태 입니다.

이런것을 보았을때에는 그 기관에 담이 없기 때문에 그렇게 서서 근무를 해야된다 이렇게 본위원이 알고 있는데 이런것은 벌써 면사무소 지은지 몇년이 흘렀는데도 이런것 까지 조사가 안되었다 하면 집행부에서 관심이 없다고 본위원은 생각 됩니다.

여기에 대해서 계획있게 잘 해서 면사무소 같은곳에 부족함이 없이 지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 企劃室長 申大松 : 알겠습니다.

○ 李慶鎭 委員 : 이경진 위원입니다. 30페이지를 보시면 풀보조금 지원내역 해가지고 재향군인회 6.25행사 보조금 안승준으로 150만원이 있습니다.

그리고 바로 뒷장에 보면 제45주년 6.25 행사 보조금 안승준해서 500만원은 어떤 차이점이 있어서 그렇게 되었는지 설명을 해주시고 그다음 가축방역관 보수교육해서 이상설 앞으로 25만원이 한번 지출이 되었었고 그다음 40만원이 지출이 되었었습니다. 그것이 어떤 차이가 있는지를 말씀해 주시고 아울러 가축방역관 보수교육 27만원이 나병무씨 앞으로 지출이 되었었습니다. 그내용에 대해서 궁금하고, 한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38페이지에 보면 농어촌발전심의회 참석수당 김현준 57만원, 농어촌발전심의회 참석수당 김현준 21만원, 또 밑에 18만원 또 57만원은 각각 차이들이 많이 있는데 그 차이점과 특히 발전협의회를 운영하면서 실적이라던가 필요성이 과연 있는지, 왜냐하면 합해보면 153만원이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보기에는

얼만큼 필요성이 있는지 운영실적이 어떤지 그부분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企劃室長 申大松 : 답변드리겠습니다 재향군인회 6.25행사 보조는 94년도 150만원은 저희가 사업계획서를 그당시에 규모라던가 이것을 검토해서 150만원을 지원했는데 나중에 500만원은 95년도의 것입니다. 이것은 도로부터 6.25행사 45주년 행사를 대대적으로 하라는 계획에서 행사규모라던가 이런것을 확대를 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따라서 500만원이 증액 지원이 되었습니다.

그다음 농어촌발전심의회 참석수당은 모든 농수산사업계획서를 수립 해서 도에다가 확정을 해 보고를 해서 통보를 하기 전에는 반드시 농어촌발전심의회의에 의결을 거쳐서 도에 진달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평창군이 농수산관계 시범군이기 때문에 그래서 57만원짜리는 전체의원, 그러니까 농어촌발전심의회 전체인원에 대한 수당이고 적은것은 분과별로 위원회를 개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분과별 위원회를 개최할 때에 참석수당으로 알고 있습니다.

중빙관계는 필요하시다면 저희가 감사가 끝난다음에 별도로 해서 제출하겠습니다

○ 李慶鎭 委員 : 그렇게 보여 주십시요 그리고 95년도 6.25행사 500만원에 대해서 군비가 지출된 사항은 있습니까?

○ 企劃室長 申大松 : 500만원은 군 보상금입니다.

○ 李慶鎭 委員 : 94년도와 95년도는 왜 그렇게 대대적으로 해야하는 특별한 이유가 있었습니까?

○ 企劃室長 申大松 : 특별한 이유는 95년도에는 45주년 6.25행사를 대대적으로 전개할 계획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도로부터 지시도 있었고 그다음 행사 규모도 확대해서 하다보니까 그래서 증액되어 지원이 되었습니다.

○ 李慶鎭 委員 : 가축방역관 보수교육에 대해서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企劃室長 申大松 : 가축방역관 보수교육은 수의사에 대해서 보수교육을 강원도에서 교육기관에 입교토록 그렇게

지시가 되어 민간에 대한 교육이 국가에서 시행하는 교육에 참석하는 여비에 대해서는 해당되는 자치단체에서 부담하기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서 거기에 대한 교육여비로서 25만원이 되겠습니다.

○ 李慶鎭 委員 :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이상설씨가 교육장소가 틀리는지는 몰라도 한번은 25만원이고 또한번은 40만원이고 또 한번은 나병무씨로 해서 27만원이고 전부다 틀리기 때문에 어떤 경우에 이런 차이가 있는지 궁금해서.....,

○ 企劃室長 申大松 : 그것은 교육기간이 주로 이유가 되겠고, 나병무씨하고 저희들이 교육을 가게되면 차마임이라던가 이런 거리를 계산하게 되어 있고 그 다음 급지별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1급지 서울이냐 그다음 도청소재지나 이런것이 있기 때문에 이것도 필요하시다면 해당되는 자료를 복사를 해서 추가로 드리겠습니다.

○ 李慶鎭 委員 : 그 자료를 볼수 있도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 金斗經 委員 : 김두경 위원입니다. 42페이지 행정소송 접수현황에 대해서 2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군수가 소송사건별로 변호사를 선임하였는지요?

○ 企劃室長 申大松 : 고문변호사가 위촉되어 있습니다.

저희가 매월 15만원씩 고문변호사 수당을 지급하고 있고 법률자문을 변호사를 통해서 자문을 구하고 있습니다.

○ 金斗經 委員 : 고문변호사가 적극적으로 대처할수 있는것이 있습니까?

○ 企劃室長 申大松 : 네. 있습니다. 고문변호사는 평창군에 국한되어 있는것이 아니라 일반인들도 소송수행을 전담하고 있는 그런 변호사이기 때문에 원고측에서도 서고 피고측에서도 서고 전반적인것을 다하고 있습니다.

○ 金斗經 委員 : 논노가 2차에 걸쳐서 부도를 만나고 있는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에 대해 앞으로 대책은 군에서 어떻게 세워가지고 있는지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企劃室長 申大松 : 그내용은 재무과

장이 답변을 해드릴 사항입니다만, 저희가 서두에서도 소송수행 전반에 걸쳐서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논노상사에 대해서도 군에서 일단 피고입장에서 승소는 가능하기 때문에 법원의 판결에 따라서 채무확정을 해야하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됩니다. 그래서 현재까지는 그사람들이 부과에 대한것이 부당하다고 이의를 제기해서 소송을 냈기 때문에 판결이 난후에 논노와 지방세징수 강제징수법에 따라서 징수를 해야되지 않겠나 생각 합니다.

○ 金斗經 委員 : 이에 대해 변호사를 고문변호사외에 다른 일반변호사를 선임해가지고 여기에 대해 적극적으로 대처해야 된다고 이렇게 생각됩니다.

○ 企劃室長 申大松 : 저희 고문변호사라 할지라도 일단 수임료를 일단 부담합니다. 부담하기 때문에 일반변호사를 선임했을때 보다 사실상 수임료를 싸게 할수 있고 또 그분이 고문변호사라 하고 수임료가 적다고 해도 소홀하거나 그런것은 없습니다.

○ 金斗經 委員 : 잘 알았습니다.

다음은 군수 포괄사업에 대해서 한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94년도 군수포괄사업비가 유일하게 8개 읍면중에 봉평면만 하나도 집행된 사실이 없는데 봉평면에서 사업계획이 없어서 집행이 안되었는지, 집행규정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企劃室長 申大松 : 그것은 년도별로 군수포괄사업비에 대해서는

읍면장이 소규모 사업을 하기는 해야겠는데 민원사항이 발생했는데도 불구하고 예산이 없어서 미처 처리를 못한 사항에 대해서는 관계과를 통해서 군수께 보고를 합니다. 보고를 하게 되면 관계과에서는 계획서를 가지고 기획실에 와서 같이 협조를 하도록 되어 있는데 94년도에 없다는 자체는 봉평면에서 요구가 없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1,000만원이 한번 나갔었는데 한번 사업일실로 해가지고 다시 반납된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金斗經 委員 : 앞으로는 군에서 형평

에 어긋나지 않도록 골고루 읍면마다 배정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企劃室長 申大松 : 알겠습니다.

○ 金鍾永 委員 : 김종영 위원입니다.

78페이지에 도로관리 현황에 대해서 질의 하겠습니다.

대개 도로관리 현황을 보면 총25건의 노선이 있는데 고속도로, 국도, 지방도, 군도, 그런데 고속도로, 국고하고 지방도는 가까이 다 해당기관에서 제설작업이 원만하게 이루어지고 군도16개 노선이 있는데 우리 현재 군 재설장비 차량이 상당히 부족합니다.

몇년전에 소방차에다가 앞에 제설기구를 설치를 했습니다만, 그것은 사용해보니까 아주 불가능 합니다. 자동차의 힘도 모자랄뿐 아니라 능력상 여러가지로 봐서 불가능합니다. 그런데 지금 여기는 고속도로라던가 국도라던가 계획이 나와 있는데 지금 우리 평창군은 상당히 오지마을이 많고 또 산이 높다보니 골이 깊고 그래서 상당히 눈이 많이 오는 지역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지역에는 상당히 어려울때가 많이 있는데 여기를 보면 오지마을에 대한 설해대책이 없는데 어떤 대책을 가지고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企劃室長 申大松 : 78페이지에 나와 있는 도로관리 현황은 그전에 종합월동대책을 11월 1일부터 96년 2월 28일까지 종합월동대책을 수립해서 추진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저희 기획실에서는 자료를 냈습니다만 월동기 저탄량 확보라던가 그다음 연탄의 안정적 공급이라던가 석유가격의 적정판매라던가 이런 가스류라던가 종합적인 각 실과소에서 추진되어 있는것을 저희 기획실에서 취합을 해가지고 정상적으로 추진이 되느냐 안되느냐를 평가를 하고 심사를 해가지고 정상적으로 추진이 안되는 사항에 대해서는 촉구도 하고 그런 역할을 하는 곳입니다. 그래서 도로관리 현황은 주무과가 아닌 건설과에서 나오기 때문에 위원장님께서 질문한 내용에 대해서는 건설과의 감사시때 자세히 물어봐 주시

면 고맙겠습니다.

○ 金鍾永 委員 : 알겠습니다.

○ 禹康鎬 委員 : 우강호 위원입니다. 기획실 소관이기 때문에 제가 다시한번 질의하겠습니다.

기획실 법무계 사무 소관에 보면 규칙.훈령.예규에 제정및 개.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지난 저희 2대의회에서 8월 25일날 저소득주민 생활안정기금, 이번 군정질문에서도 상당히 심각하게 지적했던 문제인데 기획실 소관에 제정및 개.폐가 되어 있는데 왜 이부분에 대해서 제대로 하지 못했습니까?

○ 企劃室長 申大松 : 규칙은 해당실과소에서 규칙을 제정을 해가지고 저희 기획실의 법무계는 조례안에 대해서는 심의를 합니다. 해가지고 이것이 법에 어긋나지 않느냐, 상위법에 저촉이 되지 않느냐 이런것을 해가지고 해당되는과의 조정역할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1차적인 규칙안을 작성하는 부서는 해당되는 실과소가 1차적으로 작성이 되어야 합니다. 저희가 이런것까지 작성하지 않습니다. 다만 아까 말씀드린대로 작성된 안에 대해서 검토를 해가지고 문제가 있느냐 없느냐 판단을 해주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 禹康鎬 委員 : 안자체가 안올라 왔으면 기획실에서 그안이 올라오지 않느냐고 확인해볼 필요는 없습니까?

○ 企劃室長 申大松 : 사실상 그것은 미처 못했고 저희들도 지금껏 다루면서 어귀상이라던가 자구상의 문제점만 찾아가지고 조정을 했기 때문에 그런내용은 미처 발견되지 못했습니다. 다시한번 사과의 말씀을 드리고 앞으로 그런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 禹康鎬 委員 : 알겠습니다. 다음은 94년도에 명시이월에 31건, 사고이월이 58건입니다. 94년도, 95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에 보면 있는데 실질적으로 명시이월 31건, 사고이월 58건중에서 95년도에 마무리가 되지 않고 96년도로 이월될것이 몇건이나 됩니까?

○ 企劃室長 申大松 : 사고이월은 다시

이월될수 없습니다. 명시이월일때는 1차적으로 사고이월을 다시한번 있습니다. 현재까지 명시이월 조서를 당초예산 편성때 같이 의회에다 통보를 해야됩니다만 금년도에는 아직 국도비가 확정되지 않았고 수해복구 사업도 아직 확정되지 않았기 때문에 저희가 마지막 추경때에 명시이월 조서를 해서 의회에다 상정을 합니다. 그런데 현재까지 95년도에 이월했던 사업중에는 다시 사고이월이 다시 사고이월되는 그런 사업은 없습니다.

○ 禹康鎬 委員 : 그럼 31건이 완벽히 마무리가 되었습니까?

○ 企劃室長 申大松 : 94년도것 말입니까?

○ 禹康鎬 委員 : 그러니까 94년도에서 95년도로 넘어온 사고이월 31건,

○ 企劃室長 申大松 : 그것은 주로 연말에 마지막 추경무렵에 수해복구 사업이라던가 국도비사업 추가내시되었던 이런 사업이 이월이 됩니다. 95년도에도 수해복구사업이 이제 확정되었기 때문에 전부다 이월이 될 그런입장에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건수는 많습니다만, 내용을 하나하나 분석해 보시면 전부다 연말 3회추경때 사업비가 확정되었던 그런 사업들입니다.

○ 禹康鎬 委員 : 횡계교 가설도 94년도에서 95년도로 이월이 된것인데 올해안에 마무리가 가능합니까?

○ 企劃室長 申大松 : 가능합니다. 접속부분 도로만 안되지 도로자체는 완공되는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禹康鎬 委員 : 명시이월조서는 언제쯤 나옵니까?

○ 企劃室長 申大松 : 95년도 3회추경 제출때 명시이월조서를 같이 첨부합니다

○ 禹康鎬 委員 : 그럼 이번회기중에 나오는 겁니까?

○ 企劃室長 申大松 : 네.

○ 禹康鎬 委員 : 그다음 평창군 종합개발10개년계획 확정에 대해서 본위원이 질문했던 내용입니다. 실지 계획승인이 94년 11월 28일날 나서 12월 31일날 공고를 하셨는데 거의 주요계획이나 세

부 추진계획에 의해서 96년도 예산이 편성이 되었는지?

○ 企劃室長 申大松 : 평창군 종합개발계획 10개년계획은 세부사항 까지는 여기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지난번에 군정질문때도 제가 답변을 했습니다만 제3차 국토개발종합계획, 강원도종합개발계획을 기본 바탕으로 해가지고 계획을 세웠는데 평창군을 일정한 권역으로 구분해가지고 앞으로 어떠한 방향으로 이것을 발전시키겠다, 그러기 위해서는 평창권에는 어떠한 사업들을 앞으로 민자 또는 이런것을 유치해서 하겠고, 그 다음 진부권은 어떤 방향으로 추진하겠다는 포괄적인것으로 계획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국가나 강원도에서도 모든 사업을 집행하는 과정에서는 반드시 그 계획에 의해서 100% 맞지는 않겠습니다만, 그 방향에서 어긋나지 않는 방향에서 모든사업을 투자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禹康鎬 委員 : 평창군종합개발10개년계획은 포괄적인 면이고 그다음 94년도 자료에 소규모 숙원사업 순위별로 되어 있는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소규모 숙원사업 순위표 노란책자로 나와 있는데 94년도에 만들어진 겁니까?

○ 企劃室長 申大松 : 그것은 10개년 계획하고는 관련이 없고 꼭 만들라는 규정은 없습니다. 없는데 작년도에 이명기 군수님 계실때에 소규모 주민숙원사업을 수시로 자꾸 건의를 하고 하니까 이것을 하나의 지침을 만들자 라고 지시가 되어 가지고 읍면을 통해서 보고를 받아 가지고 작성이 된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禹康鎬 委員 : 어느정도 당위성은 있다고 보는것이 아닙니까?

○ 企劃室長 申大松 : 보고 있습니다. 거기에서 가능한 맞출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간혹가다가는 물량도 틀리고 읍면에서 예산요구라던가 각 실과소에 예산요구가 들어오는것을 보면 그것과 관계없이 순위가 우선급한 순서로 변경되어 들어오는 것이 있고, 그러다 보니 불가피하게 바뀌는 예가 있습니다.

○ 禹康鎬 委員 : 제가 질문하는 요지가 소규모 숙원사업이 어느정도 근간을 두고 당위성이 있도록 자료를 발간을 했다면 그 순서를 기준으로 하는것이 원안이라고 생각하는데 제가 예산안을 다보지는 못했지만 어느정도 보면서 전혀 순서하고 소규모사업 순서하고는 전혀 상관없는 내용자체도 없는 부분들이 예산에 올라와 있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기획실장께서 검토를 잘하셔가지고 최종적으로 예산을 내놓으셨지만 그부분에 대해서 예산안 심의때 다시한번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느정도 당위성이 있도록 자료로 만들어 냈다면 거기에 근간을 두어야 하는데 그렇지 않은 부분이 있습니다. 그것이 읍면장의 소관이던 실과장의 소관이던 간에 협의를 거쳐서 올라왔을텐데 전혀 그안에 근거없이 올라와 있는 사업순위도 있고 예산을 요구한것도 있습니다.

참고로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 李慶鎭 委員 : 1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생활법률 무료상담실운영은 그동안의 추진실적을 보면 91년도에 31건 92년도에 106건, 93년도에 165건을 추진했습니다. 여기에 보면 올해가 76건입니다. 94년은 지금 자료가 없는데, 가면 갈수록 점점더 실적이 저조한 것으로 알수가 있는데 왜 이런 현상이 일어나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企劃室長 申大松 : 상설상담실은 사실상 법무계에 기획실내에 설치되어 있는 상담실 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연도별로 일정하게 몇건을 꼭 달성해야 된다는 그런목표는 없고, 일단 지역주민들로부터 모든 법률상담에 대해서 의뢰가 들어오게 되면 상담을 하는 그런 실적이 되겠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94년도나 95년도나 해가 갈수록 많아져야 되는데 적어진다는 내용에 대해서는 그만큼 방문하는 주민들이 적었다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이동상담실 운영은 각읍면을 순회하면서 그때그때 상담하러 오시는 분들에 대해서 상담을 하고 있습니다.

○ 李慶鎭 委員 : 제가 질문을 드리는

것은 94년도의 군정질문자료에서 군에서 답변하신 내용을 보면 전문법제인이 없어서 주민들에게 많은 불편을 겪고 있다고 판단되어서 현재 운영하고 있는 상담소를 연 2회에서 향후 년4회로 확대운영할 계획입니다.

이렇게 상당하게 강한 의지를 보이신 답변을 하셨습니다. 그렇게 의지를 보이신것과 지금 자료제출되어 있는것은 차이가 많기 때문에 과연 정말 민원의 소지가 줄어든것인지 아니면 군에서 홍보나 적극적인 노력이 부족한것인지 그부분이 의아해서 질의를 드린것입니다.

○ 企劃室長 申大松 : 이동상담실은 94년도 2회를 하다가 95년도에는 3회를 실시했는데 저도 첫날 두번 나가봤습니다만 사전에 반상회 회보에도 게재가 되었고 그다음 면에 있는 앰프를 통해서 홍보를 했습니다만, 상담하는 민원인이 그렇게 많지 않다는것을 느꼈습니다.

○ 李慶鎭 委員 : 한가지만 말씀 드리겠습니다. 신문 광고하는 문제를 기획실에서 취급을 하십니까?

○ 企劃室長 申大松 : 광고는 공보실에서 합니다.

○ 李慶鎭 委員 : 왜냐하면 광고는 금액도 금액이지만 광고를 하면 강원일보나 도민일보의 광고하는 내용을 보면 상당히 지면에 전면광고가 나가는 경우가 있는데 저희 위원들 입장에서 봤을때 그 내용을 보고 이런내용 말고 주민들이 판단하고 생각하는 부분은 이런부분도 있는데 그런 문제가 있어가지고 앞으로 광고를 하시는 경우에는 의회에서 어느정도 타협을 해서 같이 문안을 작성한다던가 협조하고 내용을 공감할수 있는 내용이 실어졌으면 좋겠지 않나 그래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시군별 취로사업비 지출현황및 시군별 1일 노임단가 책정현황이 강원도 감사자료로 나가있는 자료인데 제가 준비를 해가지고 우리 영월,평창,정선에 너무나 차이가 많기 때문에 이것이 과연 기획실에서 어떻게 알고 계시는지, 기획실에서 조정할수 있었던 사항인데 안되었는지 궁금해서 질문 드립니다.

영월군을 볼것같으면 94년도에 1억1,938만4천원이 지출이 되었습니다.
평창군은 6만1,924원, 정선군은1억4,590원, 이렇게 차이가 많은데 이것이 과연 인구라던가 여러가지 비교했을때 인구가 반정도 차이가 나는것도 아닌데 우리군은 이렇게 차이가 많은것인지 상당히 의문이 갑니다. 95년도에는 시군비만 지출되고 도비는 없습니다. 이런 차이는 어떻게 되어서 취로사업 현장이 영월이나 정선에 비해서 부족한 현상이 나는 것입니까?

○ 企劃室長 申大松 : 취로사업비는 사회과에서 추진을 합니다만, 제가 알기로는 해당되는 군단위의 영세민수라던가 이런것을 판단해서 주로 국도비가 많습니다. 영월이 1억원인데 저희 평창은 6만원 정도밖에 안된다는 것은 아마 자료가 잘못되지 않았나 생각되구요. 저희군에서도 취로사업비를 연간 많은 액수를 취로사업비로 지출되는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사회과 감사때 자세하게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 李慶鎭 委員 : 사회과때 다시 질문하겠습니다.

○ 禹康鎬 委員 : 우강호 위원입니다. 기획실 업무가 포괄적이다 보니까 심도있게 세심한 질의를 하기는 어려운 문제가 있는것 같습니다. 한가지만 부탁겸 말씀드리면 기획실 기획계 업무중에 군의회 운영에 관한 사항이 있는데 94년도 아니면 95년도 전반기 또 95년도 후반기에 행정사무감사는 처음입니다만, 위원들 현지확인에 따른 결과에 대해서 물론 각실과별로 별도의 질의를 하겠지만 특별히 기획실에서 관심을 가지고 각실과별로 자료처리문제, 사후문제점에 대한 보완책 이런것에 대해서 처리결과에 대해서 관심있게 답변을 받을수 있도록 통제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실질적으로 감사자료 받아보고 제가 아직까지 나이가 어려서 그런지는 모르지만 굉장히 불쾌한 부분이 많았습니다. 자료가 불성실하게 만들어졌다 라는것이 저 혼자만의 생각은 아니지만 상당히 자료가 미흡한 부분이 많은것 같습니다.

세심한것 까지 자료를 요구했는데 세심한 자료는 일단 올라오지 않았습니다. 뭐가 불리하고 뭐가 어려워서 안했는지는 모르지만 굉장히 포괄적인 부분만 감사자료로 올라와 있지 세부적인 사항은 빠진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감사시간도 길어질뿐더러 개인적인 감정도 유발될수 있고 집중적으로 추궁하다 보면 그런문제가 되지 않도록 사전에 성의있는 자료를 만들어 주셨으면 하는것이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 企劃室長 申大松 : 제출서류에 대해서는 일단 기획실에서 취합을 해서 위원님들이 요구하신 자료내용이 포함이 되었느냐 누락이 되었느냐 검토를 합니다만 내용 하나하나 자체를 검토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런내용에 대해서는 추가로 요구할 필요가 있다면 자료제출요구를 기획실에 해주시면 저희가 기간내 지장이 없도록 그때그때 제출을 하겠습니다.

○ 禹康鎬 委員 : 누락된 자료도 분명히 있습니다. 그리고 자료요구를 할때 1항 2항 3항해서 정확하게 어디까지 해달라고한 부분도 있는데 그런부분이 실질적으로 자료제출이 안된 부분이 있습니다. 그렇다고 개인적으로 그 실과 과장이 와서 이자료는 이렇게 내주겠다 그런 말한마디 없었습니다.

○ 企劃室長 申大松 : 추가사항을 말씀해주시면 해당되는 과로 하여금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취합해서 제출하겠습니다.

○ 禹康鎬 委員 : 그다음 통계계 소관인데 농업에 관한 자료가 얼마나 준비되어 있습니까? 군정질문에도 말씀드렸는데 농민들의 부채라던가 아니면 농가소득현황같은 자료가 있습니까?

○ 企劃室長 申大松 : 농업에 대한 통계조사를 인구조사 끝나고 농가조사를 하는데 전체적인 농가를 조사하지 않고 표본으로 농가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대한 표본농가에 대한 통계가 나옵니다. 과거에 사회진흥과에서 매년 실시하던 새마을소득조사를 매년하다가 불합리하다 해가지고 전체적

인 소득조사는 하지 않고 표본으로 산출을 해서 추진을 해서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 禹康鎬 委員 : 표본조사 같은것은 저희 평창군이 남부권하고 북부권이 농업 방식자체도 워낙 많은 차이를 가지고 있고 농업 형태도 상당히 많은 차이가 있는데 표본조사를 어떠한 방법으로 합니까?

○ 企劃室長 申大松 : 95년도에는 전수조사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결과에 따라서 취합을 한다음 결과를 나중에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 禹康鎬 委員 : 다 끝나면 농가 부채 현황이나 농가 소득현황 같은것이 다 나옵니까?

○ 企劃室長 申大松 : 부채사항은 나오지 않습니다.

○ 禹康鎬 委員 : 그렇다면 부채현황이 없으면 뚫린 통계가 아닙니까?

○ 企劃室長 申大松 : 부채현황을 꼭 농가에서 없다고 해서 뚫린통계라고 말씀하신다면, 지금 농가가 과연 경작하는것이라던가 농가가 사용하고 있는 집이라던가 이런내용을 중점적으로 해가지고 하고, 소득조사를 한다는것은 사실 조금 어렵습니다.

○ 禹康鎬 委員 : 어려워도 저희들이 해야할 부분은 해야 되는부분인데, 제가 군정질문에서도 질문을 했었는데 사실 명확한 답변이 제대로 되지 않았는데 산업과에서 답변한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통계 현실성에 상당히 많은 의문이 갔는데, 한가지만 더 기획실에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군정질문할때 질문요지서 일찌감치 드렸습니다. 시나리오도 몇일전 일찍 드렸습니다. 그런데 저희 의원들한테는 답변요지서를 주지 않았습니다. 답변 시나리오도 주지 않았습니다. 다음부터는 그런것이 있을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받아갈것은 다받아가고 줄것은 안줍니까

○ 企劃室長 申大松 : 질문에 대한 답변에 대한것은 의원들한테 현재까지는 제출이 안되었었습니다. 그리고 질문요지에 대해서는 집행기관에다 최소한 24

시간전까지 주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받아가지고 성실한 답변을 구하기 위해서는 집행기관에서 사전에 의원님들이 질문한 요지를 알아야만 충분한 답변을 하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가 요구를 한 것이고 질문한 자료에 대해서는 현재까지는 드리지 않았는데 그래서 안드린것이지 다른맘에서 안드린것은 아닙니다.

○ 禹康鎬 委員 : 아니 질문요지서를 미리 다 드렸지 않습니까?

○ 企劃室長 申大松 : 네.

○ 禹康鎬 委員 : 그다음 질문 시나리오까지 각의원님들이 다 제출을 했습니다. 그런데 집행기관에서는 질문요지에 맞는 답변요지도 나오지 않았을뿐더러 가장 정확하게 토씨까지 붙어있는 시나리오도 받아보고도 답변에 대한 시나리오는 전혀 제출이 안되었습니다. 그것이 됐으면 뭐가 비켜갔는지 저희 나름대로 파악해서 다시 보충질문도 할수있는 자료도 만들수 있는데 전혀 그런것이 안되어 있었습니다. 저희들한테는 요구할것을 다요구해서 가지고 갔는데 저희들한테 준것이 아무것도 없어요. 뭔가 상당히 잘못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의회 전반적인 업무를 관장해주는 기획실에서 앞으로 그런것을 철저하게 통제를 해주시고 의회위상이 집행부에 떨어진다는것도 심각한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저희들은 줄것을 다주었는데 받을것은 하나도 못받았습니다.

보충질문을 어떻게 합니까? 아무리 연구검토를 많이 한다해도 집행기관의 과장들이 와서 답변할때는 그 직책이 공무원생활 20년이상씩 하신분들입니다. 거꾸로 되었어야 하는데 도리어 저희들이 줄것은 다주고 아무것도 못받는게 되어 버렸습니다.

○ 企劃室長 申大松 : 지금까지는 자료를 받아서 답변을 의회 본회의에 나가서 과장들이 답변하는걸로 전체적으로 굳혔고 또 거기에 대한것을 들으신 다음에 보충질문을 하는 그런 순서를 가졌습니다. 그것이 필요하다면 사무과와 협의를 해가지고 앞으로 그것이 필요한것인지 아닌것인지 검토하겠습니다.

○ 禹康鎬 委員 : 그 시나리오가 정확한 답면을 위해서 필요하다라고 해서 저희 의원들이 다 제출했잖습니까?

○ 企劃室長 申大松 : 그것은 필요하다는것이 조금전에 말씀드린대로 집행기관에서 의원님들이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서 성실하게 답변을 하기 위해서는 의원님들의 질문하실 요지를 알아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그것은 하도록 되어 있고, 그다음 요지에 대한 답변서는 현재까지는 의회에 나가서 본회의때 답변하는 그런형식을 취했기 때문에 거기에 맞추어서 보충질문을 하셨기 때문에 현재까지 제출이 안되었는데 그 문제는 협의를 해가지고 드려야 하는것인지 안드려야 하는것인지 검토 하겠습니다.

○ 禹康鎬 委員 : 제가 말씀드리는 부분이 요지서 문제는 당연히 제출한다고 하고 시나리오 문제는 집행기관이 어떻다 의회가 어떻다 이런것을 떠나서 집행기관에서는 받아갈것을 다받아갔는데 의회는 아무것도 주지않고 대답을 거기에 맞추어서 하겠다라고 하면 안그렇습니까? 어디가 우선이고 어디가 아래라는 그런 정의가 아닙니다. 같이 잘될려고 하는데 다 받아가고 주지 않아서 보충질문을 어떤식으로 철저하게 연구검토 합니까? 협의를 잘거쳐서 추후에는 그런일이 없도록, 저희들한테 받아갔으면 주는것도 있어야 합니다. 받아가고 주지 않아서 개인적으로 공경에 처하게 하고 피곤하지 않습니까?

특별히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 劉燉文 委員 : 유돈문 위원입니다. 월동종합대책에 대한 67쪽입니다.

지금 석유나 기름같은것은 평창군이나 어디를 가던지 군별로 면별로 통일된 가격인데 가스나 프로판, 연탄같은것은 지역별로 다른데 이것을 통일할수 없습니까?

○ 企劃室長 申大松 : 가스요금 말입니까?

○ 劉燉文 委員 : 네. 왜냐하면 판매소에서 배달조건을 해서 거리별산제를 받고 있는데 이것도 법적으로 가능한것인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 企劃室長 申大松 : 가스요금은 고시제로 되어 있는데 과거에 연탄을 3층집에는 더받고 그런것은 허용을 해주었습니다.

○ 劉燉文 委員 : 그러면 가스도 거리병산제로 해서 더받을수 있습니까?

○ 企劃室長 申大松 : 가스에 대해서는 없는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劉燉文 委員 : 그런데 지금현재 가스판매소에서 면단위에 다 유치하고 있는데 거리병산제를 해가지고 더받고 덜받고 한것은 행정적으로 지도할수 없는지?

○ 企劃室長 申大松 : 그것은 행정적으로 고시가격보다 더받는것은 당연히 행정.....,

○ 劉燉文 委員 : 거리가 멀다 해가지고 가지고 왔으니까 더달라 이렇게.....,

○ 企劃室長 申大松 : 그런업소는 팔아주지 말아야 합니다. 지금 가스도 경쟁시대입니다. 가격보다 적게 팔려고 하는곳도 많습니다.

○ 劉燉文 委員 : 그런데 면단위같은 판매소가 1개소밖에 없는곳은 어차피 거기가 아니면,

○ 企劃室長 申大松 : 평창에 전화하시면 대번 가지고 갈겁니다.

○ 劉燉文 委員 : 평창은 더멀리 오는데 똑같지요. 업자끼리 뭔가 회의를 해가지고 그렇게 하자고 회의를 한것으로 본위원은 알고 있는데 책임있게 해가지고 거리병상제 해가지고 더받는 그런행위가 없도록 단속 강구했으면 바람직 합니다.

○ 企劃室長 申大松 : 지역경제과에다 그내용을 알려줘서 확인하겠습니다.

○ 委員長 金鍾永 : 보충질의 하실분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이 있음)

그러면 기획실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기획실장 수고 하셨습니다.

위원휴식을 위하여 감사를 중지한후 12시에 계속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1時50分 監事中止)

(12時00分 監事繼續)

○ 委員長 金鍾永 :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 하겠습니다.

[redacted]

다음은 문화공보실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것을 선언합니다.

먼저 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는 평창군의회가 '9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출석 증언하는 관계공무원의 엄정한 감사수행과 책임성 있는 답변을 듣기 위하여 지방자치법 제36조 제4항에 의거 하는것으로 만일 허위 증언을 하거나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하는 때에는 동법 제36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한 고발 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그러면 문화공보실장 나오셔서 선서후 서명날인하여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 文化公報室長 高昶植 : 선서, 본인은 평창군의회가 지방자치법 제36조의 규정에 의거 소관업무에 대한 9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것이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하고 이에 선서 합니다. 1995년 11월 27일

문화공보실장 고 창 식

(문화공보실장 서명날인후 선서서 제출)

○ 委員長 金鍾永 : 다음은 발언대에 나오셔서 감사대상 사무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文化公報室長 高昶植 : 문화공보실장 고창식 입니다. 감사보고를 드리기 전에 우선 저와함께 일하는 계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전완택 공보계장 입니다.

(공보계장 인사)

고영재 관광계장 입니다.

(관광계장 인사)

이어서 공보실에서 현재 추진하고 있는 업무에 대한 현황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는 끝에실음)

이상 문화공보실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委員長 金鍾永 : 공보실장님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위원여러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李相薰 委員 : 이상훈 위원입니다.

먼저 노성제 행사 경비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95년도 민주도로 총사업비는 9,887만4천원인데 이중에서 군민전체가 원치않는 노성제 단일행사날 경품행사비로 1,361만5천원이 지출이 되었습니다. 본위원의 생각으로서는 노성제 군민의날 행사의 목적은 전군민의 화합과 단결을 도모하고 또한 매년 연례행사인 노성제 군민의날 행사를 더욱 빛내기 위해서 행사를 하는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좋은행사에 경품권이라는 상품을 걸어놓고 시행하는 과정에서 폐막식날 직전에 온군민들이 상품을 탈려고, 누가봐도 미관상 좋지않은, 그래서 경품행사에 대한 시행과정에 대해서 왜 매년 없던 행사가 거창하게 1,300만원이나 들여가지고 경품권을 발행해서 시행하게 되었는지 그 경위를 실장님 설명해 주시고 또 아울러 방림면 유선방송국 설치에 예산이 계상된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집행 내용과 현재 방림유선방송 사업이 무엇을 하고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도 자세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文化公報室長 高昶植 : 이상훈 위원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노성제 행사중에서 노성제 경품행사를 어떻게 하게 되었느냐, 경품행사는 우선 노성제에 대한 추진개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94년까지는 행정기관에서 모든 업무를 예산에서부터 집행을 했습니다.

그런데 금년도에는 순수한 민주도 정착으로 행사를 하기 위해서 예산이나 행정면을 전부다 노성제위원회로 넘겨 주었습니다. 넘겨주어서 실제 공보실에서의 기능은 행사에 대한 조정을 할수가 없었습니다. 민주도로 되었기 때문에 노성제 위원회에서 행사계획을 수립하고 예산집행계획도 모두 노성제위원회에서 마련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까지 공보실장 입장에서는 아직 노성제위원회에서 결산보고회를 마치지 않았기 때문에 정확한 수치의 어떤 답변을 드릴수

없음을 죄송하게 생각 합니다.

필요하다면 노성제위원회 총무이사나 사무국장을 통해서 위원여러분께서 이해가 가도록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고 또 그리고 그전에는 노성제위원회에 공보실장이 당연직 총무이사로 되었기 때문에 모든 사항을 관장했습니다만, 지금 새로 노성제위원회에 회칙에는 공무원들은 다 빠졌습니다. 일반인들이 노성제 위원회에 위원으로 되었기 때문에 상당히 답변드리기 어렵다고 생각됩니다. 필요하다면 역시 노성제결산이 끝난다음에 자료를 제출해 드리도록 하겠고 특히 왜 경품권 행사를 하게 되었느냐 이는 노성제 위원회에서 회의를 하는 과정속에서 선택이 되었다고 봅니다. 그래서 공보실장이나 저희군에서 해라 말아라 하는 얘기가 아니고 노성제 위원회에서 순수하게 자발적으로 추진한 것으로 알고 있고 또한 행사주도는 평창 JC에서 한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다음 방림면 유선방송 설치건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방림면 계촌리가 사실상 되어있는 시설이 상당히 노후되어서 저희들이 9월 30일날 이미 준공을 했습니다. 그래서 평창관내에서도 방림면 유선방송이 가장 화질이 좋고 시청율이 높은 곳입니다. 현재까지 제가 알고 있기로는 이미 준공처리가 되어 가지고 방림 계촌이나 운교나 이쪽에서 텔레비젼을 시청하는데 문제가 없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 李相薰 委員 : 지금 실장님께서 화질이 좋다고 했는데 유선방송국이 무슨 시설을 하는 겁니까?

○ 企劃室長 申大松 : 시설은 다른것이 아니고 지난번에 전파를 잡는 기점이 좋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서울에서 넘어오는 방송을 전파를 잡아가지고 다시 유선을 이용하는 농가에 배분이 되는데 그 기점이 잡히지 않아서 제가 계촌3리로 기점을 옮기고 사무실도 모두 옮겼습니다. 거기에 시설비가 들어가기 때문에 투자가 되었습니다.

○ 李相薰 委員 : 유선방송은 94년도에

본위원이 군정질문이나 행정감사에 지적했던 사항입니다. 계촌, 운교지구가 난시청 지구가 되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해석을 해달라 해서 집행기관에 촉구했던 사항이고 그후에 예산이 780만원이 계상되어가지고 사업을 하고 있는것으로 알고 있는데 최근에 화면이, 특히 MBC같은 경우는 화면이 더 나빠졌습니다.

그래서 공무에 바쁘시지만 현지에 출장좀 나가셔가지고 항간의 여론이 텔레비전이 화면이 나쁘니까 어떻게든 촉구를 해주시고 본위원의 생각으로서는 돈1000만원 미만 지원해줘봐야 근본적인 시설을 보완 할 수 가 없고 이것은 점차적으로 MBC나 KBS 방송국에다 건의해가지고 예산지원을 받아가지고 전면적으로 난시청이 해결 될 수 있도록 해야 하는데 우선 시설한 자체가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지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 文化公報室長 高昶植 : 알겠습니다.

○ 李相薰 委員 : 이상입니다.

○ 禹康鎬 委員 : 우강호 위원입니다.

노성제에 대해서 이상훈 부의장님께서 질의하셨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잠깐 질의하겠습니다.

경품 1,390만원이 노성제위원회 회의때 결정이 되었다고 답변하셨는데 실지 95년도 집행계획에 보면 1,390만원이 화합의 한마당이라고 경품은 1,390만원이 아주 없습니다.

○ 文化公報室長 高昶植 : 금년도에 계획 한겁니다.

○ 禹康鎬 委員 : 그러니까 금년도 당초 계획에 1,390만원 경품행사가 없습니다.

○ 文化公報室長 高昶植 : 그 이후에 다시 이사회를 할때에 그때.....,

○ 禹康鎬 委員 : 당초 계획에 없었던것이 나중에 이루어졌던 1,390만원 부분이고 노성제경품에서 예산집행내역을 보면 1,390만원이 적나라 하게 나와 있는데 실지 구입을 어디서 주관해서 구입을 했습니까?

○ 文化公報室長 高昶植 : 노성제위원회에서 예산은 전부다 집행이 되었습니다.

○ 禹康鎬 委員 : 그럼 구입처는 평창읍

에 한정된것 아닙니까?

○ 文化公報室長 高昶植 : 그것은 제가 확인을 아직 못했습니다.

○ 禹康鎬 委員 : 평창군민의 돈을 다 걷어가지고 평창읍에서만, 제가 한번 건의를 했던 부분인데요. 자전거 20대를 사는데 여기서 대당 1만원씩을 깍아주지 않는다고 해서 제가 진부나 다른곳에서 구입을 해서 1만원을 깍아서 갔다준다고 얘기 했었습니다.

전체적인 군민 수혜차원에서 8개읍면에 자전거포 없는곳은 하나도 없을 겁니다. 골고루 몇대씩 사던가 그래어야지 평창읍에다 집중적으로 한다는 것은 상당히 심각한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 文化公報室長 高昶植 : 물품구입 과정이나 예산을 집행하는 과정에서 이미 저쪽으로 저희들이 넘겨주었기 때문에 공보실장이 하나하나 손대기는 곤란하고 그렇게 되었다면 내년도의 행사시는 저희가 조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禹康鎬 委員 : 실제 집행계획 보다 집행액이 866만5천원이 증이 되었는데 실지는 이것보다 더많이 증이 되었다고 생각되지 않습니까? 지원금도 300만원은 방림이 안나와서 감했습니다.

○ 文化公報室長 高昶植 : 이것은 의원님들이 요구를 했기 때문에 개략적으로 저쪽에서 받은것이고 이것은 노성제 위원회에서 결산처리한 자료가 아닙니다. 현재 자료를 요구하기 때문에 이것이 변수가 있으리라고 생각하는데요. 결산총회를 해야되는데 그것을 아직 안한상태이기 때문에 정확한 자료가 안되겠습니다.

○ 禹康鎬 委員 : (녹음불량으로 인해 청취불능)

○ 文化公報室長 高昶植 : 그문제에 대해서 예를들어 제가 노성제 위원회에 어떤 임원으로서 역활을 했다면 발언을 해서라도 그런얘기를 할수 있겠습니다만 실제 지금은 공보실장이 역활을 할수 있는 자리가 아니였기 때문에 어떻게 생각하면 공무원이 나태하지 않았나 생각하실지 몰라도 저희는 가급적 민주도로 성장시키기 위해서 했고 또 제가 참석을

해서 발언권이 없기 때문에 할수 없어서 미안하게 생각하며 내년부터는 제가 발언권이 없다 하더라도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禹康鎬 委員 : 50%에 가까운 군비가 4,140만원이 지원이 되었는데 집행부에서 관리를 안했다면 문제가 있다 라는 생각이 듭니다.

○ 文化公報室長 高昶植 : 참고 하겠습니다.

○ 禹康鎬 委員 : 집행된 예산지원 현황을 저희 위원들이 자료요구 했을때에는 노성제위원회에서 자료를 받아오던지 아니면 결산서를 총무이사나 사무국장한테 자료를 만들어서 오던 정확하게 답변할 수 있는 그런 자료를 만들어가지고 오셨으면 하는 아쉬움이 많이 있네요.

○ 文化公報室長 高昶植 : 죄송합니다.

○ 李相薰 委員 : 그러니까 지금껏 노성제 경품행사는 조금 도에 넘치는것이 아니겠느냐, 당초 취지가 노성제 행사하고는 이것으로 인해서 폐막식에는 운동장에는 한사람도 없고 아예 노성제 행사를 경품행사로다 명칭을 바꿔서 하던가 이것은 앞으로 노성제 추진위원들이 참고하실 필요가 있지 않겠느냐, 이렇게 어려운 군재정을 지원을 받고 찬조금 받고 이런돈 모아가지고 비싼 VTR 같은것 추천이나 하고 말이지, 이것은 오히려 군민들 화합차원이 아니라 이것을 타기위해서 온 군민들을 고수부지에 모여가지고 오랜시간을 낭비해 가면서 그한점 추천이 될까 하고 말이지요. 이러한 문화적인 행사는 본위원의 생각으로서는 전국의 각군에도 이런 행사를 하는곳은 드물거라고 생각됩니다. 해도 너무 했어요. 창란젓 같은것 200점씩이나....

○ 劉燉文 委員 : 유돈문 위원입니다. 한가지만 묻겠습니다. 자전거가 경품권에는 20대로 되어 있는데 그날 군수님이 40여대 자전거를 경품권으로 냈는데 이예산은 집행부 군의 예산입니까?

○ 文化公報室長 高昶植 : 이것은 저희가 생각하기에는 군비지원이 아니고 별도로.....,

○ 劉燉文 委員 : 군수님 개인돈 입니까

○ 文化公報室長 高昶植 : 그 집행관계는 제가 잘 모릅니다.

○ 劉燉文 委員 : 본위원이 듣기로서는 건설과장께서 우리 평창군 관내에 사업자들에게 다니면서 돈을 걷어서 샀다는 얘기가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실장님 아는바 있으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文化公報室長 高昶植 : 아는바가 저는 없습니다.

○ 劉燉文 委員 : 그런데 건설과장님이 다니면서 사실입니까?

○ 文化公報室長 高昶植 : 모르겠는데요

○ 劉燉文 委員 : 지금 본위원이 서두에도 말씀드렸지만 사업자들에게 다니면서 돈을 걷어서 이 돈으로 군수님이 40여대에 자전거를 구입했다고 여론이 되어 있는데 이런것이 집행부로 봐서 당연한 일이라고 생각하는지 앞으로 96년도에도 경품권이 또있다라면 이런식으로 한다면 체계적인 노성제가 아니라고 본위원은 지적을 하고 싶습니다.

실장님이 민간인 주도로 다 넘어갔다 하더라도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심각성을 가지고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 文化公報室長 高昶植 : 다음에 기회가 있으면 제가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 禹康鎬 委員 : 군비 4,100만원에 대한 결산보고서는 나중에 따로 받습니까?

○ 文化公報室長 高昶植 : 아직 결산보고서가 안들어 왔습니다.

○ 禹康鎬 委員 : 제가 자료요구했던 내용입니다.

문화예술단체 육성및 지원 현황인데 지원현황에 보니까 8개단체에 지원을 했는데 21개 단체중에서 제가 알기로는 돌기와 문학동인회나 백오문학동인회는 예총 군지부가 없는 관계로 책을 발간할때 문예진흥기금 수혜를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받지 못하는 부분에 대해서 작품은 만들어 놓고 실질적으로 지금 동인지를 발간을 못하고 있는 상태이거든요. 문화공보실에서 지원할 계획은 없습니까

○ 文化公報室長 高昶植 : 그문제에 대해서는 지금 확실한 답변을 드릴수가 없습니다.

○ 禹康鎬 委員 : 예총 군지부가 없어서 그런 문학단체들이 동인지를 발간하지 못한다면 문화공보실에서 특별하게 관심을 가지고 지원해줄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음은 36쪽 권역별 관광계획 수립 내용인데 94년도에 의원들 현지확인에 대한 집행부의 조치사항으로 의회에 들어와 있는 내용인데 관광코스개발 8개코스 유형 주요관광코스 해서 향후계획, 휘닉스 스파크, 이승복기념관, 오대산, 용평리조트를 연결한 관광특구를 지정하겠다, 라고 조치사항을 보내셨는데 이미 관광특구는 지정이 되어 있는것이 아닙니까?

○ 文化公報室長 高昶植 : 권역별 계획에는 반영이 되어 있지요.

○ 禹康鎬 委員 : 그런데 제가 군정질문에서도 말씀을 드렸는데 실질적인 봉평주민들이나 평창군 전체적인 주민들 아니면 평창군 전체적인 면을 홍보하는데 특별한 하자가 없다면 조속한 시일내, 하루라도 빨리 되야된다라는 생각이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그런데 집행부의 미온적인 태도 때문에 쭉 진행이 되지 못했던 부분인데 물론 그때는 기획실장을 하고 계셨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심도있게 해서 정말 평창군이 문화예술 관광단지로서 위상을 굳히고 전국적으로 홍보할수 있는데 가장 좋은 조건을 가지고 할수 있도록 적극적인 검토가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거기에 대한 준비과정이 어느정도 되어 있습니까?

○ 文化公報室長 高昶植 : 지난번 군정질문에서도 제가 답변을 드렸습니다만 현재 보광이 관광단지로 지정하고자 하는 면적은 그 에리아는 바로 보광이 확보 해놓고 있는 에리아 입니다. 제가 생각하는 관광단지 에리아라면 항시 보광같은 경우에는 어떤 관광단체들이 접목이 되어야 합니다. 거기서 제일 접목이 가까운 것이 문화와 접목할수 있는 여건이 있다, 예를들어서 이효석 관광단지라던가 이런 이효석 마을같은 그런 메밀과 이효석을 연결하는 자원이 있기 때문에 거기와 홍정계곡 같은 경우도 상당히 자연경관이 아름답고 그 주변지

역이 어느정도 기틀이 갖추었을때 함께 묶는것도 오히려 전체적인 단지화 개념이 아닌가 그런사고로 생각을 하고 있는데 보광단지만 관광단지로 지정한다면 별 의의가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 禹康鎬 委員 : 그러면 공보실장께서 보광측하고 한번 협의를 해보셨습니까?

○ 文化公報室長 高昶植 : 보광측하고 정식협의는 안했습니다만, 그냥 여담식으로 얘기 했습니다.

○ 禹康鎬 委員 : 여담이 아니라 업무적인 면으로 들어가서.....,

○ 文化公報室長 高昶植 : 업무적인 면으로는 협의를 안했습니다.

○ 禹康鎬 委員 : 협의를 반드시 거쳐야 될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봉평주민이 원하는곳까지 다묶고 또 공보실장이 생각하시는곳까지 다묶어서 단지화를 한다던가 해서 반드시 추진이 되는것이 평창군 전체적인 면에서도 또 봉평주민들 에게도 상당한 좋은 요인이 있다고 생각 합니다.

○ 文化公報室長 高昶植 : 현재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 禹康鎬 委員 : 그다음 우려하시는 세재혜택 문제에 대해서는 보광측에서 우리 관광계장님 계실때 그쪽에서도 얘기했지만 어떠한 부분에도 50% 세재 혜택이 있다면 그 50%는 저희 평창군에 어떠한 방법으로도 요구하는 방향으로 다시 돌려주겠다고 확실하게 답변을 하셨는데 조속히 추진되는것이 원안일것 같습니다

○ 文化公報室長 高昶植 : 한번 추진해 보겠습니다.

○ 禹康鎬 委員 : 그러니까 여담으로 하시지 말고 업무적인 면으로 강력하게 추진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다음 관광객 유치활동 실적에 대해서 제가 자료요구를 했었는데 실제적으로 우리 군에서 관광객 유치를 위해서 홍보전략이라던가 아니면 다른 채널을 통해서 할수있는 그런 부분적인 것들을 개발하거나 준비하고 있는것이 있습니까? 아니면 해왔다면 어떠한 방법으로 가시적이던 가시적이지 않던 되어 왔는지,

○ 文化公報室長 高昶植 : 사실 홍보라

는 개념은 상당히 포괄적이고 넓다고 생각하는데 현재는 어떤 시설물을 통한 홍보, 또 직접 관광업체에 가서 하는 홍보 또 신문이나 기타 언론매체를 통한 홍보 여러가지 다각적인 홍보가 있다고 봅니다. 지금현재 추진하고 있다는 것은 업무보고에 말씀을 드렸드시 관광객이 이고장에 와서 표적을 하나 보더라도 이 고장이 어디구나 그것도 하나의 홍보라고 생각하고 그문제를 지금 다루고 있고 그다음 저희들이 홍보책자를 만듭니다. 전체 평창의 여러가지 자원을, 홍보책자를 통한 홍보, 그래서 앞으로의 적극성 있는 홍보라면 관광공사를 통하거나 아니면 어떤 관광여행사를 통해서 직접 찾아가서 우리고장에 관광을 안내하고 알려주고 또 이용을 할때는 어떤 혜택을 봐야지 오리라고 봅니다. 그런 문제는 저 나름대로 구상중인데 그런 방향으로 해서 많은 관광객이 올수 있도록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 禹康鎬 委員 : 한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군정질문에서도 말씀드렸던 감자를 테마로한 이벤트행사를 해서 실장님께서도 답변을 해주셨고 또 나중에 군수께서 총괄답변을 해주실때도 반드시 하겠다는 의지를 피력하신것으로 저희들은 알고 있는데 96년도 계획에 어느정도 준비를 하실 계획인지요.

○ 文化公報室長 高昶植 : 그래서 그 문제는 제가 생각하기에 현재까지 대관령 눈꽃축제라던가 효석백일장 이라던가 어울마당도 봉평면에 있습니다만, 1차적인 문제가 저희 행정기관에서 아무리 좋은 계획을 수립한다 하더라도 주민이 따라주지 않는다면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진부면에서 지역주민들이 어떤 행사의 의지를 가지고 참여가 되야 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합니다. 지난번에 FAX를 통해서 따른 사례도 준비를 하고 있고 행정적으로 기법이나 이런것에 대해서는 프로그램 같은것은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지원해 주겠습니다만, 진부에 계신 분들이 어떤 의지를 안가지고 했을때는 성공하기가 힘들지 않느냐 해서 미안한 말씀

입니다만 함께 노력을 해주시면 성공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 禹康鎬 委員 : 알겠습니다.

○ 金斗經 委員 : 김두경 위원입니다.

비지정관광지에 대한 편의시설 문제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간이화장실, 안내판등을 앞으로 더 확충을 하시고 요소요소 배치를 한다고 그랬는데 현재 안내판 설치가 3개소가 되어 있잖아요. 그것을 이왕이면 봉평지역에도 현재 보광입구, 무이리 홍정, 그사이에다 하나더 배치했으면 좋겠지 않겠나 해서.....,

○ 文化公報室長 高昶植 : 앞으로 9개소로 늘려 갈겁니다. 진부에도 제가 말씀을 드린바 있고 설치해도 사람들이 많이 움집되는곳에 있어야지 효과적이지 그래서 지금 분석하고 있습니다.

늘려 나가겠습니다.

○ 金斗經 委員 : 그리고 화장실 문제는 현재 간이화장실을 비지정 관광지에 요소요소 설치가 되어 있는데 사실상 여름에는 너무 뜨거워서 이용을 안합니다. 그래서 그러한 화장실보다 차라리 농촌형으로 그렇지 않으면 완벽하게 해서 1동을 짓더라도 몇칸씩 해서 가치있겠끔 써야지 솔직히 전혀 활용을 안합니다. 차라리 그렇게 할바에는 밭에다 그냥 파놓고 거기서 배설하라고 하는것이 좋지 않느냐, 그래서 예를 들면 봉평의 산채연구소 앞에 간이화장실이 있습니다만 그분들이 전부 관광지에 와가지고 산채연구소 화장실로 갑니다. 그러니까 냄새나지 뜨겁지 하니까 여기는 도저히 쓸수가 없다 해가지고 산채연구소에서도 들어오는것을 막을수도 없고 이래서 관광객들을 사용하도록 허락을 해주었는데 이걸로 봐가지고는 화장실을 완벽하게 개조를 해가지고 전환시켰으면 하는 바램이고, 그다음 비지정 관광지라도 주차난을 해소하고 또 쓰레기도 한군데다가 수집을 해가지고 수거하는 방법으로 이런식으로 해놓고 지도단속을 철저히 해야되지 않느냐, 여기에 대한 앞으로 대책을 강구해가지고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 文化公報室長 高昶植 : 거기서 곁들여서 말씀드리고 싶은것은 지금 비지정 관광지가 전부다 하천입니다. 하상에서 이용하다 보니까 홍수나 비가 왔을때 침수가 될 우려가 있어서 떨어진곳도 있습니다. 거리가 떨어진곳은 멀리 있으니까 이용을 안하고 여기서 고정식을 짓는다면 홍수나 여러가지 다 감안해야 되기 때문에 검토를 해가지고 저희들이 내년도에 최대한으로 김위원께서 말씀하신대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 金斗經 委員 : 조금 떨어지더라도 뚝위에다 완벽하게 지으면 효과적으로 이용할수 있지 않느냐 생각됩니다.

○ 文化公報室長 高昶植 : 건축법상 연구시설 문제도 있고 해서 그런것을 다 검토를 해가지고 불편이 없도록 개선을 하겠습니다.

○ 李慶鎭 委員 : 이경진 위원입니다. 먼저 문화예술회관 문제들이 작년도 그렇고 계속 나오는데 예산문제 때문에 건립추진위원회가 구성이 되서 움직이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추진위원의 명단을 다시한번 말씀해 주시고, 95년도 2월 초순경에는 중앙을 방문해서 예산확보에 노력을 하겠다고 하셨는데 그분들이 과연 지금까지 한 실적이 얼마나 되는지 말씀해 주시고, 다음 신문이나 반상회 광고를 공보실에서 취급하지 않습니까?

○ 文化公報室長 高昶植 : 네.

○ 李慶鎭 委員 : 광고를 제작할때 기획을 어떤분들이 하고 계시는지, 가능하다면 군에서만 할것이 아니라 기획하는 과정에서 참여는 안하지만 검토를 할수 있는 기회가 있은후에 정리가 되어가지고 광고에 게재가 되었으면 좀더 효과적이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제생각으로도 이런광고는 이것보다는 이런표현이 더 좋지 않았느냐 이런 문제가 있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지난번에 문화예술회관 64억원 공사인데 토목직 공무원이 없어서 상당히 문제가 있지 않느냐 하는 지적을 했었습니다. 여기 보면 8급공무원 한사람이 현장에 배치되어 있는데 과연 64억

원이라는 어마어마한 공사인데 8급공무원 한사람을 땜빵으로 채우기 위한 부분으로 보이기 때문에 좀더 기술적으로 향상되어 있는 급수를 올려서 배치할수 있는 방법이 아쉬운데, 그리고 비지정 관광지를 지난번 군정질문때 답변하시기를 위탁관리하는 장소와 직영관리하는 장소로 두가지로 시범운영을 해보신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시범으로 운영을 하셨는지 아니면 하신 결과가 있으신지, 한가지만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효석공원에 도시계획도로가 있어서 상당히 개발에 저해요인이다, 이런부분을 제가 알고 있는데 그부분은 과연 어떻게 해결이 되었는지 말씀해 주십시요.

○ 文化公報室長 高昶植 : 추진위원 명단은 좀 창피한 얘깁니다만 알고있지 못합니다. 죄송합니다.

○ 李慶鎭 委員 : 그것은 서면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文化公報室長 高昶植 : 명단은 별도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서면답변은 끝에실음)

그다음 종합문화예술회관을 추진함에 있어 예산확보를 어떤식으로 어떻게 했는가에 대해서 저희들이 총 지금현재 재원을 62억5천만원을 계획하고 있는데 이중에서 94년도에 10억, 군비3억, 그래서 13억을 확보를 했거든요. 95년도에는 도비가 7억, 군비가 1억, 문화예술진흥기금 2억, 그래가지고 10억원이 금년도에 투자가 되었습니다. 현재까지 예산에 문제점이 있었다는 것은 이사업을 군비나 아니면 문예진흥기금 도비에 의존해서는 불가능하지 않느냐, 그래서 금년도에 도를 통해서 제경원까지 올린바 있습니다. 단 2억이라도 달라고 했는데 그때 2억원의 국비신청을 했는데 제경원에서 성립이 안되가지고 좌절되었는데 그이후에 우리군에서 국회의원을 통한 문제의 자료를 드렸고 그다음 제가 지난번 광주 비엔날레 심포지엄에 가서 문체부의 체육지원 국장님께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랬더니 공교롭게도 각 시군이 저희들과 똑같은 입장입니다. 그래서 분명히 해준다, 그래서 제가 지난번에

언뜻 전해듣기로는 김기수 의원께서 역활을 많이 해가지고 국비를 받지 않겠느냐 그런상황에 있습니다. 국비가 금년도에 투자되면 매년 투자할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절대적으로 하는데 다시 한번 좋은 소식이 오기를 기대하면서 이점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제가 예산 확보하는데 열심히 뛰겠습니다.

○ 李慶鎭 委員 : 그문제에 대해서는 추진위원 되시는 분들이 가시적으로 활동한것이 있으신지, 그분들이 회의를 하고 군에서 경비를 지원해주고 그런 부분은 없습니까?

○ 文化公報室長 高昶植 : 제가 8월에 왔습니다만, 당초에 부지확보 할때에 적극적인 활동을 하시고 그이후에는 활동을 개별적으로 했는지는 모르지만 어떤 모임을 갖고 그런것은 제가 온 이후에는 하지 못했습니다.

그다음 기획광고에 대해서 좋은 말씀을 하셨습니다. 뭐든지 지역주민의 의견을 많이 수렴해서 지역주민들이 피부에 와닿는 광고로 해야지 군비가 유효적절하게 집행하는데 이위원께서 말씀하신것은 기필코 앞으로 광고를 낼때에는 꼭 여론을 들어가지고 전체적인 여론은 힘들겠지만 꼭 지역에서 현재 필요로 하는 것이 뭔가를 여러군데 자문을 얻고 얘기를 들어서 광고를 내도록 개선을 하겠습니다.

그다음 엄청난 66억원이 넘는 문화예술회관을 짓는데 토목직 초임발령받은 사람을 배치 받아서는 안되는것 아니냐 그런 말씀인데 일단 제가 우려한것은 딴것이 아닙니다. 저희들이 공사 감리를 하기 때문에 공사감독은 누구보다도 업자가 피곤할 정도로 공사감독이 됩니다. 그러나 저희들 행정직이 공사감리와 시공자와 어떤 언쟁이 있었을때 이것을 중재 역활을 하는것은 기술을 아는 사람이 중재 역활을 해야 됩니다. 어떤때는 한쪽의 주장이 틀린대도 불구하고 주장하면 공사가 그만큼 지연되고 모순이 있기 때문에 토목직을 한사람 배치해달라는 차원입니다. 그러니까 바로 시공자와 감리자들 사이에서 중간역활을 하는

그런 매개체로 필요하다고 말씀했기 때문에 지금 현재로서는 수시로 저에게 보고가 되고 문제점은 협의를 하고 그렇기 때문에 현재는 문화예술회관 건립이 순조롭게 잘 진행되고 앞으로 내년도가 상당히 중요한 시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내년도 예산만 확보되면 앞으로 그렇게 비관적으로 볼 필요는 없지 않느냐 하는 생각에 열심히 추진하고 있습니다. 안심해 주시면 고맙겠구요.

그다음 비지정관광지에 대해서 위탁관리하는것이나 직영관리 문제가 나오는데 사실상 두가지 안을 내놨습니다만, 지금 현재 저희들이 직영을 할경우에 주민들이 과연 참여를 하겠느냐, 지금 주민들이 청소를 해도 받아가지고 뛰기 때문에 그 주변에 감시감독도 하고 쓰레기도 자기네들이 아침으로 치우고 하는데 우리 공무원들이 직영을 했을 경우에 과연 주민들이 적극적으로 참여하겠느냐 이문제도 지금으로서는 명쾌한 답변을 드릴수 없고 고심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근본적인 문제는 저희들이 여름철에 해수욕시즌에 바닷가에 있는 시군을 보면 전체 공무원들이, 민원 상대하는 분들만 두고 전체공무원들이 바다에 가서 지도감독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이것을 일년내내 하는것이 아니고 최장 2개월인데 저희 군산하 전공무원을 가급적 많이 밖으로 내보내가지고 지도감독을 하면 현재까지 운영한것 보다는 개선되지 않겠느냐 그렇게 운영을 개선해보도록 하겠습니다.

○ 金斗經 委員 : 산림 순시원 식으로 유급감시원을 어떻게 이용할수 있는 대책은 없습니까?

○ 文化公報室長 高昶植 :

(중간 녹음불량으로인해 청취불능)

다른 지역에 버리게 되는데 그러한 타지역은 우리 공무원들이 적극으로 나서가지고 지도단속을 하면 나을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 李慶鎭 委員 : 효석공원 도시계획 도로문제는 어떻게 해결이 되었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文化公報室長 高昶植 : 도시계획 문

제는 나중에 도시과에 질의하시면 정확하게 아시겠습니다.

○ 金斗經 委員 : 저는 공보실에서 사업을 하시기 때문에 말씀 드렸습니다.

○ 劉燉文 委員 : 한가지만 더 질의드리겠습니다.

관광안내 홍보에 대해서 우리 정선군이랑 인접되어 있는 비행기재 터널을 나가면 정선에는 정선관광홍보를 위치를 잘 만들어서 다른 차들이 정차하고서서 홍보물을 가지고 가면 정선군에 먹거리라던가 관광을 할수 있는 책자라던가 홍보물이 들어있는데 우리 평창군에도 비행기재 터널을 나오면 정선과 같이 우리 평창군에 관광지의 홍보가 있으면 본위원이 생각하기에 좋을것 같고 또 군 경계에 관광홍보 표식판이 어떻게 되었는지 정선군이 평창군 경계로 넘어와가지고 서있습니다. 그것이 메스컴에서도 한번 나온것으로 본위원은 알고 있는데 이것을 정정해가지고 옮기자면 막대한 돈을 들여서 제작했는데 파옮기기 워낙 그러니까 평창군이라고 그 밑에 적겠노라고 이렇게 방송이 나온것으로 알고 있는데 아직까지 시정이 안되었습니다. 실장님이 현지에 한번 갔다오셨는지 우리 평창군에서도 홍보물을 통해 경계지역에 평창선전을 해서 비행기재 터널을 나오게 한다던가 아니면 멧둔재 터널 위치에 차가 정차가 할수 있는 위치에다가 요소요소 만들었으면 하는 생각이 들어 질의을 드립니다.

전부나 그런곳에 가면 많이 있는데 그쪽을 가기 이전에 우리 평창군을 접했을때 평창이나 미탄의 경계에는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평창군 관광 홍보가 그쪽에도 있어야 되지 않나 싶어서 질의을 드립니다.

○ 文化公報室長 高昶植 :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도 공보실장으로 정선을 넘어가 보았습니다만 우선 고마운 말씀은 위원님 여러분들께서 관광에 대해서 이만큼 신경을 써주시니까 공보실장으로서 열심히 일할수 있는 계기가 아니냐, 하는데 우선 문제는 예산입니다. 예산이 뒤따라

야지 예산이 뒤따르지 않으면 힘듭니다. 정선하고 저희하고 관광에 관한 예산을 비교하면 상당히 뒤져 있습니다.

물론 어떤 위기의식을 느껴서 그렇게 했는지는 몰라도 저희군이 관광에 대한 예산투자가 미흡한것은 사실입니다.

공보실장이 열심히 노력해가지고 많은 예산을 확보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다음 우리관내에 정선 관광안내판이 섰다고 하시는데 그것은 제가 아직 확인을 못했는데 일단 한번 확인해가지고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 劉燉文 委員 : 어디에 서있는가 하면 옛날 구도로로 진입하는 입구에 서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평창군지역으로 한커브 돌아와서 내려왔습니다.

왜 그렇게 되어 있는가 하면 정선은 굴만 빠져나가면 옴지입니다. 겨울이면 빙판이 져서 절대 세울곳이 없어서 평창군땅에 세웠다는 겁니다. 그것이 위법이 아닌지 검토하시기 바랍니다.

○ 禹康鎬 委員 : 우강호 위원입니다. 제가 질의드렸던 노성제 예산집행 내역 및 예산지원 현황에서 군비가 4,160만원인데 이것은 별도로 4,160만원에 관한 부분은 지출된 사항에 대해서 지출증빙 자료를 다 첨부해서 노성제 위원회로 부터 받을것 아닙니까?

○ 文化公報室長 高昶植 : 네.

○ 禹康鎬 委員 : 그러면 성금 들어온 부분이 4,549만원 이거든요. 이 내역을 이번주 토요일 감사끝나는 기간인데 끝나기 이전에 결산서는 안나오더라도 경품찬조내역, 현금이면 현금, 물품이면 물품 정확하게 구분을 해가지고 자료를 제출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 文化公報室長 高昶植 : 알겠습니다.

(서면답변은 끝에실음)

○ 金斗經 委員 : 김두경 위원입니다. 한가지만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이효석 생가에 현재 찾아오는 관광객이 사실상 왔다가 실망할 정도로 다녀 가거든요. 이왕에 생가를 찾아왔을때 누가 안내를 하고 설명을 할수 있는 이러한 제도장치가 수립이 되어 있으면 좋겠지 않는가 이런 뜻에서 실장님께 건의하고

싶습니다.

○ 文化公報室長 高昶植 : 알겠습니다.

○ 金斗經 委員 : 이상입니다.

○ 委員長 金鍾永 : 보충질의 하실분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이 있음)

그러면 문화공보실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문화공보실장 수고 하였습니다.

위원중식을 위하여 감사를 중지한후 오후 2시에 계속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2時58分 監事中止)

(13時58分 監事繼續)

○ 委員長 金鍾永 :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 하겠습니다.

오전에 이어 소관별 감사를 계속 하겠습니다.

[redacted]

다음은 내무과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것을 선언합니다.

먼저 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는 평창군의회가 '9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출석 증언하는 관계공무원의 엄정한 감사수행과 책임성 있는 답변을 듣기 위하여 지방자치법 제36조 제4항에 의거 하는것으로 만일 허위 증언을 하거나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하는 때에는 동법 제36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한 고발 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그러면 내무과장 나오셔서 선서후 서명날인하여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 內務課長 李永德 : 선서, 본인은 평창군의회가 지방자치법 제36조의 규정에 의거 소관업무에 대한 9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것이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하고 이에 선서 합니다. 1995년 11월 27일

내무과장 이 영 덕

(내무과장 서명날인후 선서서 제출)

○ 委員長 金鍾永 : 다음은 감사대상 업

무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內務課長 李永德 : 내무과장 이영덕 입니다.

보고에 앞서 저와함께 내무행정을 이끌어 가고 있는 계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행정계장 김일래 입니다.

(행정계장 인사)

서무계장 신종해 입니다.

(서무계장 인사)

감사계장 신영선 입니다.

(감사계장 인사)

비서실장 허해성 입니다.

(비서실장 인사)

민원처리계장 심종오 입니다.

(민원처리계장 인사)

통신전산계장 이재건 입니다.

(통신전산계장 인사)

이상 6명입니다.

저희과의 업무를 간략히 보고 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는 끝에실음)

이상으로 내무과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委員長 金鍾永 : 내무과장께선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여러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內務課長 李永德 : 한가지 양해말씀 드리겠습니다. 저희 감사자료중에서 9번 기관별 일용직 고용현황을 당초에 제출해 드렸던것과 상이하기 때문에 별도로 자료를 만들었습니다. 각읍면 실과소에서 전부 자료를 받아가지고 취합하는 과정에서 누락되는것이 있어 가지고 다시 확인을해서 별도로 작성해서 자료를 드렸습니다. 사과 드립니다.

○ 李洙現 委員 : 이수현 위원입니다.

먼저 사회단체 예산지원 현황을 보면 바르게살기협의회 정액보조 해서 95년도 예산편성지침에 의거 지원이라고 자료를 제출해 주셨는데 본위원이 알기로는 예산편성 지침이라는 것이 중앙정부, 다시 말해서 내무부에서 어떤 일방적인 지침에 의해서 우리 지방자치단체에서 거기에 의거해서 예산을 편성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이것이

지방자치제에 어떤 대표적인 모순된 점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예산편성지침에 대해서 과장님은 어떤 견해를 가지고 계시는지 말씀을 해주시고 또 일방적인 중앙정부의 이러한 예산편성지침으로 인해서 거기에 따르는 부작용과 이에 따르는 불이익은 없는지 그 내용을 설명해 주시기 바라고 그다음 민주평통협의회에 3/4분기 운영보조금이 하나도 지출이 되지 않았는데 그 내용에 대해서도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서 재향군인회에서도 94년도에 본 위원이 알기로는 200만원이라는 6.25행사 자금이 지원된것으로 알고 있는데 95년도에는 500만원이라는 2배이상의 지원금이 나간 이유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6페이지를 보시면 군수및 부군수 특수활동비 및 업무추진비 지출내역이 있는데 이 내용을 6.27 이후에 민선 군수가 출범을 하고 지출된 금액하고 그 이전에 사용하신 금액하고 자료가 준비가 되시면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20페이지를 보시면 제12회 직원가족 체육대회 내용에 481만원을 시상품 구입비로 하셨는데 시상품 구입비 내용에 대해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內務課長 李永德 : 이수현 위원의 질의에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예산편성 지침은 매년 중앙에서 통과해서 예산편성이 되면 내무부에서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예산편성지침을 줍니다. 이것은 시군간, 그다음 시도간 형평을 유지하기 위해서 편성지침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사실 지방자치시대가 되면 이런 사항이 전부 없어지고 우리 의회에서 자율적으로 해야한다는 아직까지 예산편성 지침을 줘서 거기에 의해서 편성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개선되어야할 것이라고 생각되고 너무 개발을 하다보면 의회 자치단체간에 불균형을 초래하기 때문에 그런것도 조금 염두에 둬야 되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바르게살기 운동은 금년까지는 정액보조

단체였습니다만, 96년도부터는 정액단체에서 제외가 됩니다.

그리고 민주평통협의회 3/4분기 미집행된것은 전에 여직원을 한사람 채용을 해서 계속 근무를 했었는데 여직원이 상반기에 나갔습니다. 그래서 급료가 안나가기 때문에 집행이 안되고 있습니다.

그다음 재향군인회에 500만원이 지원된것은 45주년 6.25행사를 금년 광복50주년을 맞아서 안보태세를 강화하기 위해서 전국적으로 일제히 행사를 하도록 지시가 되어가지고 저희만 한것이 아니라 전시군이, 전국이 다 똑같이 6.25행사를 다른해 보다 거창하게 하다보니까 이렇게 많은 예산이 소요 되었습니다.

그것은 양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관선 자치단체장의 업무추진비는 상반기에 50%를 썼고 나머지 하반기 50%를 가지고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구분이 안되었는데 별도로 구분을 해서 서면으로 제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서면답변은 끝에실음)

다음은 직원가족 체육대회는 공무원과 가족전체가 1년에 한번씩 체육대회를 하는데 여기는 모여서 게임을 하고 그러기 때문에 경기가 상당히 많습니다. 인원이 많기 때문에 시상품을 생필품으로 구입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생필품 셋트를 사서 전부준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것도 필요하시다면 상품구입내역을 별도로 서면으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서면답변은 끝에실음)

○ 李洙現 委員 : 고맙습니다. 한가지만 더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본 위원이 알기로는 평창상수도 감사결과가 이미 통보된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내용에 대해서 알고 계시면 과장님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內務課長 李永德 : 평창상수도 감사를 지난번 8월달에 감사원에서 감사관 2명이 오셔가지고 감사를 하셨습니다. 결과가 얼마전에 통보가 왔는데 그당시에 현장감독이였던 장근용 계장을 인사조치하라고 지시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장계장이 마침 8월달에 평창읍에서 우리 방제계로 옮겼기 때문에 지금 인사

조치를 하면 다시 더좋은 상향직급으로 가야하기 때문에 저희가 인사조치를 못하고 있고 단, 직제개편이 되면 하향조정을 해서 인사조치를 할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외 다른분들은 훈계라던가 주의를 주도록 되어서 그렇게 조치를 했고 그다음 집수매거 공사는 1억6,100만원어치 인데 이것은 재시공 명령이 떨어졌습니다. 유성건설로 하여금 재시공토록 지시가 되어 지금 관련과에서 재시공에 이미 착공한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 李洙現 委員 : 이미 상수도 재시공 조처에 대해서 이미 공사를 시작 했습니까?

○ 內務課長 李永德 : 자재가 입하했다고 보고를 받았습니다.

○ 李洙現 委員 : 알겠습니다.

○ 李相薰 委員 : 이상훈 위원입니다. 이수현 위원의 민주평통에 대한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기획실의 자료에 민주평통 지출내역이 기록이 되어 있는데 내무과에 나와 있는 자료를 보니까 더불된것이 있습니다. 12페이지인데 2월 18일날 61만2천원이 기획실 자료와 더블되었고 그다음 4월 15일자 2/4분기 114만7,500원도 더블된 것입니다. 그리고 내무과장 8월 25일자 강원지역 출범회의 참석 173만8,800원은 그때당시 경비 쓴것이지요?

○ 內務課長 李永德 : 네.

○ 李相薰 委員 : 우리 통장에 넣어준것은 없고, 그러니까 내무과에서 민주평통에 금년도 예산지원액은 서울에 상임위원회의참석여비 9만7천원하고 우리 월례회 운영보조금 24만원하고 그다음 통일정책보고회 보조금 50만원, 그다음 회의참석비 9만7천원, 이것뿐입니다. 지금 민주평통 회의장으로서 기획실 자료하고 내무과의 민주평통 예산이 너무많이 쓴 것같은 기분이 나기 때문에 위원님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제가 말씀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 內務課長 李永德 : 정기 운영보조금은 저희하고 거기서도 예산집행사항이 나오다 보니까 기획실하고 나왔는데 별

로 더 나간것은 아닙니다. 거기서도 자료에 나왔을뿐이지 중복나간것은 아닙니다. 그렇게 양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 李相薰 委員 : 그러니까 기획실에서 계획을 해가지고 내무과에다 지시를 하니까 내무과에서 쓴것으로 해놓고 기획실에서도 쓴것으로 해놓고 이래서 더블되는데 그렇게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 李慶鎭 委員 : 이경진 위원입니다. 먼저 지방공무원임용령에 보면 제27조에 의하면 지방직 공무원은 동일보직에서 1년 주민등록 민원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은 1년6개월, 감사.병사.세무.법무분야에 근무하는 담당공무원은 동일 근무지에서 2년이상이 있어야지만 자리를 옮길수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규정대로 하지 않은 부분이 있는지 혹시 의문이 나서 질의를 드리는 것이니까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또 한가지는 94년도 각종 감사지적사항 처리결과를 보면 94년 읍면 행정사무감사 처리에 보면 39명에게 행정상의 조치를 취했고, 47명에게 신분상의 조치를 취했고, 그리고 5,100만원이 재산상의 추징및 기타 조치를 했다고 자료에 나와있고 그다음 93년도 강원도종합감사 결과조치사항을 보면 60명의 공무원에게 행정상의 조치를 취하고 24명에게 신분상의 조치를 취했으며 3,900만원의 재산상의 조치를 취했습니다. 이것은 94년도 군정질문에서 답변한 자료입니다. 이것은 95년도에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떤 차이가 있는지 95년도 실적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공무원 창안제도에 대해서 94년에는 1건이 채택이 되어서 10만원의 상금을 받았고 접수는 86건이 된것으로 저희가 자료를 가지고 있는데 95년도에는 몇건이 제출이 되었으며 시상은 몇건정도에 어떻게 되었는지 그 내용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內務課長 李永德 : 공무원들의 잦은 이동으로 인해서 민원부서나 감사부서 병무부서 같은 경우는 업무가 연속이 안된다고 해서 거기에 보직받은 분은 빨리

기한내 일정기간을 두고 그 기한내에 전보를 못하도록 그렇게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가급적 그런 규정을 지키고 있고 특히 승진이라던가 이런 경우는 부득이 하게 자리를 옮겨야 될 경우는 병무직원은 병무청의 승인을 받고 감사직원은 도 감사담당관실과 협의를 해가지고 부득이한 경우만 그렇게 하는 경우가 있는데 지금 숫자는 못외우고 있습니다. 그것은 별도로 필요하시면 그 사항을 서면으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서면답변은 끝에실음)

○ 李慶鎭 委員 : 그 부분에 대해서는 기간 이전에 특별한 이유가 있이 그 자리를 이동한 부분이 있으면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94년 각종 감사지적사항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內務課長 李永德 : 1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상급기관 감사의 지적사항인데 저희가 94년과 95년 도라던가 상급기관의 감사를 받아가지고 총 조치된것이 시정이 23건, 그중에서 22건이 완결이 되었고 한건이 처리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주의가 31건에 31건이 완결이 되었습니다. 그것은 94년도에는 시정이 22건이 다 완료가 되었고 주의가 31건이 완료가 되었습니다. 95년은 시정 1건을 받아서 지금 처리중에 있습니다.

신분상 조치는 전부 65명중에서 경징계가 8명이 지시가 되었습니다.

징계는 경징계, 중징계가 있는데 중징계는 파면이라던가 정직 이런것을 중징계라 그리고 경징계는 감봉이하를 경징계라고 합니다. 도에서 8명에 대해서 경징계가 떨어졌는데 저희는 6명만 경징계를 하고 2명은 훈계로 훈격이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상부에서 57명을 훈계나 주의하라고 그런것을 2명을 저희가 인사위원회에서 자체적으로 훈격을 낮추어서 59명을 훈계, 주의를 했습니다.

그리고 재정상 조치는 11건에 조치지시가 2억4,200만원이 지시가 되어가지고 완결이 다되었는데 이것은 추징이 1억 7,800만원, 세입조치가 1,800만원, 기타

는 4,500만원인데 이것은 감액조치 된것입니다.

저희가 감사지적사항 처리결과를 95년도에 말씀드리면 감사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원 산림훼손분야 감사를 94년 4월 8일부터 4월 16일까지 감사원에서 받았고 강원도 회계검사를 94년 5월 30일부터 6월 3일까지 강원도로부터 받았습니다. 다음 인허가 특별감사를 역시 94년 5월 19일부터 5월 20일까지 강원도를 통해서 받았고 취약지역 민원특별감사를 11월 14일부터 15일까지 강원도를 통해서 받았습니다.

지방세 특별감사는 94년 11월 28일부터 12월 15일까지 내무부에서 한달간 있었습니다. 그다음 평창상수도시설공사에 대한 감사를 지난 9월 12일부터 15일까지 감사원에서 2명이 와서 했습니다.

95년도 자체감사 사항을 말씀드리면 4대 지방선거관련 특별 복무점검을 5월달에 실시를 했고 그다음 시내버스 경로승차권 유출실태 감사를 4월달에 했고 초지조성허가 관련 감사를 4월달에 했고 95 자체 회계감사를 7월 18일부터 28일까지 했습니다.

그리고 95상반기 업무추진비 감사를 8월달에 실시했습니다.

○ 禹康鎬 委員 : 우강호 위원입니다. 감사부분에 대해서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95 군자체감사 지적사항 및 처리결과에 모든것이 다 처리되고 처리중인것이 8건이 있습니다. 그것이 전부다 재정상 조치로 되어 있거든요. 그 부분 세입조치가 안되어 있는부분 1,228만6천원인데 이부분에 대한 답변도 같이 해주시고 아울러서 군 자체감사 지적사항및 처리결과는 언제까지 기준입니까?

자료제출된 날을 기준으로 만들었습니까

○ 內務課長 李永德 : 네.

○ 禹康鎬 委員 : 그럼 저희 군의회에서 본위원이 군정질문때 질문했던 부분입니다. 자체감사라고 했을때 의회에서도 요구했던 부분에 대한 그런답변까지 함께 답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 內務課長 李永德 : 재정상 조치가 아

직 처리가 안된것은 세입조치가 아직 안 되었는데 이것은 계속해서 독려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직 미결로 남아 있는데 조속한 시일내 완결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禹康鎬 委員 : 조례 재정문제 때문에 제가 군정질문에서 담당했던 기획실도 관련이 있을테고, 사회진흥과, 사회과 전부다 관련이 있지 않습니까?

○ 內務課長 李永德 : 네.

○ 禹康鎬 委員 : 그부분에 대해서 내무과 소관 이잖습니까? 인사위원회라던가 전혀 아직까지 안하셨을텐데, 어떻게 하실것인지?

○ 內務課長 李永德 : 지난번 특별회계 조례관계 때문에 질문하시는 것이지요?

○ 禹康鎬 委員 : 네. 그렇습니다.

○ 內務課長 李永德 : 그것은 아직 저희가 종합감사를 할려고 그부분에 대해서는 아직 못했습니다. 그 관계도 조사를 해가지고 관련공무원에 대한 인사위원회를 개최해서 인사위원회에서 결정사항이기 때문에 제가 여기서 어떤 처벌을 준다고 지금 말씀드릴수 없습니다.

일단 다음 인사위원회에 거론되도록 자체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 禹康鎬 委員 : 다시 말씀드리지만 경미한 사안으로 처리될 부분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엄격히 따지면 의회에 대한 도전이라고 저희 위원들이 생각하고 있는데 그부분은 심도있게 다루어 주시도록 다시한번 말씀 드리겠습니다.

○ 內務課長 李永德 : 네. 참고 하겠습니다.

제안제도는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전년도에는 여러건이 나왔습니다만, 채택할만한 것이 없어서 한건밖에 안했고, 금년에는 제안제도가 상당히 여러건 왔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실과장 회의에서도 심도있게 제안설명에 대해서 검토를 해가지고 금년에는 좋은안이 많이 나왔다 해서 저희가 채택을 해서 운영을 하기 위해서 지난번 말씀드린대로 여러건에 대해서 시상을 하고 92년도에는 52건이 접수 되었습니다. 그래서 7건을 우수제안으로 채택해서 특별상 1건, 장

려상 3건, 우량상 3건 해서 7건을 저희가 표창을 한바 있습니다.

○ 李慶鎭 委員 : 그부분에 대해서 제가 문화공보실에서 신문의 광고기획이라던가 반상회를 게재할때 광고문제를 공보실에서만 할것이 아니라 의회하고도 광고내용에 대해서 기획할 당시에 우리도 참여하던지 아니면 최종적으로 의회에서 의견을 들을수 있게끔 제가 요구를 했었습니다. 그랬더니 공보실에서 좋은 말씀이라고 그렇게 하기로 답변하셨는데 공무원 창안제도도 저희들이 판단하기에는 집행기관에서 보는 입장하고 의회에서 보는 입장하고 견해차이도 있을것 같습니다. 그래서 가급적이면 창안제도로서 접수된 안건이 52건이나 있는데 이것을 채택하기 전에 의회하고도 같이 공동으로 연구해볼 필요가 있지않은가 이렇게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 內務課長 李永德 : 금년분은 이미 저희가 다 심의를 해가지고 시상을 완료했습니다. 내년도 제안제도시에는 의회도 같이 참여해서 검토를 하도록 추진해 보겠습니다.

○ 李慶鎭 委員 : 고맙습니다.

○ 禹康鎬 委員 : 우강호 위원입니다. 9번째로 제출된 평창군 기관별 일용직 고용 현황인데 제가 연도별 직종별 인원 예산집행 평균임금을 통한 고용관리사항 전반에 대해서 질의를 했습니다.

실지 인원수로 보면 본청이 계속 51명에서 55명으로 늘었거든요. 그다음 69명 71명 73명이 늘었는데, 평창군 전체적인 일용직, 고용직 공무원들이 광장히 타시군에 비해서 승진이 늦는것으로 알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 그다음 예산집행에서 실질적으로 점점 늘어가는 인원에 대해서 앞으로 어떻게 대처할 것인지 같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니다. 그다음 민원1회방문 처리 운영실태 처리건수가 굉장히 많은 건수가 되어 있는데 실질적으로 민원1회방문 처리가 제대로 되고 있는지, 안된다면 왜서 안되고 있는지 아울러서 전일근무제는 시행한지 얼마정도 되었습니까?

○ 內務課長 李永德 : 2주 되었습니다.

○ 禹康鎬 委員 : 전일근무제 문제도 함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內務課長 李永德 : 평창군이 공무원 정원이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영월이나 정선보다가 정원이 한50명에서 118명까지 적습니다. 저희 정원이 619명입니다. 그리고 영월이668명, 정선이 736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인근 군보다 저희가 50명내지 118명이란 인원이 적습니다. 정규직 정원이, 그러다 보니까 일용직을 쓰고 있고 일용직도 몇년전에 저희가 감축을 해가지고 약 40명을 감축을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정규직 정원도 적은데 일용직까지 저희가 감축을 해가지고 저희가 상당히 일을 하는데 어려움이 있는줄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예산사정이 허락치 않기 때문에 일용직을 감축 했습니다.

그러고 호봉과 승진문제는 저희가 타시군보다 좀 불리한것이 있는것이 왠가하면 조금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정원이 적다보니까 승진이나 올라갈수 있는 기회가 적습니다. 그래서 상대적으로 인원이 적기때문에 승진자리가 적어지지 않나 생각됩니다. 그리고 호봉문제는 규정에 의해서 매년 1호봉씩 올라가기 때문에 호봉에 대해서는 별로 문제가 없는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전일근무제는 앞으로 내년도에 전공무원에 대해서 한주 토요일은 종일 근무를 하고 다음 토요일은 쉬는 것으로 해가지고 전직원이 나와서 토요일 반일 근무하는것을 주5일 근무제로 전환하기 위해서 지금 시험적으로 11월, 12월동안에 민원부서에 대해서 그것도 과장을 제외한 6급이하 공무원에 대해서 전일근무제를 2주 시행을 했습니다. 해보니까 문제가 되는것이 간부들은 토요일 오후 1시까지 근무하고 전일근무제를 안하니까 다 나가고 민원근무자만 남아서 근무를 하는데 사실 제대로 근무가 안되는것 같고 또 민원인들이 아직 홍보가 안되어서 민원처리건수가 미비한 실정입니다. 앞으로 잘 홍보를 하면 될것 같고, 또 한가지는 도와 서로 연계가 잘안되어서

지적같은 경우는 전산을 도 전산실에서 1시만 되면 퇴근을 하기 때문에 열어놓지를 않기 때문에 그런것은 발급을 못하는 불합리한 점이 있습니다. 이런것은 연말까지 시험운영을 해서 그것을 미비사항에 대해서는 저희가 건의를 해가지고 좋은방안으로 정착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禹康鎬 委員 : 전일근무제 시범실시하고 있는 시군이 몇개나 됩니까?

○ 內務課長 李永德 : 지금 전체적으로 다하고 있습니다. 저희군은 의료원이라던가 기획실, 민방위과 같은 부서는 제외하고 민원을 취급하는 부서만 11월과 12월에 시범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민원1회처리방문제는 저희가 잘 안되는것 같아서 그것을 하기 위해서 읍면에다가 군에 안오시고 민원인들이 직접 면을 통해가지고 민원을 제출하면 면에서 받아가지고 저희한테 제출하고 중계민원도 하고 있고 그래서 1회방문처리제가 정착되도록 노력을 하고 있지만 민원종류에 따라서 복잡한 민원은 사실상 1회방문처리가 좀 어려운 상황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 위원님들 앞에 책이 놓여 있습니다만 민원1회방문처리를 위해가지고 책자도 발간해가지고 지금 읍면에도 나눠주고 전공무원한테 나눠주고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곧 정착이 되리라고 생각됩니다.

○ 禹康鎬 委員 : 받아들이는 주민들 입장도 그렇지만 민원1회방문처리하고 전일근무제는 상당히 많은 홍보가 필요할 것으로 생각 됩니다. 홍보에 적극적으로 대처를 해주시고 일용직 고용현황에 대해서 공보실에 군정홍보요원보조 280일, 관광안내원 300일짜리가 있는데 이 관광안내원은 어디에 근무하는 보조요원입니까?

○ 內務課長 李永德 : 홍보요원이나 관광안내원이나 전부다 공보실에서 업무보조를 하고 있습니다. 관광업무하고 홍보업무에 대해서 업무보조를 하고 있습니다.

○ 禹康鎬 委員 : 그럼 관광안내원이 아니고 그냥 공보실에 업무보조로 있는데

업무별소관으로 해서 관광안내원 300일 기준으로 하는 겁니까?

○ 內務課長 李永德 : 군정 홍보요원 1명은 기자실에서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관광안내원은 공보실에서 관광업무보조를 하고 있습니다.

○ 禹康鎬 委員 : 환경미화원 2명은 따로 되어 있는데 여기는 군청에 있는 환경미화원 입니까?

○ 內務課長 李永德 : 네.

○ 禹康鎬 委員 : 그럼 읍면별 고용현황에 대해서 지난번에도 질의를 드린적이 있는데 평창읍이 환경미화원이 13명 입니다. 작다고 생각되는 면은 3명에서 2명, 이렇게 되어 있고 진부면같은 경우 도암면같은 경우 7명씩 되어 있습니다. 물론 읍이기 때문에 그러한 직제상의 문제도 있겠지만 실질적으로 인원이 필요한곳은 인원이 없어서 고생하고 평창읍같은 경우 본위원이 알기로는 진부의 쓰레기 3분의 1정도 나오면 맞을거라고 생각되는데 13명이라는 인원이 있고 진부같은 경우에 7명인데 상당히 문제점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직제상의 문제겠지만 실질적인 인원이 배정되는 것이 어떨까 싶은데 그럴 계획은 안가지고 계신지,

○ 內務課長 李永德 : 일용직은 사실 저희가 내무과에서 인원보완 하기 위해서 인원파악만 하는것이지 각과에서 필요에 의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예산확보도 각 과에서 어느면에 몇명 이렇게 요구를 해가지고 있기 때문에 환경미화원 관계는 환경과에서 지금 쓰레기장이라던가 이런것을 전부 자료를 가지고 있는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때 환경과 행정사무감사 하실때 질의하시면 자세하게 알수 있을 겁니다.
저희들은 그런 내용까지는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 禹康鎬 委員 : 알겠습니다.
다음은 20쪽인데 95직장체육활동비 지원내역입니다.
제12회 직원.가족체육대회때 무려 2,379만3천원이 지출이 되었습니다.
가족들하고 하루 즐겁게 잘 화합하는 차

원도 물론 좋지만 먹어서 없애는데 무려 1,500만원이라는 돈을 소모를 했습니다. 직장체육대회때 2,300만원씩 들여서 성대하게 해야될 필요가 있을것이며 그것도 먹는데 1,500만원씩 들여서 하루 먹고 없애야 되는지, 그다음 환경보호과에서 주관했는지는 모르지만 환경미화원 체육대회할때 200만원을 군비를 지원해 주었는데 가장 소외받고 어려운 직업이라고 하는 분들에게는 200만원해서 국밥한그릇 그렇게 먹고 말았는데 차라리 그것가지고 하루 1,500만원씩 먹고 마시는것 가지고 환경미화원 체육대회할때 유니폼이라도 한벌 따뜻하게 해주었으면 훨씬 좋지 않았겠습니까? 제13회 체육대회, 직원.가족 체육대회를 한다면 또 이렇게 먹고 없애는 쪽에다 1,500만원씩 투자를 할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內務課長 李永德 : 네. 말씀 드리겠습니다.

미화원은 숫자가 그렇게 많지 않은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은 군산하 전체공무원 가족까지 다나오기 때문에 금액은 많은것 같습니다만, 사실 머리수로 나누면 1인당 불과 얼마 안됩니다.

점심식대하고 그다음 먼곳에서 오시는 분들은 차량비가 있습니다. 그리고 약간의 소주 정도 밖에는 되지 않습니다.

의원님들도 앞으로 내년도에 참석하시겠습니다만, 금년에도 의원님들과 같이 행사를 할려고 했습니다만 행사가 겹쳐서 그렇게 못했습니다. 공직자들이 상당히 위축되어 있고 또 사기가 저하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몇년전부터 하고 있는데 12회째 계속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위상이 가장 공무원들이 하루 만나서 서로 알수있는 그런 계기가 되기 때문에 이 대회를 운영합니다. 그러니까 가족까지 참여하기 때문에 호화판은 되지 않고 점심에다가 소주하고 안주정도밖에 안된다는 것을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 禹康鎬 委員 : 전체 가족까지 포함해서 점심하고 소주먹는데 1,500만원이면 적습니까? 적은돈이 결코 아닙니다.

참고로 94년도에는 얼마정도 소요되었습니까?

○ 內務課長 李永德 : 94년도에도 이것보다 조금적거나 그럴겁니다. 거의 비슷 할겁니다.

○ 禹康鎬 委員 : 96년도에도 이정도 예산을 가지고 13회 직원.가족체육대회를 준비를 하실텐데 좀더 효율적으로 운영이 될수 있도록, 실지 다른명목은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는데 급식비 해가지고 1,494만원이 지출이 되지 않았습니까?

○ 內務課長 李永德 : 급식비와 차량비까지 전부 포함되어 있습니다.

○ 禹康鎬 委員 : 그러면 기념품 구입비 시상품 구입비 해가지고 이것도 무려700만원이 넘는 돈인데요. 소모성 돈이 너무 많이 들어가는것이 아닙니까?

○ 內務課長 李永德 : 기념품도 1가족당 5천원정도 입니다. 그래서 그날 행사를 하는데 운동선수로 나와서 뛰신분은 상품을 타가지고 가시는데 안뛰신 분들은 그냥 돌아가시기 때문에 기념품을 한가정당 5천원 범위내에서 해서 그것이 260만원이 됩니다. 보시면 알지만 사람 숫자가 많다 보니까 개인별로 따지면 불과 얼마 안됩니다. 양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 禹康鎬 委員 : 제13회 대회는 좀더 짜임새 있고 경비가 많이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 內務課長 李永德 : 네. 검토 하겠습니다.

○ 李洙現 委員 : 이수현 위원입니다. 추가로 질의 하겠겠습니다. 직원.가족체육대회 내용중에 각읍면에 이장단들하고 군수와의 어떤 약속사항이 같이 체육대회를 치루겠다는 내용이 있었던 모양입니다. 그래서 각 읍면에 이장단들이 상당히 반발을 하고 있는것으로 본위원이 알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내용을 알고 계십니까?

○ 內務課長 李永德 : 그렇지 않아도 9회땐가 10회땐가 한번 이장님들하고 같이 체육대회를 했었는데 그때 일부 이장님들은,.운동을 좋아하시는 이장님들은 좋아 하시는데 운동을 안좋아 하시는 이

장님들은 오셔서 운동도 하나도 안하고 그냥 술만 잡숫고 좀 소외되니까 일부 이장님들이 불평하시고 그랬습니다. 또 이장님과 같이 하다 보니까 경기가 과열되어가지고 그런문제도 있었습니다.

예산문제도 있고 그래서 그렇게 되었고 읍면에다 물어보니까 대부분들의 이장님들은 원치를 않았습니다. 몇개리 이장님들은 원했고 대부분 이장님들이 원하지 않은분들이 많아서 경비관계도 있고 해서 금년에 이장님들을 제외 했습니다.

○ 李洙現 委員 : 문제는 말입니다. 결국에는 일부지역에는 이장들과 같이 체육대회를 하겠다 하는 대답을 군수가 했다는 얘깁니다. 결국에는 약속 불이행으로 인해서 이장님들이 분개한것으로 본위원이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명년도에는 그 문제를 다시 신중히 검토를 하셔가지고 무난한 방향으로 이끌어 주실수 있도록 이렇게 부탁을 드립니다.

○ 內務課長 李永德 : 검토를 하겠는데 사실 이장님들까지 오시면 너무 많은 인원이다 보니까 하루에 대회운영을 하는데 어려움이 많습니다. 내년에는 다시 한번 검토하겠습니다.

○ 金斗經 委員 : 김두경 위원입니다. 관변단체인 바르게살기운동 협의회, 지역에서 하는 활동과 내용에 대해서 실적과 정액보조금 사용에 대한 지도감독을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內務課長 李永德 : 네. 바르게살기운동 협의회에 보조금이 분기별로 700만원씩 나가고 있습니다. 여기서 각읍면 바르게살기 협의회가 있어가지고 거기도 지원이 되가지고 정산을 받고 있습니다. 매분기별로 정산을 받고 있는데 바르게살기에서 활동하는 것이 당초에는 활발하고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요즘은 조금 활동이 그전만큼은 활발하지는 않습니다만, 지금도 자연보호라던가 그다음 교통켐페인 같은것을 전개하고 있고 활동을 초창기만큼은 안하지만 지금도 계속해서 꾸준히 년중하는 행사에 대해서는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 金斗經 委員 : 2년전에 바르게살기협

의회장이 혼자서 분기별로 보조가 되는 것을 전부다 사용을 하고 지급 내역도 없고 사용내역도 없고 그래서 상당히 야기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런것을 수시 감독도 하고 지도도 해야 되지 않느냐, 앞으로는 이런예가 없도록 철저한 지도감독이 필요하다고 저는 인정됩니다

○ 內務課長 李永德 : 사회단체에 대해서는 운영비를 다시한번 정밀 분석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내년부터는 바르게살기는 정액단체가 아니기 때문에 보조금이 많이 줄어들겁니다.

○ 金斗經 委員 : 지난번에 최형우 내무부장관 재임시인가 관변단체 보조금을 중지한다는 내용이 있었는데 그후에 별다른 지침이 없었습니까?

○ 內務課長 李永德 : 그 관계는 예산부서로 내려왔기 때문에 저희는 그관계에 대해서는 아직 모르고 있습니다. 단지 바르게살기는 정액단체에서 제외된다는 저희가 관리하는 그부분만 알고 있습니다.

○ 金斗經 委員 : 잘 알았습니다.

○ 禹康鎬 委員 :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통신전산계 직원으로 알고 있는데 4년제 정규대학을 나와서 정보처리기사 1급자격증을 가지고 있는 직원이 1명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기능 10등급으로 채용되었습니까?

○ 內務課長 李永德 : 특별채용으로 9급 정규직입니다. 9급 전산직입니다.

○ 禹康鎬 委員 : 제가 왜 질의를 했나하면 사실 4년제 정규대학을 나와가지고 기사 1급자격증 소지자가 기능직으로 9등급이나 10등급정도 된다면 양질의 자원을 사실 다른곳으로 언제든지 빼앗길 수 있는 그런요인을 안고 있기 때문에 정식으로 채용을 하는것이 바람직 하다는 생각에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행정사무감사 자료 15쪽 입니다. 공중정보통신망 체손 모뎀설치 현황인데 5월 1일날 했는데 이 업체는 어디업체가 와서 했습니까?

○ 內務課長 李永德 : 이것은 주민들 전출입을 통합관리 하기 위해서 설치하는 것입니다. 본사업은 내무부에서 주관

을 했고 데이콤에서 설치를 했습니다.

○ 禹康鎬 委員 : 그럼 그냥 수의계약으로 받아서 전부다 각 읍면으로 설치하고 그랬습니까?

○ 內務課長 李永德 : 내무부주관 사업으로 도에서 일괄 입찰을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저희는 도에다가 부담금만 납부해가지고 한 사업입니다.

○ 禹康鎬 委員 : 알겠습니다.

○ 內務課長 李永德 : 지금은 주민등록이 온라인이 되어 있어서 여기서 서울 가셨다가 서울에서도 주민등록을 본인이 확인만 되면 자기 주민등록을 뗄수있게 되어 있습니다.

전국 온라인망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 李慶鎭 委員 : 6페이지에 주민편익증진 생활민원 기동처리반 운영강화 해서 모니터요원을 183명을 활용을 하셨다고 하셨는데 모니터 요원이라던가 명예 감독관 제도라던가 실질적으로 그런분들에 의해서 민원이 접수되는게가 실제적으로 몇건이나 됩니까?

○ 內務課長 李永德 : 이분들을 이용해 가지고 불편사항을 지금 받고 있는데 저희가 정기적으로 설문서를 내기 전에는 이분들이 자진해서 그렇게 해주고 그런것은 없습니다.

○ 李慶鎭 委員 : 교육도 명예감독관이라던가 모니터 요원을 선정해놓고 교육을 하신다던가 그런 계획도 없으십니까?

○ 內務課長 李永德 : 이분들만은 별도로 안하고 모니터요원들이 이반장으로 되어 있고 하기 때문에 이장교육때 매년 한번씩 정기교육을 합니다. 1월달에, 그때 이런사항을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 李慶鎭 委員 : 명예감독관 같은경우는 이장, 반장으로 되어 있는것이 아니고 전문직으로 되어 있는 분들이 상당히 여러분 계시던데, 저도 명예감독관으로 위촉이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관심이 있으면서도 언젠가는 막연하지만 군에서 어떠어떠한 계획에 의해서 어떻게 해야 된다는 것을 교육할수 있는 기회가 있나 하고 기대도 해보고 그랬는데 전혀 그런것이 없습니다. 앞으로 어떻게 계획을 가지고 철저하게 관리를 해

주셔야 될것 같구요. 그다음 한가지 더 질의를 하겠습니다.

2페이지에 민원처리계를 보면 인허가 민원의 적정처리여부 점검을 과에서 하시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제가 민원처리 업무를 관리하는 직업을 하다 보니까 상당히 문제점화 되어 있는 부분이 있어서 기준과 근거가 있는지를 듣고자 해서 질의를 한가지 드리겠습니다.

예를들어서 저희들이 어떤 인허가 사항에 대해서 법적으로 강력하게 집행을 하면 할수도 있는 부분들이 상당히 많이 있는데 필요이상으로 주위의 어떤 동의라던가 무슨 협조라던가 이것을 서면으로 해서 동의서가 몇명이상 받아야 되고 어떠어떠한 문제가 있을땐 누구의 동의를 받아야 하고 그런 문제들이 있어서 상당히 허가를 내야할 입장에 있는사람들은 애로사항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런 특별한 규정과 근거가 있습니까?

무슨사업은 몇m까지 동의를 받아야 된다던가 가구가 있으면 몇호까지를 한다던가 그런 규칙이라던가 규정이라던가 확실한 근거가 있어서 그렇게 처리하시는 겁니까?

○ 內務課長 李永德 : 동의를 받는것이 동의를 받아야 된다는 그런것이 있는 민원도 있습니다. 어디에 해당 인근주민의 동의를 받아야 된다 하는것도 있고,

○ 李慶鎭 委員 : 그러면 예를들어 송어장 설치를 한다라고 가장을 했을때 몇m까지 동의를 받아야 된다는것이 있습니까?

○ 內務課長 李永德 : 제가 개별사항은 모르는데 보면 해당기관의 동의를 받아야 된다, 이렇게 하는 경우가 있는데 주민동의를 받는다는 것은 우리가 사실 왜 받는가 하면 그것으로 인해서 나중에 허가를 내주었을때 이웃주민들이 반발해서 문제가 생겨서 허가를 해주고 사업착수를 못하고 하는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것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서 방지책으로 지금 민원처리를 하고 있는데 그러므로 민원인들은 상당히 불편합니다만 허가를 내가지고 못하는것 보다는 그렇게 해서 해소하는 방안이 좋지 않나

해서 그런 동의를 받고 있습니다.

○ 李慶鎭 委員 : 제가 생각하기에는 민원인들이 불편하고 이런 차원이 아니라 필요이상으로 동의를 받는다던가 이런 문제가 있으므로 해서 법의 존엄성이 상당히 떨어지는 부분이 있습니다.

주위에서 저 사항은 틀림없이 내가 동의나 협조를 안해주면 군에서 아무렇게 해도 허가는 절대 못내줄것이다, 개인적인 이권이 있어서 감정이 있는 부분을 가지고 동의를 받아오라고 방향을 전환시키니까 동의를 안해주니까 허가를 못내는데 그런문제가 집단민원이 생길수 있는 큰 요인중에 하나라고 생각 합니다. 예를들어 행정적으로 법적으로 집행을 했을때 문제가 있으면 소송을 한다던가 어떤 방법으로든 종결을 지어야 하는데 행정편의주의라는 표현을 써서 어울릴런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나중에는 너희들이 다 동의를 해주었으니까 허가를 해주었는데 이제와서 무슨얘기냐, 행정쪽으로만 편리하게 처리하기 위해서 그런 규정으로 적용하는것 같은 생각이 들어서 말씀 드렸는데, 앞으로는 동의나 협조를 구해야할 서류상으로 문서상으로 해야할 부분이 있으면 어떤 근거에 의해서 할수 있게끔 명백하게 제시를 하시고 그 이후에는 행정적으로 처리되는 문제에 대해서는 근거가 없는 부분에 대해서는 법적으로 소송을 시킨다거나 이렇게 처리가 되야 하는데 그런일이 이시간 이후에는 제가 판단하기에 기준이 없는것은 적용하지 않았으면 하는 생각에서 질의를 드립니다.

○ 內務課長 李永德 : 고맙습니다.

이 위원님께서 말씀 하셨지만 사실 그런 문제가 많이 있습니다. 민원을 저희가 처리해 주고 나면 인근주민들이 안된다고 아우성을 치고 또 그럼으로 해서 우리 동네가 피해가 온다고 해서 집단행동하는것이 의원님들도 많이 아시고 계실겁니다. 그런 사항이 있다 보니까 행정기관으로서는 그런 업무만 집단행동에 대한 처리만 하다가 세월가고 다른 행정을 못하기 때문에 집단행동을 사전에 방지하자는 차원에서 인근주민의 동의를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것은 가급적 안받도록 할것이니까 저희들도 노력을 하겠습니다.

○ 李慶鎭 委員 : 동의서를 받음으로 해서 집단민원을 야기시킬수 있는 기본적인 생각을 가질수 있게끔 그렇게 합니다 이것은 주위에서 동의를 안해주면 안된다, 나중에 전부다 실력행사만 하면 모든것이 해결된다, 그런식으로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필요없이 동의서를 요구하시는 일, 그렇게 함으로 해서 처리하는데 어려움이 더 있을겁니다. 그러니까 동의문제는 신중하게 근거에 없는 것은 집행기관에서 확실하게 법대로 처리하시는 것이 더 집단민원을 야기시키지 않는 요인이 될것입니다.

○ 內務課長 李永德 : 참고로 하겠습니다.

○ 李慶鎭 委員 : 그리고 한가지만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작년도 군정질문에서 답변하신 자료중에서 행정구역 개편에 대해서 심도있게 검토를 해보신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작년도 자료를 보면 20세대 미만의 동네가 8개리가 있고 50세대 이하가 68개리가 있고 200세대 이상으로 과다한 리도 5개리정도 있다고 답변하셨습니다.

그 이후에 충분히 해당읍면장과 의견을 통하여서 행정구역 조정을 심도있게 검토해 나가겠다, 이런 답변을 하셨는데 그 이후에 추진하고 계시는 내용이 있으십니까?

○ 內務課長 李永德 : 행정구역 개편은 상당히 민간한 부분입니다. 주민들과 이해관계가 엇갈리는 문제이기 때문에 주민들 전체가 원해야지 하지 저희가 행정을 편하게 하기 위해서 몇호 안되는 마을을 없앤다고 하면 마을주민들은 자기네 마을이 없어짐으로 해서 호적이라던가 주민등록상에 전부 마을이 없어지고 다른마을이 되기 때문에 굉장히 강한 반발이 있습니다. 계속 협의를 하고 추진을 합니다만 어려움이 많습니다.

○ 李慶鎭 委員 : 깊이있게 처리하신다고 답변하셨기 때문에 물어보는데 리별로 파악된 사항은 있습니까?

○ 內務課長 李永德 : 네.

○ 李慶鎭 委員 : 가능하다면 서면으로 제출받고 싶습니다.

○ 內務課長 李永德 :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서면답변은 끝에실음)

○ 委員長 金鍾永 : 보충질의 하실분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이 있음)

그러면 내무과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내무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위원휴식을 위하여 감사를 중지한후 오후 3시30분에 계속 하겠습니다.

감사 중지를 선언합니다.

(13時12分 監査中止)

(13時32分 監査繼續)

○ 委員長 金鍾永 :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 하겠습니다.

[redacted]

다음은 사회진흥과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것을 선언 합니다.

먼저 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는 평창군의회가 '9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출석 증언하는 관계공무원의 엄정한 감사수행과 책임성 있는 답변을 듣기 위하여 지방자치법 제36조 제4항에 의거 하는것으로 만일 허위 증언을 하거나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하는 때에는 동법 제36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한 고발 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그러면 사회진흥과장님 나오셔서 선서후 서명날인하여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 社會振興課長 宋在明 : 선서, 본인은 평창군의회가 지방자치법 제36조의 규정에 의거 소관업무에 대한 9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것이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하고 이에 선서 합니다. 1995년 11월 27일

사회진흥과장 송 재 명

(사회진흥과장 서명날인후 선서서 제출)

○ 委員長 金鍾永 : 다음 감사대상 사무

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社會振興課長 宋在明 : 사회진흥과장 송재명입니다. 보고에 앞서 저와함께 일을 하고 있는 계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진흥계장 김영석 입니다.

(진흥계장 인사)

개발계장 김진영 입니다.

(개발계장 인사)

건전생활계장 임준환 입니다.

(건전생활계장 인사)

다음은 사회진흥과 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는 끝에 실음)

이상으로 사회진흥과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委員長 金鍾永 : 사회진흥과장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여러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李相薰 委員 : 이상훈 위원입니다.

도정의 역점 시책사업으로 추진중인 농어촌마을길 포장사업은 92년도부터 96년까지 5개년 사업으로서 연차 시행하고 있는데 92년부터 95년까지 투자비는 얼마나 투자가 되었으며 97년도 후반기에 마을안길 포장사업에 대한 계획이 있으신지 확실한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평창 노성정 궁도장 건립에 대해서 한가지만 질의 하겠습니다.

소요예산을 보니까 23억2,300만원이 투자가 되었는데 당초에 건립을 할 당시에 5,000만원 가지고 궁도장을 짓는다고 했습니다. 군의회에서 위원들이 심의과정에서 당초에 5,000만원을 승인을 해줄까 하다가 너무 규모가 저렴하다 해서 고전미를 살리고 이래서 추가 추가 해가지고 현재 23억이라는 예산이 투자가 되어서 건립이 되었는데 평창에 궁도협회 회원들이 당초에 자부담을 5,000만원을 하기로 했습니다. 군에서 자부담5,000만원에 대한 기부금을 입금을 시켜서 총설계할때 같이 설계를 해야 되는데 본 위원이 알기로는 5,000만원을 받지 않고 그냥 설계를 한것 같습니다.

과장님 답변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 社會振興課長 宋在明 :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농어촌 마을길 포장 사업이 95년도까지 투자된 투자액과 97년도 투자계획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농어촌마을길 포장사업은 92년도에 시작을 해서 금년도까지 총 237개 노선에 137㎞를 하게 되어 있는데 지금까지는 저희들이 166개 노선에 73㎞ 정도를 포장을 했습니다.

투자비는 45억 4,800만원정도 투자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내년도에 투자계획은 아직까지 도에서 시달되지 않았기 때문에 확정이 되지 않았습니다. 저희들이 당초예산에는 요구가 안되어 있고 수정예산으로 100억원을 요구 해놓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음은 평창 노성정 건립과 관련해서 소요액이 23억이라고 하셨는데 2억3,000만원입니다. 그리고 평창 궁도협회 회원들이 5,000만원을 자부담에 의해서 사업을 하도록 되어 있는데 이것을 지난해에 사무감사한 자료를 보니까 이것을 총가에 포함시키지 않고 군에서 하는 시설 투자만 사업비로 해가지고 입찰을 봐서 시설공사를 시공을 했고 그다음 자부담에 대해서는 입금조치를 하지 않은 상태에서 사업을 추진하는 것으로 이렇게 계획이 되어 있어서 추진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평창군 궁도협회에서 노성정 설립에 따라서 주민들이 부담한 내역을 보니까 4,899만8천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군에서 별도로 입금조치를 하지 않고 바로 자부담에 의한 시설설계를 해서 추진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 李相薰 委員 : 다시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농어촌마을길 포장사업에 대한 도 역점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데 이것이 92년부터 96년까지 사업을 한다고 했는데 그 이후에 97년도에 가서는 이 사업을 계속해서 할것이냐, 아니면 이사업 자체가 없어 지느냐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 社會振興課長 宋在明 : 이것은 조금

전에 이위원님께서 말씀 하셨듯이 도정 역점시책사업으로 추진하기 때문에 군에서 이것을 계속해서 한다, 또 아니면 중단한다 이렇게 말씀드리기는 어려운것 같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 李相薰 委員 : 그리고 아까 궁도회원 5,000만원 자부담 문제가 자료를 보니까 터파기를 했다, 부대시설에 대한 일부 필요한곳에 돈을 투자를 해가지고 4,800만원을 투자를 했다고 하는데 당초에 자부담을 5,000만원을 내게끔 되어 있으면 5,000만원을 받아가지고 총 공사비로 해가지고 설계를 하고 그래야 되는데, 이 사람들은 궁도장만 건립을 하고 별로 투자한것도 없는것 같습니다.

이러한 행정을 하고 있단 말입니다.

터파기라고 포크레인이나 갔다놓고 어물어물하고 끝마치면 5,000만원의 사용처도 조사를 해보지 않았는데 확실한 근거가 없습니다. 과장님 어떻게 생각 하십니까?

○ 社會振興課長 宋在明 : 이사람들이 5,000만원의 내역을 보니까 성토를 하고 그다음 과녁 암터파기, 암터파기 산림복구, 그다음 과녁 1,2,3관 모래덮기, 또 음수대 설치를 하고 그다음 잣나무를 이식하는데 따른 이식비, 잔디심기, 주변조경, 회양목 조경식재,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궁도협회에서 자부담을 했고 군에서는 노성정 건립에 따른 건물부분만 군에서 시공을 했습니다. 그외 부분은 전부 평창 궁도협회에서 부담을 해서 시공을 했습니다.

○ 李相薰 委員 : 과장님 근무 하기 전에 이루어진 사항이기 때문에 추궁은 하지 않겠습니다. 이것은 말도 되지 않는 사항입니다. 5,000만원 내기로 했으면 5,000만원 내가지고 군에서 건립을 하도록 해야 하는데 자기네들은 돈을 한푼도 안내놓고.....,

이상입니다.

○ 李慶鎭 委員 : 용평리조트 골프장 농약 사용량에 대해서 자료를 보면 용평스키장에는 4/4분기에도 농약을 1,324kg이나 쓴것으로 되어 있는데 지난번에 과장님이 말씀을 하셨고 보광에서도 그런 얘

기를 했는데 보광에서는 4/4분기 10월 11월 12월에는 농약을 안쓴다고 했거든요.

○ 社會振興課長 宋在明 : 네.

○ 李慶鎭 委員 : 그런데 용평스키장은 쓰는데 보광은 정말 안쓰는 것인지 이 부분에 대해서 이해가 안가는데 어떻게 생각 하시는 겁니까?

○ 社會振興課長 宋在明 : 저희들도 당초에는 기업의 관계자들로부터 4/4분기에는, 용평골프장도 사실상 10월달에 휴업신고가 들어와 있는 상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10월 11월 12월을 보통 4/4분기로 보기 때문에 거의 농약을 안쓰는 것으로 그렇게 저희들이 말을 들었고 지난번에 말씀을 드렸는데 이번에 저희들이 용평리조트에다가 자료를 받는 과정에서 보니까 4/4분기에 지난해에 농약을 사용한것을 저희가 받았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된것인가 했더니 지난해에는 썼답니다. 그런데 금년에는 안 쓴것으로 얘기하고 있습니다.

○ 李慶鎭 委員 : 그런식으로 답변 하시니까 할말은 없는데 보광문제가 주민들한테 아주 민감한 문제인데 지금까지 주민들이 염려 하는것이 보광측에서 대처하는 방법이라던가 군에서 대처하는 방법이 주민들을 이해시키기에는 상당히 부족한점이 많습니다. 그런 이유중에 지금 이시간에 다루고 있는 농약을 보광에서는 4/4분기에는 안친다고 군에서도 말씀을 하셨고 본인들도 얘기를 했는데 용평스키장은 치고 있는 자료가 있고 이런 내용들을 주민들이 보면 정말 믿을 수가 없구나 하는 생각을 다시한번 하게 됩니다. 그리고 골프장에서 농약을 구입을 해서 사용을 하는데 보광에서는 주민들 편리와 경제적인 문제를 고려해서 앞으로 군단위 농약상에서 농약을 구입을 한다고 말씀 하셨는데 용평스키장에서는 이많은 농약을 어떤 식으로 구입하고 있습니까?

○ 社會振興課長 宋在明 : 용평은 관내에서 구입을 하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李慶鎭 委員 : 용평이 관내에서 구입

을 하지 않는 것은 제가 판단했을때 집행부에서 이러한 주민들하고 소득관계가 직접 연결되는 부분인데 보광문제가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아무런 관심을 안가지고 계신걸로 그렇게 볼수밖에 없습니다. 보광문제가 진작 나왔으면 주민들이 대처하는 방향도 그렇고 용평스키장도 물론 모든 물품구입이라던가 농산물이고 이런것을 전부다 현지에서 구입할 수 있게끔 이렇게 되었을텐데, 이부분도 역시 보광에서 답변하는것 하고 용평스키장 자료하고는 상당히 차이가 있는것을 알수 있습니다. 농약을 구입해서 쓰고 나머지 처리는 어떻게 합니까?

○ 社會振興課長 宋在明 : 창고에 보관하고 있습니다.

○ 李慶鎭 委員 : 그것을 그다음해에 또 씁니까? 유효기간 이라던가 이런것은 없는겁니까? 왜 그런 말씀을 드리는가 하면 여기 자료를 보면 94년도에 농약을 3,436kg을 구입을 해서 2,750kg을 쓰고 686kg가 남아 있습니다. 그리고 95년도에 2,300kg를 구입해서 892kg을 쓰고 1,400kg가 남아 있는데 다음해 구입할 때는 이것을 플러스 해서 필요한량을 구입하는 것인지 아니면 684kg를 농약 보관창고라고 해서 잘 관리하고 있는 것인지 그런 부분이 상당히 의문이 가는데 확인을 한번 해보셨는지 거기에 대해서 아시는대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社會振興課長 宋在明 : 제가 알기로는 농약에 대해서는 내용연한이 정해져 있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년도에 사용한 잔량은

(이후 녹음불량으로 청취불능)

○ 李慶鎭 委員 : 골프장이 개장이 되면 과장님이 말씀하시기를 농약을 관내 업체에서 사시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고 회사도 그렇게 했는데 용평스키장도 농약문제를 평창군 관내 업체에서 살수 있게끔 종용을 하신다거나 유도하실수 있는 방법을 연구해 보셨습니까?

○ 社會振興課長 宋在明 : 그것을 지난번에 저희들이 평창강오염방지대책 추진위원회와 문제가 생겼을때 평창군의 대처방안으로 내놓은것이 일단 맹독성 농

약이니까 그것을 못믿겠다, 이러한 부분들을 주민들이 요구하니까 저희가 기업에다가 당신네들이 주민들을 믿게 할려면 우리관내에서 판매되는 그러한 농약상에서 농약을 구입할 경우에는 주민들이 믿지 않겠느냐, 라고 저희가 권장을 했습니다. 그랬는데 그것을 보광에서도 좋은 생각이라고 해서 지난번에 주민설명회때 주민들한테 얘기 한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용평에 대해서도 이러한 농약에 대해서는 저희 관내에 농약상으로 하여금 구입토록 적극적으로 권장을 해보겠습니다.

○ 李慶鎭 委員 : 농약문제는 지금 용평이라던가 보광뿐만 아니라 우리지역에 골프장이 또 생길 가능성이 있지 않습니까?

○ 社會振興課長 宋在明 : 네.

○ 李慶鎭 委員 : 이런 부분들을 회사별로 각자 개인플레이를 할것이 아니라 군에서 조정을 하던지 아니면 농약협회를 통해서 단체로 어떤 훌륭한 창고를 짓고 구입도 상당히 많아야 될 부분인데 그렇게 해서 지역에서 농약을 사가지고 의심을 하는 여지를 없애는 부분도 있겠지만 농약상을 하는 주민들의 소득하고도 연관이 되는겁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잘 관리를 해주십시요. 농약문제는 이것으로 질의를 마치고 다음에 보충질의 있을때 다른질의을 다시 하겠습니다.

○ 劉燉文 委員 : 봉평 도읍정비 사업이 3년차에 걸쳐서 상당히 저조한줄 압니다 지금 지상물 철거가 있는데 보면 토지가 155필에 143필이 보상 되었고 지상물 건물에는 58동에서 40동이 보상이 되었는데 본위원이 알기로는 지금 남은 동수하고 토지 필수가 제일 봉평으로 봐서는 중요한 요건에 있는것이 해결이 안된것으로 압니다. 지금 봉평이 보광이 들어와 가지고 땅값상승이 많이 된줄 압니다. 받지 않은 분들은 봉평서 좀 밝다 하는 분들이 안받았는데 거의 받은 사람은 변두리에 있는 사람들이 받은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변두리에 있는 사람들이 받고서 헐지않은 이유가 뭔가 하면 시장안에서 안받은 분들이 조금 더 받으

면 우리도 그 가격대로 전에 받은것이 충족치 않기 때문에 그가격대로 더 추가해 받아야 철거를 하겠다 이런 얘기가 있는데 과장님은 거기에 대해서 아는바가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社會振興課長 宋在明 : 네.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봉평 도옵정비로 인해서 저희들이 보상금을 받고 지장물을 철거하지 않은 사람이 13명이 있습니다. 지금 자기가 택지가 없어서 철거를 내년봄까지 연기를 해달라고 하는 사람들이 7명이 있습니다. 그외에도 저희들이 지금 보면 폐도불하 요구를 하는 사람들이 있고 그다음 일부 도로가 걸리기 때문에 건물을 지을수 없는 집이 또 있습니다.

그러한 집들에 대해서는 행정절차를 관련부서하고 협의중에 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그런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보면 최대석씨 하고 김춘화씨 최영일씨, 이 3동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관련부서와 해가지고 택지를 폐도 할부분은 관련부서와 폐도해가지고 집을 지을수 있는 이런 관계부서와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관련부서에서도 상당히 긍정적으로 검토하고 있기 때문에 이것이 금년내에는 해결이 될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외에 지금 저희들이 보상을 안한사람들이 어떤 보상가가 더 오를것으로 이렇게 기대를 하면서 철거를 안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지금 봉평지역 주민들도 봉평도옵 가꾸기가 3년동안이나 이렇게 추진이 안되다 보니까 이제는 해야되겠다는 그러한 의지들이 지금 주민들로부터 확산이 되어 있습니다.

지난번에도 보상 협의를 하지 않던 분들도 지금 보상협의를 다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겨울이기 때문에 주거문제가 해결이 안된 상태고 보광이 들어옴으로 해서 지난번까지만 해도 방하나에 3만원 하던것이 지금은 방하나에 30만원씩 받는답니다. 이렇게 어려운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사람들로 하여금 겨울이 지난다음 봄에 철거를 하기로 하고 저희들이 거기에 대한 각서를 징구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봄에 건물

올 철거하고 상반기 이전까지는 사업이 마무리 될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 劉燉文 委員 : 그러니까 못받은 분들이 현가격대로 다 받겠다는 각서를 집행부에서 미리 받아 놓았습니까?

○ 社會振興課長 宋在明 : 그각서는 아니고요 건물을 철거하겠다는 각서를 11명으로부터 징구를 했습니다.

○ 劉燉文 委員 : 그러니까 지금 건물가격을 그때 3년전 가격에서 준하면 안된다는 얘깁니다. 지금가격대로 한다면 우리군에서 부담금이 더 늘어난다는 말입니다. 또 1공구 2공구 3공구 이렇게 구분이 되어 있는데 토건사업도 업자가 93년도, 94년도, 입찰을 보고 지금까지 시행하지 않은것은 모든 자재값도 올랐고 물가값도 올랐기 때문에 그때 입찰분 가격대로 시공을 할것이냐, 아니면 다시 재입찰을 봐가지고 한다면 거기에 따른 예산이 얼마만큼 증액이 되는지 전에 과장님께서 군정질문때 1억 5,000만원만 집행부 우리군으로 봐서는 증액이 된다 했는데 그 말씀이 사실인지 확실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社會振興課長 宋在明 : 시설공사에 대해서는 당초에 6억9,200만원이였습니다. 그러던 것이 저희들이 공사 해지명령을 하면서 설계변경을 하는 과정에서 그동안 물가 인상분을 적용을 하니까 8억 6,600만원이 나왔습니다. 당초보다 25%가 2년동안에 증가가 되었습니다. 여기에 따른것을 저희들이 재원대책을 군수님께 보고를 드려서 부족분에 대해서는 약 1억7,000만원정도 인상된것을 포함해서 약 5억5,000만원을 내년 당초 예산에 요구 해놓고 있는 상태 입니다.

○ 劉燉文 委員 : 지금 봉평 도옵정비 가꾸기에 42억원을 지원하게끔 되어 있는데 현재 31억원이 들어갔는데 42억원 외에 더 추가되는대로 계속 추가되면 추가되는대로 자꾸 집행부에서 투자할 계획입니까?

○ 社會振興課長 宋在明 : 지금 계획되어 있는것은 저희들이 내년도에 5억5,300만원만 예산이 승인이 되면 봉평도옵은 마무리가 가능합니다.

그 이상의 추가지원은 없습니다.

○ 劉燉文 委員 : 본 위원이 자세히 듣지는 못했지만 제가 봉평 신협짓는 앞에 건물이 다 없어져야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것을 봐서는 지금 그집이 해결이 된 집입니까?

본위원이 알기로는 그건물 주인으로 하여금 지금 군집행부에서 보완하고 있는 보상금은 안되고 지금 현시가대로 안주면 절대 철거하지 않는다고 이런 말이 있는데 과장님은 거기에 대해서 알고 계시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社會振興課長 宋在明 : 지금 김승래 씨집을 말씀하시는 거지요?

○ 劉燉文 委員 : 봉평신협짓는 새건물 앞에.....,

○ 社會振興課長 宋在明 : 그분들도 보상협의가 되어가지고 지금 보상신청이 들어와 있는 상태입니다.

○ 劉燉文 委員 : 94년도와 비슷한 가격으로 보상이 되었는지요?

○ 社會振興課長 宋在明 : 지난번에 감정한 평가결과에 의해서 보상금 신청이 들어와 있는 상태입니다.

○ 劉燉文 委員 :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李洙現 委員 : 이수현 위원입니다.

이경진 위원님의 질의에 몇가지 보충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용평리조트 골프장은 전국 골프장 중에서 농약사용량이 4위라는 자료를 접한 적이 있습니다. 타 골프장 보다도 크로스하는 기간이 상당히 깁니다. 그런데 날씨도 춥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농약을 많이 쓰는 이유를 혹시 알고계십니까?

○ 社會振興課長 宋在明 : 자료가 나온것 하고 저희들이 자료를 받은것 하고 차이가 있습니다. 신문에 난것 보니까 ha당 20.1kg 사용해가지고 전국에 5위라고 이렇게 메스컴에 난것을 봤는데 금년도 같은 경우에 저희들이 용평의 농약사용량을 보니까 17개 품목에 892.05kg을 했는데 용평에 있는 골프장 면적하고 환산을 해보니까 ha당 사용량이 7.93kg 입니다. 금년도에 사용한것이, 그런것으로 봐서는 이것이 다른곳보다 상당히 적

게 살포되는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 李洙現 委員 : 자료마다 부정확하다는 말씀이지요?

○ 社會振興課長 宋在明 : 저희들은 용평에서 자료를 분기별로 보고를 받습니다.

○ 李洙現 委員 : 좋습니다. 그럼 농약에 대한 재고량을 파악해 보신일이 있습니까? 사용하고 남은 재고량을 분기별로라도 파악 하셨는지요?

○ 社會振興課長 宋在明 : 재고량 파악은 저희들이 재고가 있다는 보고만 받고 실사는 못해 보았습니다.

○ 李洙現 委員 : 그럼 결국은 농약을 얼마나 쓰는지 그사람들이 보고하는 자료에서만 확인될 수 있는 사항 아닙니까

○ 社會振興課長 宋在明 : 네. 그렇습니다.

○ 李洙現 委員 : 사회진흥과에서는 나가서 재고량을 파악하고 실사를 할수 있는 권한은 없습니까?

○ 社會振興課長 宋在明 : 권한은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농약에 대해서는 물론 잘아시겠지만 골프장관리 규정에 의해서 농약구입량및 사용량 보고를 매분기말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따라서 농약잔량 조사하고 그다음 비가 올때는 농약유출 영향조사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거기에 따라서 보고를 받고 또 농약에 대해서는 관리를 하는것이 보건환경연구원으로 하여금 농약잔류량을 조사토록 하고 그결과를 도나 아니면 환경처에서 보고를 받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 李洙現 委員 : 자료를 보면 95년도에 2,301kg를 구입해서 892kg만 사용을 했다라고 나와 있는데 실질적으로 얼마를 썼는지 살포를 얼마나 하고 재고량이 얼마나 있는지 확인을 안해보았으니 정확한 자료가 아니잖습니까? 실사를 안해보셨으니까 실지로 얼마나 쓰는지 그것은 모르는 사항 아닙니까?

○ 社會振興課長 宋在明 : 이사람들도 농약을 사용하게 되면 농약사용 대장을 비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 李洙現 委員 : 지금 농약을 사실상 어디에서 구입하는지 조차도 확인이 안되고 있고 실지로 살포현장에 가서 얼마나 농약을 사용하는지 확실히 모르지 않습니까?

○ 社會振興課長 宋在明 : 저희들이 문서로 보고된것을 믿을수 밖에 없을것 같습니다.

○ 李洙現 委員 : 그래서 본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앞으로 용평뿐만 아니라 보광도 있고 해서 농약살포 할때 꼭 현지에 나가서 관리감독을 하시고 실지로 농약을 얼마나 구입을 해서 얼마를 사용하는지 실사를 해야지 그냥 그사람들에게 맡겨서야 알수가 있습니까?

지금 3배에 달하는 농약을 구입해가지고 892kg밖에 쓰지않고 나머지는 보관한다는 자료자체가 이해가 안가는 부분입니다. 쓸데없는것을 왜 이렇게 많이 사가지고 보관합니까, 이점에 신경을 써주시기 바라고요. 도민체전출전 예산 및 지출내역을 본위원이 분명히 종목별로 상세히 열거해서 유니폼, 신발등 단가까지 명시해서 자료를 제출해 주실것을 요구했는데 현재 자료를 보면 장비구입,훈련비,기타 이런부분에 전부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사실상 이자료를 가지고 어떻게 감사를 하겠습니까, 그냥 한번 읽어 보라고 주신 자료인지 감사하라고 주신 자료인지 이해가 안갈 정도입니다. 세부적인 자료를 지금 제시해 주실수 있습니까?

○ 社會振興課長 宋在明 : 네. 해드리겠습니다.

○ 李洙現 委員 : 그럼 감사 끝나기 전에 이자료를 부탁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金斗經 委員 : 김두경 위원입니다.

방금전에 유돈문 위원께서 봉평도옵가꾸기에 대해서 질의하신 내용입니다.

현재 채석시에 폐도불하가 가능한지의 여부및 또 지금까지 설계변경하고 아직까지 재계약을 하지 않는 이유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社會振興課長 宋在明 : 채석시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지난 11월 3일날 이것

올 분할등기를 했습니다. 그다음 11월 13일날 용도폐지 신청을 했고 내년도에 국유재산 관리계획에 반영을 해가지고 불하를 할 계획입니다.

○ 金斗經 委員 : 재계약 문제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社會振興課長 宋在明 : 재계약 했습니다.

○ 金斗經 委員 : 했습니까?

○ 社會振興課長 宋在明 : 네.

○ 金斗經 委員 : 그리고 시가지 시설물 정비사업은 몇%나 진척이 되었다고 봅니까?

○ 社會振興課長 宋在明 : 40%정도 공정을 보고 있습니다.

○ 金斗經 委員 : 시가지에 하는 작업 말입니다.

○ 社會振興課長 宋在明 : 네. 시설공사를 40% 정도 했습니다.

○ 金斗經 委員 : 상당히 진척이 좋아지고 있습니다. 독려좀 해주시고 제가 지난번 군정질문에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96년도 상반기에는 어떠한 일이 있더라도 4년차 이상 넘어가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서 강구대책을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 社會振興課長 宋在明 :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 禹康鎬 委員 : 우강호 위원입니다. 농촌마을길 포장사업 현황에 대해서 질의 하겠습니다. 94년도 하고 95년도 하고 사업량이나 사업비가 95년도에 50% 정도 감이 되었는데 50% 감이된 이유가 뭔지 답변해 주시고 실질적으로 8개읍면이 비슷한 금액으로 사업량이나 사업비가 책정이 되어 사업시행을 했는데 물론 균형적인 마을포장이라는 것도 있겠지만 실지 면적이 상당히 많은 차이를 두고 있는 읍면하고 서로 비슷한 사업비와 사업량을 책정했다면 이유는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社會振興課長 宋在明 : 농어촌 마을길포장사업은 제가 조금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당초에 한석용 지사님이 계실때 92년부터 96년까지 5개년 계획에서 농어촌 마을길 포장하는것을 계획해 가

지고 그 계획에 의해서 추진이 되어 왔었습니다. 그러던 것이 지사님이 바뀌면서 거기에 대한 관심이 낮아지고 그러다 보니까 농촌 마을길에 대한 사업비가 도로부터 적게 책정이 되어가지고 사업이 시군별로 저희군뿐 아니라 시군별로 많이 줄어든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농어촌마을길은 도비가 30% 지원이 되고 군비를 70% 부담을 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도에서 사업을 확정해가지고 시군별로 이것을 확정내시를 하다보니까 그 기준에 의해서 저희들이 예산을 세우고 사업을 시행 합니다. 그런 관계로 사업이 94년도보다 95년도에 많이 줄어든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 禹康鎬 委員 : 96년도에는 현 사업비에 다시 절반정도로 줄을 요인도 가지고 있겠네요?

○ 社會振興課長 宋在明 : 제가 여기서 정확히 답변드릴수는 없습니다. 다만 아직까지도 농어촌마을길 포장사업이 가내시라도 내려와야지만 저희들이 어떻게 계획수립을 해서 읍면별로 신청을 받아가지고 하겠는데 전혀 가내시 조차도 없고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만, 도에서 당초예산에도 이것을 못하고 수정예산으로 요구가 되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예산이 상당히 불투명한 상태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여기서 내년도에 사업량이 는다, 준다, 이렇게 말씀드리기가 어렵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 禹康鎬 委員 : 도지사가 바뀌었다고 사업량이 갑자기 반씩 줄면 상당히 많은 문제점이 있을것 같습니다.

문화생활을 많이 영위할려고 차들은 다 가지고 있는데 50%씩 감이 되어가지고 사업시행을 하라고 하면 상당히 많은 문제점이 있을거라고 생각되는데, 그다음 두번째 같이 질의했던 8개읍면이 거의 비슷한 수준의 사업량하고 사업비가 책정이 되어 사업을 했는데 물론 형평의 원칙에는 반드시 그렇게 되어야 되겠지만 지역적인 안배 차원에서 조금 문제가 있지 않겠습니까?

○ 社會振興課長 宋在明 : 그래서 저희가 보니까 농촌마을길 포장사업이 평창군 전체로 보면 포장율이 평균 42.2%가 되어 있습니다. 이중에서 가장 많이 한곳이 미탄면으로서 전체 목표량의 50%가 되어 있고 가장 적게된 곳은 평창읍으로서 목표의 32%밖에 포장이 안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 禹康鎬 委員 : 미탄면은 앞으로도 이런 비율로 나간다면 예를들어 1-2년안에 다할수 있겠지만 면세나 읍세가 조금 큰곳은 다른동네 100%를 할동안에 약 50-60%정도밖에 못하지 않습니까?

○ 社會振興課長 宋在明 : 저도 그것을 공감하고 있기 때문에 내년도에 농어촌마을길포장사업이 도로부터 확정 내시가 된다면 조금전에 우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지금까지 전체물량에 대한 비포장율을 반드시 적용을 해서 내년도에는 시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 禹康鎬 委員 :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劉燉文 委員 : 유돈문 위원입니다. 도민체전 출전 예산지출 내역서에 보면 단복이 93년도, 94년도, 95년도, 이렇게 3년치가 있는데 단복 구입하는것을 수의계약으로 평창업자에게서 했는데 93년도부터 95년도까지 단복가격이 많이 차이가 나는데.....,

○ 委員長 金鍾永 : 위원휴식을 위하여 감사를 중지한후 4시 40분에 계속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언 합니다.

(16時25分 監査中止)

(16時45分 監査繼續)

○ 委員長 金鍾永 :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 하겠습니다.

감사중지전 보충질의중이던 이수현 위원께서는 계속 질의하여 주시고 사회진흥과장께서는 유돈문 위원 질의사항을 포함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李洙現 委員 : 유돈문 위원님의 질의에 대해서 제가 몇가지 보충질의를 드리

겠습니다.

도민체전 출전 예산및 지출내역서를 보면 아까 유위원님께서도 지적을 하셨지만 93년도에 단복이 벌당 4만5천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다음 단모가 5천원으로 되어 있고 그다음 94년도에 보면 오히려 단복이 2만3천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역시 단모는 5천원으로 되어 있고, 95년도에 보면 단복이 3만2천원, 그다음 단모가 3천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다음 단화가 2만8천원으로 되어 있고 본위원이 왜 이점을 말씀 드리는가 하면 본위원이 평창군체육회 이사로 재임하고 노성제 집행위원으로 재임을 하면서 그간에 수차례에 걸쳐서 이부분을 지적해온 사항입니다. 지금 단복을 93년도의 예를 들어본다면 벌당 4만5천원씩 해서 280벌을 1,260만원에 수의계약으로 해서 했는데 이런말씀을 드리면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겠습니다만, 이당시에 츄리닝이 2만원 이하의 가격의 츄리닝입니다. 그렇다면 전체금액의 1,260만원중에 약 600-700만원이 부당지출되었다고 표현하겠습니다.

그다음 단모 가격을 예를들어 말씀드리면 93년도에 5천원을 지출했는데 94년도에도 5천원씩 지출을 했는데 93년도 94년도의 도민체전 출전선수단의 단모를 보면 2,200원에서 2,500원대의 모자 입니다. 단체 구입을 하는 물품을 오히려 싸게는 구입을 못할망정 이런식으로 출전경비를 집행을 해서야 되겠습니까, 그다음 장비구입 훈련비를 따로 자료를 제출 해주셨는데 장비구입 훈련비라던가 예를들어 축구부의 유니폼이라던가 이러한 부분이 전부다 이런식으로 지출이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선수단의 어떤 훈련비라던가, 급식비라던가 이런것에다 충당이 되었으면 본위원도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식으로 계속 수의계약을 해오다가 95년도에는 자료에 보면 경쟁입찰 해가지고 단복이 3만2천원 단모가 3천원, 이 3천원정도는 현실화된 가격이라고 생각 합니다.

단화가 2만8천원, 이런식으로 경쟁입찰이라고 써놓았는데 이 경쟁입찰이라는

자체도 평창지역내 어떤 체육사 하시는 분들의 단합에 의해서 돌아가면서 1년씩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러한 사항을 그동안 집행하시는 분들이 뻔히 아시면서 수천만원의 예산을 눈에 안보이게 부당지출을 하고 있습니다.

장비구입 훈련비는 계속증가하고 단복, 단모만 예산이 줄어드는 꼴입니다.

이부분에 대해서 사회진흥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社會振興課長 宋在明 : 네.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유돈문 위원과 이수현 위원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도민체전 출전에 따른 단복과, 단모가 매년 가격이 틀리고 조금전에 말씀하신 93년도에 2만원정도 하는 단복이 4만5천원에 지출이 되어서 부당지출이 아니냐라는 말씀을 드렸는데 단복과 단모, 이런것은 93년도에는 제가 어떠한것을 구입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가격이 변동이 있는것은 츄리닝이나 단복은 어떤 가격이 재질에 의해서 매년 지속되는 가격이 아니고 년도에 따라서 예산에 따라서 탄력적으로 운영을 하다 보면 어느해에는 좀더 좋은 유니폼을 구입하고 또 어느해에는 그보다 못한 그런 유니폼을 구입하는 것은 제가 많이 보아 왔습니다. 그런데 조금전에 지적하신 그러한 여러가지 문제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개선하기 위해서 금년도에 경쟁입찰제도를 도입을 해서 체육회에서 경쟁입찰을 해서 평창에 있는 로얄체육사가 낙찰이 되어서 이것을 납품한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러한 모든 문제들은 조금전에 이위원님께서 지적하셨드시 내년도부터는 이런것을 평창읍에 국한하지 않고 평창군관내에 있는 모든 체육사를 대상으로 해서 공개입찰을 해서 저희들이 좀더 좋은질의 단복과 단모를 선수들에게 지급을 하고 거기에 따른 예산의 여유가 있다면 선수들을 위한 훈련비나 급식비에 충당 할 수 있도록 노력 하겠습니다.

○ 禹康鎬 委員 : 우강호 위원입니다.

올해 단복이 424벌, 단모가 424벌인데요

선수단 규모는 404명이였었는데 실지 올해는 사회진흥과장께서 직접 이것을 집행하셨을텐데 올해 단복은 3만2천원 선이면 적정가 라고 생각을 하시는지요.

○ 社會振興課長 宋在明 : 제가 요즘 츄리닝을 사입지 않아서 가격이 얼마인지 정확히 모르겠습니다.

○ 禹康鎬 委員 : 샘플은 다 안받아 보고 결정 했습니까?

○ 社會振興課長 宋在明 : 이것은 제가 오기전에 집행된 것이기 때문에 제가 자세히 잘 모르겠습니다.

○ 禹康鎬 委員 : 3만2천원이면 저는 지금도 단복을 가지고 있는데 89년이나 90년도부터 평창군에서 출전할때 한벌도 버리지 않고 지금 가지고 있는데 수년전의것이 조금 두꺼워서 바깥에 입고나가서 다닐수 있을정도 될까, 올해것은 속옷이 비쳐서 입고 다닐수 있습니까? 올해 단복을 사회진흥과장님께서는 안입으셨습니까?

○ 社會振興課長 宋在明 : 네. 전 못보았습니다.

○ 禹康鎬 委員 : 실과 과장님들 다 한벌씩 안주셨습니까?

○ 社會振興課長 宋在明 : 그당시에는 제가 미탄면장으로 있었기 때문에 못받습니다.

○ 禹康鎬 委員 : 그럼 건전생활계장님께서 나누어 주셨습니까? 실과장님들 한벌씩 나누어 준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 社會振興課長 宋在明 : 실과장님들은 나누어 준것은 모르겠습니다만, 읍면장들한테는 안왔습니다.

○ 劉燉文 委員 : 그때는 지금 도시과장이 사회진흥과장 이였습니까?

○ 社會振興課長 宋在明 : 네. 그렇습니다.

○ 劉燉文 委員 : 저희들이 태백에 선수격려차 본위원도 갔습니다. 선수들이 다 입은것을 보니까 사실인즉 3만2천원짜리가 아니예요. 그런데 우리가 아무리 츄리닝을 안사입었다 하더라도 시중의 가격은 알고 있습니다. 3만2천원짜리가 될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츄리닝의 메이커가 없지 않습니까, 대개는

시장에서 잡상인들도 가지고 다니는 이런 질인데 그런것을 보면 2만원짜리도 그것보다 좋아요. 그런데 올해 단복을 보면 사실 3만2천원짜리가 아닙니다.
과장님 그때 당시에 구입도 안하시고 구입할당시 단복도 보지도 못하고 그랬으니 가격에 대해서는 답변을 못하시는것 같은데 거기에 대해서는 집고 넘어가야 될것 같습니다.

○ 社會振興課長 宋在明 : 글쎄, 그것은 참고로 말씀드린다면 어떤 공산품들은 거기에 대한 정가가 있습니다. 그런데 아직까지 우리나라의 의류에 대해서는 어떤 정가가 도입이 불충분하게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제출서류에도 있습니다만, 공개경쟁 입찰에 의해서 낙찰이 되고 어떠한 메이커를 지정을 해준다 하더라도 질에 있어서 어떠한 질이라 하는것을 지정을 해가지고 거기에 따라서 납품을 받도록 해야되는데 메이커만 가지고 경쟁입찰을 하다 보니까 이러한 문제가 있는것 같습니다.
내년도에는 이것을 개선을 해서 저희들이 단복을 경쟁입찰에 의해서 구매를 하더라도 조금전에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것을 충분히 보완해서 실행에 옮길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 李洙現 委員 : 참고로 몇가지 말씀을 더 드리겠습니다.
유니폼 질에 따라서 탄력적인 지출을 하셨다고 답변을 하셨는데 본위원이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단복에 대해서는 과거에서부터 문제가 많았던 사항이고 본위원도 지금까지 수년에 걸친 단복을 가지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현재 축구를 예를 들어본다면 유니폼 3만원, 스타킹4천원, 아대 9천원해서 총 4만3천원이 개인장비로 지급이 되었는데 유니폼도 그렇고 츄리닝도 그렇고 소위 말하는 비메이커 제품입니다. 그러면 이부분도 3만5천원이면 충분히 지출될수 있는 내용입니다. 축구화 같은것도 소비자 가격이 3만5천원이면 제일 좋다고 하는 키카제품에서 나오는 축구화도 개인이 한켤레를 D C 없이 사도 소비자 가격이 3만5천원입니다. 무려 34명이 단체구입을

하는데도 3만5천원 이예요. 이런식으로 다년간 지속이 되어 왔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우리 사회진흥과장님 말씀대로 분명히 평창읍 소재지 뿐만 아니라 단합에 의한 어떤 경쟁입찰의 모습을 갖쳐서도 안되겠고 우리 평창군 체육의 발전을 위해서 평창관내 모든 체육용품 취급업소에 공문을 보내서 실질적인 공개경쟁 입찰이 될수 있도록 이렇게 노력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 社會振興課長 宋在明 : 네. 알겠습니다.

○ 禹康鎬 委員 : 축구선수가 고등부 일반부 합해서 34명이면 고등부도 출전을 했습니까?

○ 社會振興課長 宋在明 : 2개팀이 34명입니다.

○ 禹康鎬 委員 : 어떤 2개팀입니까?

○ 社會振興課長 宋在明 : 대화고등학교에서 출전을 했습니다.

○ 禹康鎬 委員 : 제가 한가지 더 질의를 하겠습니다.

저희 의원들도 격려차 태백에 가서 군수님과 함께 의장님 모시고 다녔었는데 실질적으로 평창군에서 격려를 왔다라고 하는 그런 표식이라고는 일절 없었습니다. 쉽게 말해서 단모도 하나 저희 위원들께 지급해준 사실이 없습니다.

집행기관의 실과장들은 단모며 옷을 한벌씩 다주면서 위원들은 현지에 가서 격려차 갔는데도 단모도 하나 주지 않았습니다. 그랬을때 집행기관에서 뭐라고 했나 하면 예산부족으로 인해서 주문을 적게 했다고 했습니다. 본위원이 알기로는 유니폼이나 단모가 어느정도 분량은 충분히 남아 있는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집행기관 본부석 방에 갔을때 비닐봉지 안에 보통 넘어져 있는 유니폼이 2~30벌 정도는 제가 본 기억이 있습니다. 앞으로 그렇게 안하시겠지만 평창읍에서만 공개경쟁 입찰이던 수의계약이던 지금껏 이렇게 해왔습니다. 실지 저도 다른곳에 납품을 하고 그러지만 올해 입었던 옷이라면 1만5천원이면 납품할수 있습니다. 여기에 있는 이 금액대로 라고 한다면 돈 많이 벌수 있

습니다. 이런것은 절대적으로 고쳐야 합니다. 실질적으로 체육회가 욕먹는다는 것은 평창군체육회장이 누구 입니까, 군수님 아닙니까?

○ 社會振興課長 宋在明 : 네.

○ 禹康鎬 委員 : 괜히 그런 오점을 남기시는 오류를 범하니까 그런일이 없도록 실지 집행을 하시는 실과장님께서 적극적으로, 모르고 앉아서 당할수 있거든요. 그다음 샘플없이 3만2천원에 했다는것은 이해가 가지 않는 부분입니다. 어떤 메이커를 지정해 가지고 그 메이커에 따라서 3만2천원, 424벌, 그것은 있을수 없는 겁니다. 그렇게 만약에 입찰을 보았다면 입찰본사람은 정신이 나간 사람입니다. 안 그렇습니까?

○ 社會振興課長 宋在明 : 중복되는 답변 같습니다만, 지금까지 여러위원님들이 지적해주신 그런 모든것은 저도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내년부터는 이런 모든사항을 최선을 다해서 선수들에게 질좋은 단복을 제공하고 또 저희들이 공개경쟁 입찰로 인해서 남는 그러한 차액은 선수들의 훈련이라던가 급식, 이런 사기앙양을 위해서 쓸 수 있는 이러한 충실한 예산운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 禹康鎬 委員 : 기타비용 지출내역이 별도로 있습니다. 2,726만3천원인데, 준비비, 숙박비, 귀향여비, 선수격려비 등 있는데 약품등 기타 해가지고 289만원이 있거든요. 약품을 몇백만원씩 산것도 아닐테고, 기타비용 지출내역의 기타는 89만원을 약품을 샀다고 그러면 200만원은 어떤 비용으로 지출된 부분입니까?

○ 社會振興課長 宋在明 : 제가 우강호 위원님께 양해좀 드리겠습니다.

이것이 금년도 도민체전 출전당시에 제가 이업무를 관장을 안했기 때문에 자세한 답변을 드리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양해해 주신다면 당시의 실무계장이 답변을 드리도록 할려고 하는데 양해해 주시겠습니까?

○ 委員長 金鍾永 : 답변해도 좋습니다.

○ 社會振興課長 宋在明 : 금년 도민체

전과 관련해서 장비구입및 단복, 단화, 단모 구입 관계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고자 합니다.

93년도부터 94년도까지 계속 수의계약을 함으로 해서 시중에서 업체들로부터 여러가지 말을 많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는 이런것을 해소해 보고자 해서 군전체를 대상으로 하지는 못했습니다만, 부분적으로나마 입찰을 통해서 단가를 정했습니다. 단가를 정할때에 예정가 작성은 서울시중의 유통되는 금액을 참고는 하지 못했습니다. 읍내에 있는 체육사를 통해서 그당시에 체육회장님하고 체육회장님, 군수님과 부군수님의 단복을 샘플을 지정 받아서 그것을 시중가를 파악한후에 그것의 평균치를 내서 예정가를 작성해서 입찰에 부했던 사항입니다.

그리고 종목별 장비구입관계는 군에서 직접 지출을 한것이 아니고 거기에 장비구입비라던지 그것을 나름대로 시장조사를 해서 단가를 작성을 하였고, 이금액 전체를 종목별 단장이라던지 감독자에게 직접 현금으로 지출을 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장비를 구입을 해서 줄수도 있었습니다만, 종목별로 경비에 신축을 기하기 위해서 현금을 다 지출을 한것입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 禹康鎬 委員 : 샘플을 받아가지고..

○ 社會振興課長 宋在明 : 샘플을 저희가 군에서 군수님, 부군수님 결심을 받아서 정했습니다.

○ 禹康鎬 委員 : 그럼 그때 샘플로 해서 3만2천원에 입찰이 정해진겁니까?

○ 社會振興課長 宋在明 : 예정가는 이것보다 몇천원이 더 높았던 것으로 기억납니다.

○ 李洙現 委員 : 참고로 말씀을 드리는데요, 지금 세부적인 사항은 감독자에게 현금으로 지출을 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좋습니다. 어떻게 되었던 선수들에게 돌아간 돈이니까, 그러나 분명히 말씀 드리지만 서울의 어떤 시장가격이 아니고 전년도의 츄리닝을 봐서도 예를 들어 말씀 드린다면 소매가가 2만5천원

이상 넘어가지 않습니다.

그렇게 아시고 과장님 말씀대로 앞으로는 이러한 금액을 지출을 할때는 지금말씀하신대로 분명히 관내 모든 업체에 공개경쟁 입찰을 통해서 적절한 비용이 지출될수 있도록 이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 禹康鎬 委員 : 기타비용 지출내역에서 다시 약품등 기타라고 하셨는데 289만원의 기타비용은 어떤 내용입니까?

○ 社會振興課長 宋在明 : 그 관계는 격려를 오셨던 분이나, 그런분들 접대비가 일부 포함되어 있습니다.

○ 禹康鎬 委員 : 기타비용 지출내역에다 다시 약품등 기타라고 하니까 좀 그런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쭈어 보았습니다.

○ 社會振興課長 宋在明 : 그리고 위원님들 격려를 오셨을때의 유니폼이 남았던것은 당시에 볼링선수가 용평소속으로 되어 있었는데 그당시 스트라이크 관계때문에 선수가 도착이 안되어서 저희가 가지고 갔었던 겁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 禹康鎬 委員 : 어차피 424벌을 주문해서 424벌을 납품 받았는데 선수단 총 인원이 404명이면 기본적으로 20벌은 남는것 아닙니까?

○ 社會振興課長 宋在明 : 이것을 종목별 육성을 실과소장님들이 관여를 많이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20벌을 실과소장님 분으로 추가로 구입을 했었던 겁니다.

○ 禹康鎬 委員 : 그렇게 말씀 하시니까 제가 한마디만 말씀 드리겠습니다.

저도 실질적으로 체육회에 관여해서 한 부서에서 전무이사를 4년동안 했습니다. 실지 실과 과장님들이 정말 열의를 가지고 격려하시거나 찾아오시는 분이 과연 몇분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실지 합숙을 하면서 그런 지도자나 코치나 그런 분들하고는 차원이 틀립니다. 형식적인 방문일뿐이지 다른 그런 내용이 결코 개입되어 있지 않습니다.

○ 委員長 金鍾永 : 사회진흥과장님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질의에 앞서 위원 여러분께 양해를 구하고자 합니다.

지금 시간이 17시를 지나므로 금일 예정된 회의시간이 지났습니다만 회의일정이 남아있어 회의를 연장 진행하고자 하는데 동의하여 주시겠습니까?

(" 동의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고맙습니다. 그러면 사회진흥과장께선 이의 없으십니까?

○ 社會振興課長 宋在明 : 없습니다.

○ 委員長 金鍾永 : 고맙습니다. 그럼 계속해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禹康鎬 委員 : 내년부터는 이러한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각별한 관심을 가지고 처리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社會振興課長 宋在明 : 네. 명심 하겠습니다.

○ 李洙現 委員 : 이수현 위원입니다. 과장님 혹시 계촌6리 소교량, 국회의원 사업비로 올해 교각만 설치하고 예산도 없이 총가입찰해서 올해 공사한 내용을 알고 계십니까?

○ 社會振興課長 宋在明 : 계촌 3리입니다.

○ 李洙現 委員 : 내용을 알고 계신가요

○ 社會振興課長 宋在明 : 네. 알고 있습니다.

○ 李洙現 委員 :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전년도에도 행정사무감사 회의록을 보니까 총가입찰 한부분이 몇군데 있어서 문제가 되어서 앞으로는 이런일이 없다고 분명히 답변하셨는데 올해 또 이런일이 생겼습니다. 예산도 없는 부분을 총가입찰을 했습니다. 이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 하십니까?

○ 社會振興課長 宋在明 : 그 부분에 대해서는 대단히 죄송스럽게 생각 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내년도의 예산에 지금 요구를 해놓았습니다.

○ 李洙現 委員 : 요구를 한것이 문제가 아니고 제가 알기로는 사회진흥과에서 소교량에 대한 사업 우선순위를 결정을 해서 사업을 진행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결국에는 우선순위고 뭐고 다 필요 없는것 아닙니까, 교

각만 설치하면 그다음해에 계속사업인양 예산을 무조건 지출해야 되는것 아닙니까?

○ 社會振興課長 宋在明 : 모든 사업들은 당초에 예산을 전부 확보를해서 사업을 추진하던가 아니면 수년차에 걸쳐서 사업시공이 필요한것은 계속비 사업승인을 받은 연후에 사업을 시공해야 됩니다만 계촌3리 교량 같은 경우에는 일단 이정도 사업이면 되겠다 라는 생각에서 처음에 예산계상을 해놓고 그다음에 설계하는 과정에서 설계를 하다보니까 사업비가 그보다 엄청 많이 나오게 된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것을 우선 예산범위 내에서 발주를 하고 그다음 추가로 예산확보를 했어야 하는데 예산확보를 못하고 지금까지 방치되어 있는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부분에 대해서는 다시한번 죄송한 말씀을 드리고 내년도에 예산을 꼭 확보를 해서 마무리 할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 李洙現 委員 : 사업의 마무리가 걱정이 되어 제가 드리는 말씀이 아니고 이러한 사항은 소위 말해서 국회의원 사업비라 그래가지고 1개읍면에 5,000만원씩 내려온것을 가지고 필요한 부분에 2,000~3,000만원씩 쓰고 나머지 1,000~2,000만원 남은것을 가지고 예를들어서 교각만 설치하고 다음해에는 군비로 무조건 해달라 하는식으로 읍면장들이 사업을 집행한다면 분명히 문제가 되는 부분이지요. 그렇지 않습니까?

○ 社會振興課長 宋在明 :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부터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 李洙現 委員 : 평창 조둔교 부분도 저희들이 현지확인을 다닐때 똑같은 이러한 사항을 읍장님이 말씀을 하셨어요. 5,000만원중에 4,000만원은 지출을 하고 1,000만원 남은것으로 다리를 놓겠다, 내년도 예산에 반영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것이 전혀 제가 알기로는 각 읍면과 사회진흥과 하고는 전혀 별개의 것입니다. 사회진흥과에서는 알지도 못하고 있는 사업이고 읍면에서는 무조건 추진을 하는 사업이고, 예

산도 없이 거기다가 총가입찰까지 해가지고 말입니다. 분명히 말씀 드리지만 전년도에도 이러한 예가 몇개소 있었고 분명히 이런일이 없도록 하시겠다고 답변을 하셨고, 올해 이러한 일이 벌어졌는데 이점을 중시하시고 앞으로는 절대로 이러한 일이 없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 社會振興課長 宋在明 : 읍면에 대한 행정지도를 강화해서 그런부분이 시공이 안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禹康鎬 委員 : 95년도 새마을지회 예산지원내역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새마을운동 평창군지회에 분기별로 444만6천원, 44분기까지 지급이 다되어서 1,780만원이 지급이 되었습니다. 물론 정액보조라고 명시되어 있지만, 회장1명 간사1명 이렇게 2명이 있지 않습니까?

○ 社會振興課長 宋在明 : 네. 2명이 있습니다.

○ 禹康鎬 委員 : 2명에게 1,780만원씩이나 지원 해줄수 있는 다른 특별한 이유라도 있습니까?

○ 社會振興課長 宋在明 : 이것은 그사람들 인건비만 나가는 것이 아니고 지금은 새마을운동이 민간주도로 되었기 때문에 각종 새마을과 관련한 교육이라던가 회의소집 했을때 급식비, 또 사무실 운영비등이 총 포함된 금액입니다.

○ 禹康鎬 委員 : 새마을지도자 협의회장이 따로 있고 새마을지회장이 따로 있지 않습니까?

○ 社會振興課長 宋在明 : 네. 따로 있습니다.

○ 禹康鎬 委員 : 같이 묶어서 지원해줄 방안은 없습니까?

○ 社會振興課長 宋在明 : 이것이 내년도에는 지원계획이 없습니다.

○ 禹康鎬 委員 : 제가 96년도 지원여부를 묻고 싶어서 질문했던 내용인데요.

○ 李洙現 委員 : 새마을운동 평창군지회는 내년도에 지원금이 없습니까?

○ 社會振興課長 宋在明 : 네. 지원계획이 없습니다.

○ 李洙現 委員 : 부활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 社會振興課長 宋在明 : 아직까지는 지원계획이 없습니다.

○ 禹康鎬 委員 : 그부분에 다른 위원님들 질의를 안하시면 제가 옥외광고물 허가 현황에 대해서 질의코자 하겠습니다. 공공시설이용 광고물 7건과, 국민체육진흥 광고물 8건이 있는데 이것은 거의 지방업체가 아닌 다른업체들이 들어와서 대형 선전탑이라던가 이런것이니까 시공을 안했습니까?

○ 社會振興課長 宋在明 : 네. 그렇습니다.

○ 禹康鎬 委員 : 그러면 여기에서 한번 시설해서 설치할때 내는 지방세는 얼마정도 됩니까? 고속도로변에 대형선전탑을 설치할때 아무 세금도 안냅니까?

○ 社會振興課長 宋在明 : 네. 지방세는 납부를 안하고 거기 설치에 따른 허가를 낼때에 수수료를 80만원에서 100만원정도 납부를 하고 있습니다.

○ 禹康鎬 委員 : 그것을 낼때에 혹시 지역업체들이 시설할수 있도록 해줄수 있는 방안같은것은 없습니까?

○ 社會振興課長 宋在明 : 이것은 올림픽 체육진흥공단에서 당시에 88서울올림픽을 개최를 하면서 이 광고물을 설치를 했는데 저희들과 하는것이 아니라 회사와 올림픽진흥공단과 계약을 합니다. 그래서 계약에 의해서 이사람들이 도안변경허가 또 아니면 시설에 대한 연장허가 이런것만 군에 와서 허가를 받고 있습니다.

○ 禹康鎬 委員 : 그럼 갱신할때마다 수입중지 값으로 그정도 내는 겁니까?

○ 社會振興課長 宋在明 : 그렇습니다.

○ 禹康鎬 委員 : 그럼 공공시설이용 광고물은 그것과 해당사항이 없지 않습니까?

○ 社會振興課長 宋在明 : 공공시설 이용 광고물은 저희들 관내에 지금 관광안내도 설치를 하고 스폰서를 자기가 자회사의 그것을 하는것을 공공시설 이용 광고물로 보고 있습니다.

○ 禹康鎬 委員 : 알겠습니다.

그다음 청소년단체 현황및 예산지원 내역에 대해서 자료제출 요구를 했었는데

자료가 올라오지 않았습니다. 평창군에 청소년단체가 하나도 없습니까?
요구내역서 8번입니다.

○ 社會振興課長 宋在明 : 저희들 관내에는 청소년 단체는 없고 청소년육성 지방위원회가 있습니다. 그다음 청소년 지도협의회가 읍면별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 禹康鎬 委員 : 그럼 청소년 단체가 없으면 해당사항이 없음이라던가 그런 내용도 하나 없이 빼버리면 어떻합니까? 청소년단체 범위를 어디까지로 보는 겁니까?

○ 社會振興課長 宋在明 : 청소년을 육성 관리하는, 아니면 청소년으로서 구성된 어떠한 단체를 청소년단체로 규정할 수 있지요.

○ 禹康鎬 委員 : 그럼 해양소년단이나 보이스카웃, 걸스카웃 이런것은 청소년 단체로 규정하지 않습니까?

○ 社會振興課長 宋在明 : 그런 단체도 청소년 단체로 보는데 그러한 단체는 교육청 소관이기 때문에 교육청에서 하기 때문에 행정기관에서는 다루지 않고 있습니다.

○ 禹康鎬 委員 : 4-H 같은 경우는 어떤 단체에 속합니까?

○ 社會振興課長 宋在明 : 4-H는 농촌지도소에서 하고 있습니다.

○ 禹康鎬 委員 : 알겠습니다.

○ 李洙現 委員 : 한가지만 더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대화 문화체육관 오늘 착공식을 했는데 체육관 건립부지에 민가가 1동 있는것을 과장님 알고 계시나요?

○ 社會振興課長 宋在明 : 저는 없는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李洙現 委員 : 그만큼 집행부가 지금껏 문화체육관 건립에 대해서 관심이 없다는 증거입니다. 대화체육관 부지에 보면 분명히 해결되지 않는 민가가 1동이 있습니다. 두노인네가 사시는데 몇년전에 50만원에 구입을 해서 지금 살고 계시고 있습니다. 오늘 착공식을 했는데도 전혀 가옥에 대한 대책이 없습니다 알고 계시다시피 그 내용에 대해 전혀

모르고 계시지 않습니까, 이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어떻게 하실것인지 대응방안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社會振興課長 宋在明 : 당시에 평창군 문화체육관을 건립하면서 그것을 번영회 측에서 해결하기로 약속을 했는데 아직까지 이행이 안된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다시한번 정확히 알아보고 조기에 철거가 될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 李洙現 委員 : 번영회에다 미루지 마시고 군에서 발주하시는 사업인 만큼 조속한 시일내에 해결을 해서 공사에 차질이 없도록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 社會振興課長 宋在明 : 네. 알겠습니다.

○ 李慶鎭 委員 : 용평 골프장의 쓰고 남은 농약 처리문제를 말씀을 안해 주셨는데 그 문제를 서면으로라도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 社會振興課長 宋在明 : 그것은 유효기간이 지난 농약은 반품을 받도록 되어 있는데 거기에 대한 근거를 서면으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서면답변은 끝에실음)

○ 禹康鎬 委員 : 사회진흥과장께 한가지만 더 질의를 하겠습니다.

9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출시 폐지된 조례에 의해서 특별회계를 제출하셨는데 8월 25일날 과장님께서 잘 아시다시피 1467호로 평창군주민소득지원및 생활안정기금운영관리 조례가 의회에서 통과가 되어 그날짜로 공포가 되었다고 평창군수 명의로 의회로 공문을 접수 시켰습니다. 그내용은 2개월을 넘지 않는 범위안에서 시행규칙을 만들어서 시행하도록 되어 있는데 안하신 이유가 뭐지요?

○ 社會振興課長 宋在明 :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물론 군정질문때 부군수님께서 자세한 답변을 드렸습니다만, 이것이 도에서 조례준칙이 내려오면서 유사한 업무기능을 하나로 묶어서 이것을 기금도 늘리고 주민소득도 증대를 하고 또 영세민 자활의지도 높인다는 취지에서 이 조례가 개정이 되었는

데 그이후에 저희들이 조례에서 정한 기금관리 위탁관리 협약관계를 금융기관과 협의하는 과정, 그다음 사회과하고 사회진흥과하고의 업무, 그것이 사실상 업무가 유사한 것이 아니고 시행규칙을 제정하는 과정에서 양 부서간에 이견이 많았습니다.

○ 禹康鎬 委員 : 지금은 제정이 되어 있습니까?

○ 社會振興課長 宋在明 : 지금 입법예고를 해놓았습니다.

그래서 새마을소득사업운영관리조례 하고 저소득주민생활안정기금관리조례가 사실상 시행하는 단계에서 보니까 사회과에서는 조례에서는 5%의 이자를 준다고 했는데 사회과에서는 지금까지 거치기간에는 무이자로 했기 때문에 이것을 갑자기 이자를 받으면 영세민들에게 오히려 불리하지 않느냐, 그부분에 대해서 사회과에서 시행규칙을 하는데 많은 이의를 제기를 했고 그다음 사회과에서 그 연체이자는 금융기관의 이율을 적용하도록 조례에서 정했는데 이것을 지금적용하고 있는 8%로 적용해야 된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저희들은 상위법에서 정한 범위내에서 시행규칙이 제정이 되어야지 그것을 무시한 규칙이 제정되어서는 안된다 라는 서로 부서간에 이견이 있었습니다. 이견을 조정하는 과정에서 시간이 걸려서 2개월이라고 하는 기한을 정한것도 제가 사회진흥과에 와보니까 굳이 2개월이라고 정할 필요도 없었는데 2개월이라고 너무 시간을 촉박하게 정한것도 업무미숙에 의한 잘못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이것을 시행할려고 하면 어차피 금융기관과 위탁을 하려면 거기에 따른 융자금 회수관계 또 연체이자관계 이런것을 연말까지 정산을한 연후 라야만 금융기관과 위탁관리 협약을 할수가 있는데 그러한 제반여건을 감안치 않고 그냥 단순하게 2개월 이내에 시행규칙을 제정해야 되겠다는 생각에서 하다 보니까 기간내에 하지 못한것 같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재삼 죄송한 말씀 드리고 앞으로는 이러한 일이 절대 없도록 노력

하겠습니다.

○ 禹康鎬 委員 : 사회진흥과장께서 지금 답변 하셨다시피 2개월이 넘지않는 범위안에서 시행규칙을 제정하도록 되어 있는데 그렇게 하지 못한것을 2개월안에 업무미숙으로 인해서 그렇게 되었다고 답변 하셨습니다. 본위원의 생각으로는 이것을 의회에서 요구한것이 아니고 집행부에서 요구해서 8월 25일날 토론끝에 통과되어서 다시 의회로 돌아온것으로 알고 있는데 2개월안에 의회를 통과시켜서 다시 조례공포를 했다고 공문까지 시행을 하고도 하지 않았다면 사회과장님이나 사회진흥과장님 기획실장님 세분은 의회에 대해 정면으로 도전이라고 생각합니다.

○ 社會振興課長 宋在明 : 이것은 의회에 대한 도전은 절대 아니고 조금전에 말씀드린 그러한 업무미숙으로 인해서 그런것이 기간내에 시행규칙을 제정하지 못했고 예산을 요구하는것도 중액되는 예산이 아니고 융자금을 1억9,000만원 정도 금년에 회수한것이 있기 때문에 이 자금으로도 충분히 운영이 가능하다고 판단이 되었었습니다.

그러한 과정에서 예산부서에서 2회추경에 수해복구로 인한 여러가지 자금난이 있으니까 삭감할수 있는, 절감할수 있는 예산이 있으면 제출해달라 해서 그것을 저희들이 일반회계에서 전출하는 것을 안받아도 되겠다 라는 생각에서 그냥 그것을 삭감요구를 하게 된것이지 의회에 대한 그러한 것은 전혀 아닌것으로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 禹康鎬 委員 : 폐지된 조례를 갔다가 상정을 했는데 만일 의회에서 발견치 못하고 그냥 통과시켰으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社會振興課長 宋在明 : 죄송하게 생각 합니다.

○ 禹康鎬 委員 : 사회진흥과장님이나 사회과장이나 기획실장님은 경미하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굉장히 중요한 문제라고 생각 합니다. 다른 시군에서는 이러한것이 아마 없을 겁니다.

추후에는 그러한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각별히 관심있게 챙겨주시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 社會振興課長 宋在明 : 알겠습니다.

○ 李慶鎭 委員 : 한가지만 더 말씀 드리겠습니다.

전국체전도 그렇고 도민체전도 그렇고 탁구시합이 있는데 노성제에는 지금 탁구 시합을 안하거든요. 탁구시합을 안하게된 동기는 어디에 있습니까?

○ 社會振興課長 宋在明 : 그것은 문화공보실에서 주관하고 계획하기 때문에 저희업무 소관이 아닙니다.

○ 李慶鎭 委員 : 도민체전 문제에서 이런문제들이 나와있기 때문에 말씀 드리는데 탁구 시합을 함으로 해서 지역에 탁구장이 옛날에 서너개 있었었는데 지금은 한개도 없습니다. 실지 탁구라는 것이 공무원들도 그렇고 건전생활체육에 기대하는바가 많고 조그마한 규모나마 경기활성화에 상당히 기여한다고 보는데 가능하다면 내년 노성제에는 탁구시합이 채택이 될수 있게끔 과에서 할수 있는 사항이라면 신경을 써주십시요.

○ 社會振興課長 宋在明 : 관계부서에 이사항을 꼭 알려 드리겠습니다.

○ 委員長 金鍾永 : 보충질의 하실분 더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이 있음)

그럼 사회진흥과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 합니다.

사회진흥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예정된 감사일정이 모두 마무리 되었습니다.

장시간 감사진행에 적극 협조하여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들과 성실히 감사에 응해 주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 드립니다.

다음 행정사무감사는 11월 28일 오전10시 이곳에서 계속 하겠습니다.

그럼 95년도 11월 27일 평창군에 대한 소관별 행정사무감사를 마칠것을 선언 합니다.

(17時25分 監査終了)

○ 出席委員

委員長	金 鍾 永
幹 事	劉 燉 文
委 員	李 慶 鎭
委 員	李 相 薰
委 員	李 洙 現
委 員	金 斗 經
委 員	禹 康 鎬

○ 委員아닌 議員

議 長	金 樂 雲

○ 出席公務員

郡 守	金 容 郁
副 郡 守	朴 商 滿
農村指導所長	劉 載 國
企 劃 室 長	申 大 松
文化公報室長	高 昶 植
內 務 課 長	李 永 德
社會振興課長	宋 在 明
財 務 課 長	權 赫 昇
地 籍 課 長	南 大 鉉
社 會 課 長	金 榮 柱
環境保護課長	李 敬 洙
家庭福祉課長	朴 靜 子
産 業 課 長	金 時 漢
畜 産 課 長	鄭 義 秀
山 林 課 長	李 基 椿
建 設 課 長	洪 基 杓
都 市 課 長	權 純 喆
民防衛 課 長	金 昌 吉
保健事業課長	孫 東 欽
社會指導課長	尹 澈 埈
技術普及課長	李 宇 炯

○ 議會事務課

專 門 委 員	辛 敎 善
議 事 係 長	咸 京 鎬
地方行政主事補	李 錠 均

【 議 席 】

○ 議席表 (4 面에 실음)

질의 · 답변서

질 의	이 경 진 위원	답 변	평 창 군 수(문화공보실장)
회 의	제37회 평창군의회(정기회) 제 1차 행정감사특위('95. 11. 27)		

< 질의요지 >

○ 평창종합문화예술회관 건립추진위원회 명단 및 위원회에서 지금까지 추진한 사항

〈답 변〉

□ 구 성

- o 구성일자 : '93. 3. 5
- o 구성인원 : 13명(명단 별첨)
  - 군수, 도의원, 군의장, 군부의장, 문화원장, 지역인사 등
- o 기 능 : 문화예술회관 건립 추진 전반 협의, 해결
  - 부지선정, 건립규모, 시설규모, 예산확보대책 등

□ 운영실적 : 3회

- o '93. 3. 12 건립부지선정 협의
- o '93. 5. 8 건립규모, 수용시설 협의
- o '93. 10. 15 시설내역 및 편입부지 보상가 협의

□ 향후 운영방향

- o 위원회 정비 : 필요시 위원 위촉 · 해촉
- o 운영 활성화 : 사안발생시 수시소집 운영

문화예술회관 건립 추진위원 명단

구 분	위 원		전 화	비 고
	직위 또는 주소	성 명		
위원장	평창군수	김용욱	32 - 2021	
위 원	도의원	허대성	33 - 3956	
	도의원	이상명	36 - 7175	
	군의장	김낙운	32 - 1878	
	군부의장	이상훈	32 - 4645	
	문화원장	정석진	32 - 2508	
	평창읍장	강태문	32 - 2704	
	평창읍	김수돈	32 - 0505	당시 번영회장
	미탄면	최성배	32 - 3726	〃
	방림면	박종근	32 - 4624	〃
	용평면	이돈한	32 - 4250	〃
	진부면	홍형옥	32 - 7254	〃
	도암면	오규명	32 - 5111	〃

질의 · 답변서

질 의	우 강 호 위원	답 변	평 창 군 수(문화공보실장)
회 의	제37회 평창군의회(정기회) 제 1차 행정감사특위('95. 11. 27)		

< 질의요지 >

○ '95 노성제행사 성금 · 품 기탁내역

〈답 변〉

□ 현 황

- ㅇ 성금 : 157명 45,490천원
- ㅇ 성품 : 20건 69점

□ 기탁내역(별첨)

□성 금

(단위 : 천원)

연 번	주 소(직 위)	성 명	금 액	비 고
계		157	45,490	
1	용평면 용전리	박 진 선	50	
2	민족통일 강원도협의회 부회장	배 선 문	100	
3	안미국민학교장	이 효 길	50	
4	용평면 체육회장	배 희 문	100	
5	강원도민일보	김 영 기	50	
6	용평면 이목정 1리	김 용 태	30	
7	개인택시 평창군지부	김 종 완	200	
8	대한노인회 봉평면분회	김 용 래	20	
9	봉평면 평촌 1리	우 병 록	20	
10	대한 상이군경회 평창군지회	안 영 찬	30	
11	평창군의회 의원 일동		200	
12	교육위원 일동		200	
13	노성제위원회 감사	이 준 연	50	
14	강원도 교육위원	임 세 동	100	
15	평창청년회의소 회장	이 영 태	50	
16	미탄면 노인회 회장	김 용 환	20	
17	진부면 하진부 7리	전 찬 수	100	
18	평창,주진,다수,약수국민학교장		50	
19	요식업 평창군지부장		50	
20	평창읍 중2리	정 경 섭	30	

연 번	주 소(직 위)	성 명	금 액	비 고
21	대화면 번영회장	임 정 식	30	
22	봉평면장	황 보 한	30	
23	평창우체국장	차 진 용	100	
24	진부면 하진부 6리	김 부 영	100	
25	평창읍 체육회장	박 종 관	50	
26	평창읍 자율방범대장	최 병 국	50	
27	삼오정 대표	지 동 윤	50	
28	용평면 노동리	홍 석 현	100	
29	평창군 고등학교장단	고 광 신	100	
30	한국체육관 관장	정 욱 화	50	
31	재춘 평창군민회 회장	라 천 용	200	
32	용평면 번영회장	김 완 규	50	
33	대화 버스정류장	이 근 형	100	
34	평창읍 한일약국	한 영 일	100	
35	용평면 용전리	안 종 복	30	
36	평창읍 마지리	이 병 규	30	
37	대화면 창성상회	이 봉 기	30	
38	평창읍 코리아제록스	김 진 규	50	
39	진부면 청용상회	손 정 남	50	
40	오리온 프리토레이 소장	김 유 철	100	
41	평창관리소장	이 종 삼	100	
42	용평면	조 성 환	50	

연 번	주 소(직 위)	성 명	금 액	비 고
43	평창읍 하리	정 석 진	200	
44	태창 연탄공장	이 춘 우	100	
45	평창중앙라이온스클럽 회장	최 승 후	50	
46	용평면 도사리	이 두 한	30	
47	봉평면 창동 1리	박 원 석	30	
48	유성종합전기공사	윤 영 일	50	
49	평창방송중계소	송 영 일	50	
50	평창읍 상리	김 수 돈	1,000	
51	진부농업협동조합장	이 석 호	50	
52	대화농업협동조합장	권 영 록	50	
53	새마을운동 평창군지회	이 종 환	50	
54	용평클럽회장	전 명 규	50	
55	미탄면 미탄방앗간	구 종 서	50	
56	담배인삼공사 평창지점장	엄 태 섭	50	
57	원주시 일산동	박 준 정	200	
58	서라벌 사진관	손 경 락	50	
59	평창읍 하리	서 상 익	30	
60	시대종합건설(주) 대표이사	이 장 섭	2,000	
61	방림면 방림 5리	이 용 수	30	
62	장평 신흥약방	김 기 진	50	
63	평창 화약상사	이 면 기	50	
64	농수산통계 평창출장소장	최 인 태	30	

연 번	주 소(직 위)	성 명	금 액	비 고
65	대한민국무공수훈자 평창군지회	이 순 범	30	
66	원주시장	김 기 열	200	
67	평창 성업사	고 선 경	200	
68	해태음료(주)		3,000	
69	대명종합건설(주)회장	곽 영 상	100	
70	장평국민학교장		30	
71	오대산관리사무소장	이 형 우	50	
72	평창군 번영회장	임 정 규	200	
73	용평면 속사리	유 덕 연	100	
74	진부면 태풍약국	김 홍 소	100	
75	평창읍 워커힐	전 태 욱	100	
76	평창읍 하3리	김 성 래	30	
77	평창읍 극락사	자 용	200	
78	농산물검사소		50	
79	평창읍 하리	전 병 인	100	
80	평창전화국장	최 돈 각	100	
81	평창읍 하리	박 종 린	30	
82	노인회 진부면 분회장	황 상 근	30	
83	용평면	이 창 호	50	
84	용평면 재산 1리	조 도 원	50	
85	대양건설	권 상 만	100	
86	도암면 차항리	박 병 기	100	

연 번	주 소(직 위)	성 명	금 액	비 고
87	평창읍 하리	김 용 출	50	
88	진부면 고랭지종묘사	주 돈 섭	100	
89	용평면 삼양진흥(주)		500	
90	평창읍 하4리	이 창 균	50	
91	한국노동교육원 사무총장	이 득 헌	200	
92	도장애인종합복지관평창분관	심 승 로	50	
93	용평면 도사리	이 돈 한	50	
94	평창교육청 교육장	안 승 숙	100	
95	평창경찰서장	노 완 석	100	
96	도암농업협동조합장	박 병 대	100	
97	용산국민학교장		30	
98	대화라이온스클럽회장	박 용 태	100	
99	평창축산업협동조합장	이 상 국	100	
100	부녀소방대	한 근 화	50	
101	평창읍 중1리	안 영 실	30	
102	용평면 백옥포1리	신 동 선	30	
103	평창읍 영목주유소		50	
104	용평면 이목정2리	정 돈 화	50	
105	평창인쇄소	고 주 성	100	
106	평창읍 하리	유 기 현	50	
107	봉평농업협동조합장	강 충 일	30	
108	평창읍 원흥농원	원 철 환	50	

연 번	주 소(직 위)	성 명	금 액	비 고
109	봉평면 창동리	김 동 기	50	
110	봉평면 창동리	손 용 득	30	
111	대화노인회 평창읍분회장	김 동 현	20	
112	봉평면 창동4리	신 용 선	30	
113	평감 새마을금고 이사장	이 승 진	30	
114	도암면 체육회장	김 광 기	100	
115	천태종 대흥사		50	
116	국 회 의 원	김 기 수	300	
117	미탄면 번영회장	유 정 부	100	
118	평창군 부녀회장	엄 덕 순	50	
119	강원여객 평창영업소장	전 상 진	50	
120	우진 ACT(주)		200	
121	바르게살기운동평창군협의회장	이 영 태	100	
122	봉평면 창동리	박 주 택	30	
123	태창건설 대표	유 인 섭	200	
124	평창읍 느티나무가든	강 태 일	30	
125	선우건설	김 정 규	200	
126	명일종합건설 소장	최 종 구	1,000	
127	동원산업(주)		2,000	
128	진부면 체육회장	김 학 면	100	
129	평창측량		150	
130	재경군민회장		200	

연 번	주 소(직 위)	성 명	금 액	비 고
131	강원약초영농조합	박 중 숙	100	
132	현대회관		50	
133	평창 참식품	조 성 용	500	
134	이태명		100	
135	백작		100	
136	삼성중공업		5,000	
137	유성건설	김 건 하	1,000	
138	중원건설		500	
139	장풍건설		300	
140	해태음료 건설회사		2,500	
141	대림종합건설		100	
142	대도건설		1,000	
143	삼호건설	이 성 종	1,000	
144	노성제위원회 수석부위원장	곽 달 규	1,000	
145	(주)효성		900	
146	일우공영		1,000	
147	유양건설		300	
148	삼진종합		300	
149	유림건설		500	
150	신우건설		300	
151		김 연 하	200	
152	한국전업		500	

연 번	주 소(직 위)	성 명	금 액	비 고
153	관동종합		500	
154	한일산업		500	
155	아시아나개발		1,000	
156	쌍용양회공업(주)		5,000	
157	정 춘 택		2,000	

□ 성　　품

연 번	주　　소(직 위)	성 명	내　　역	비 고
계		20	69점	
1	농협평창군지부장	김 현 준	자전거 10대	
2	서울 유림광업	사　　장	자전거 10대	
3	평창군청		자전거 20대	
4	평창읍사무소		자전거 3대	
5	도암면사무소		자전거 3대	
6	진부면 체육회		식기건조기5대	
7	진부 서림호텔		애드벌룬 1개	
8	평창 만리장성		애드벌룬 1개	
9	평창 현림레미콘	임 재 호	애드벌룬 1개	
10	삼성전자 신평창대리점		애드벌룬 3개	
11	평창 LG전자		애드벌룬 3개	
12	평창합동주류	정 석 진	애드벌룬 1개	
13	평창송어장	김 수 돈	애드벌룬 1개	
14	평창농협		애드벌룬 1개	
15	장평주유소		애드벌룬 1개	
16	강원여객 장평영업소		애드벌룬 1개	
17	강원은행 대관령지점		애드벌룬 1개	
18	평창 제일감리교회		애드벌룬 1개	
19	한국전력 평창지점		애드벌룬 1개	
20	평창 중앙감리교회		애드벌룬 1개	

질 의 · 답 변 서

질 의	이 수 현 위원	답 변	평 창 군 수 (내 무 과 장)
회 의	제37회 평창군의회(정기회) 제 1 차 행정감사특위('95. 11. 27)		

《질의요지》

'95 특수활동비 및 업무추진비 예산집행 내역중에서 관선군수와 민선군수 취임이후의 예산집행 내용을 구분 작성

≪답 변≫

□ 군수 특정시책경비 집행내역

(단위 천원)

구 분	예산액 (A)	집행액					잔액	
		합 계	관 선 (1 ~ 6월)		민 선 (7 ~ 11월)		금 액 (D)	대 비 (A:D)
			금 액 (B)	대비 (A:B)	금 액 (C)	대비 (A:C)		
계	126, 600	117, 243	64, 936	51%	52, 307	41%	9, 357	8%
특수활동비	82, 000	74, 250	40, 900	50%	33, 350	41%	7, 750	9%
업무추진비	44, 600	42, 993	24, 036	54%	18, 957	42%	1, 607	4%

질 의 · 답 변 서

질 의	이 수 현 위원	답 변	평 창 군 수 (내 무 과 장)
회 의	제37회 평창군의회(정기회) 제 1 차 행정감사특위('95. 11. 27)		

《질의요지》

'95 국토대청결운동 행사 및 제12회 직원·가족체육대회 관련한 시상품 및 기념품 구입내역

≪답 변≫

1. '95 국토대청결운동 및 직원야유회 행사

(1) 기념품 (찻잔세트) 5,000원 X 414개 = 2,070,000원

(2) 시상품 ——— (3개종목) ——— 900,000원

① 닭싸움 (남·여 1 ~ 3위, 생필품) —— (6팀 36명) ——— 324,000원

- ㅇ 여자1위 : 10,000원 X 7명 = 70,000원
- ㅇ 〃 2위 : 9,000원 X 7명 = 63,000원
- ㅇ 〃 3위 : 8,000원 X 7명 = 56,000원
- ㅇ 남자1위 : 10,000원 X 5명 = 50,000원
- ㅇ 〃 2위 : 9,000원 X 5명 = 45,000원
- ㅇ 〃 3위 : 8,000원 X 5명 = 40,000원

② 노래자랑 ——— (11명) ——— 336,000원

- ㅇ 1위 (국기함 1조. 1명) ——— 42,000원
- ㅇ 2위 ~ 10위, 인기상 (가정용품, 10명) ——— 294,000원

③ 보물찾기 (생필품 4,000원 X 60개) ——— 240,000원

2. 제12회 직원 · 가족체육대회

(1) 기념품 : 신문정리함 3,000원 X 880개 = 2,640,000원

(2) 시상품 ———— 총8종목 ———— 4,810,0000원

① 0 · X 게임 (도서상품권 10,000원 X 20매) = 200,000원

② 노래자랑 시상품(국기함, 가정용품, 인기상 1 ~ 5위 · 인기상2명) = 382,000원

③ 최우수 선수상 (가정용품, 2명) = 140,000원

③ 응원상(현금, 1팀) = 200,000원

④ 종목별 1위(생필품 세트) 11,000원 X 102개 = 1,122,000원

⑤ " 2위(") 9,000원 X 102개 = 918,000원

⑥ " 3위(") 8,000원 X 156개 = 1,248,000원

⑦ 유아밤줍기 기념품(과자세트) 6,000원 X 100개 = 600,000원

질 의 · 답 변 서

질 의	이 경 진 위원	답 변	평 창 군 수 (내 무 과 장)
회 의	제37회 평창군의회(정기회) 제 1 차 행정감사특위('95. 11. 27)		

《질의요지》

평창군 인사관리규정에 준하지 않고(전보제한) 전보 발령한 사항과 이에 대한 사유

≪ 답 변 ≫

☐ **평창군 인사관리규정상의 근무기준**

- ○ 군 과장급 ——————————— 1년
- ○ 감사담당공무원 ——————————— 2년
- ○ 민원창구공무원 ——————————— 1년6월
- ○ 병사는 지방공무원 임용령에 의한 전보제한으로 2년

※ 승진임용의 경우는 전보제한에 해당되지 않음

☐ **전보제한 기간중 군에서 전보한 사례(별첨)**

☐ **읍면 소내 전보**

- ○ 읍면 소내전보권은 읍면장에게(평창군 위임조례 별표) 되어 있으며 인력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 전보제한 기간내 소내인사하는 경우가 종종 있음

현직위	성 명	전직위 근무기간	전직위	전 보 사 유
과장급 - 3명('95.8 1일자)				
사회진흥 과 장	송재명	'94.9.24 ~ '95.7.30	미탄면장	○ 민선자치단체장 출범 관련 분위기 일신
지역경제 과 장	강경석	'95.4.18 ~ '95.6.29	용평면장	○ 용평면장 공석에 따른 주민요구로 면장발령후 환원조치
		'95.6.30 ~ '95.7.30	사회과장	○ 민선자치단체장 출범 관련 분위기 일신
의회사무 과 장	이경식	'94.4.22 ~ '95.1.27	평 창 읍 부 읍 장	○ 강인수 부읍장의 도 전입으로 발탁인사
		'95.1.28 ~ '95.7.31	문화공보 실 장	○ 민선자치단체장 출범 관련 분위기 일신
계장급 - 4명('95.8.16일자)				
문화공보 계 장	전완택	'94.10.31 ~ '95.8.15	환경지도 계 장	○ 능력 및 적성에 따른 발탁인사
서무계장	신종해	'94.10.31 ~ '95.8.15	기획계장	○ 〃
기획계장	장하진	'94.10.31 ~ '95.8.15	건전생활 계 장	○ 〃
개발계장	김진영	〃	농 어 촌 개발계장	○ 〃
7급 이하 - 2명('95.8.16일자)				
지 적 과 행정7급	이대환	'94.4.22 ~ '95. 8.15	방 림 면 행정7급 (병 사)	○ 군 발탁인사
기 획 실 행정8급	김재봉	'94.7.18 ~ '95. 8.15	봉 평 면 행정8급 (병 사)	○ 〃

질 의 · 답 변 서

질 의	김 낙 운 위원	답 변	평 창 군 수 (내 무 과 장)
회 의	제37회 평창군의회(정기회) 제 1 차 행정감사특위('95. 11. 27)		

《질의요지》

평창군 인사의 기준이나 원칙에 관한 사항

≪답 변≫

- 별 첨 -

人　事　原　則

□ 根　　據

ㅇ 지방공무원법
ㅇ 지방공무원법시행령
ㅇ 평창군인사관리규정

□ 人事原則

ㅇ 昇進人事

- 년 2회 승진후보자 명부 작성 운용

- 상위직 결원시 소속공무원 중에서 승진후보자 명부서열에 의해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30조제1항 별표4의 배수 범위내에서 인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임용

- 7급 승진시는 사업소나 읍면으로 전보

- 특별분야 근무자의 경우 전문지식의 최대한 활용을 위해 당해 분야 장기근속을 원칙으로 하고 가급적 당해분야에서 승진

- 자격상실자는 당해 승진후보자 명부 작성 기간내에는 승진할 수 없음

1. 직위해제, 징계처분을 받은 자
2. 근무성적평정이 당해기간내 "가"로 평정된자
3. 교육기간중 근무태도 및 교육성적이 극히 불량한 자
4. 사회에 물의를 야기하던지 공사생활에 흠결이 있다고 판단되는 자.
5. 기타 승진이 부적합하다고 판단되는 사유가 있는 자

※ 승진임용의 범위(시행령제30조 제1항 별표 4)

임용하고자 하는 결원수	승 진 배 수
1 ~ 5	결원 1인당 4배수
6 ~ 10	결원 5인을 초과하는 매1인당 3배수 + 20인
11 이상	결원 10인을 초과하는 매1인당 2배수 + 35인

ㅇ轉補人事

- 동일직위간 전보

· 인사요인(승진·결원)발생시 당해부서에서 1년이상 근무한 자중 능력 및 적성을 고려하여 전보 - 신상필벌원칙 적용
· 인사운용상 1년 미만의 자를 전보하여야 할 경우 인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전보

- 군본청 결원 충원

· 읍면의 공무원 중에서 근무실적이 우수하고 성실한 자 중에서 충원하며 소양고사성적 3위이내의 자, 직무교육 훈련성적 우수자 순으로 발탁
· 본인이 읍면이나 현부서 근무를 희망할 경우는 발탁 보류

ㅇ問責人事

- 대 상

· 징계처분 받은 자
· 사회에 물의를 야기하거나 공사생활에 흠결이 있는 자
· 근무능력이 현저하게 떨어져 그 직무를 감당하지 못하거나 태만히 하는 자

- 인사방법
  · 인사위원회의 심의을 거쳐 타부서 전보

○ 新規任用

- 원칙적으로 읍면에 임용

○ 人事委員會

- 공무원 충원계획의 사전심의 및 각종 임용시험 실시

- 보직관리기준 및 승진·전보 임용기준의 사전 심의
  · 승진임용 기준 : 전 공무원
  · 보직관리 기준 및 전보 임용기준 : 6급이상
  ※ 심의시기는 요인발생시 임

- 승진임용의 사전 심의

- 기타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그 관장하에 속하는 사항

※ 승진, 전보, 문책등 인사기준은 평창군 인사관리규정의 범위 내에서 인사요인 발생시 마다 심의

질 의 · 답 변 서

질 의	이 경 진 위원	답 변	평 창 군 수 (내 무 과 장)
회 의	제37회 평창군의회(정기회) 제 1 차 행정감사특위('95. 11. 27)		

《질의요지》

행정구역조정 검토안 내역

≪답 변≫

□ **행정구역 조정**

○ 농촌지역의 인구감소와 시내권 지역의 아파트, 공동주택 밀집에 따른 인구과밀, 매스컴, 교통수단 발달등으로 행정구역조정을 통하여 행정능률 극대화와 주민편의 증진 및 지방자치단체 발전유도

□ **행정구역 명칭과 관할구역 조정절차**

○ 법정리 명칭과 관할구역 조정 : 도지사 승인후 지방자치단체 조례개정

○ 행정리 〃 : 지방자치단체 조례개정

○ 반 〃 : 지방자치단체 규칙개정

□ **대상지역**

○ 인구과밀지역(250세대 이상)

- 평창읍 중1리 (385세대, 1,317명)
- 진부면 송정1리 (263세대, 824명)

○ 인구감소지역(10세대 미만)

- 수청리(2세대, 6명)

□ 진행내용

○ 행정구역조정 대상지역 조사

- 기　　간 : '94. 5. 1 ~ 5.30(1개월)
- 조사대상
  · 아파트, 공동주택 신축으로 인한 인구과밀 리·반
  · 인구감소로 인한 인근지역과 통합이 필요한 리·반
- 조정결과
  · 리 조정 : 없 슴
  · 반 조정 : 통폐합 18개반, 분할 12개반

□ 향후추진계획

- 행정구역조정은 지역주민의 의사를 최대한 존중하여 결정해야할 사항이라고 보며 지역주민의견이 반영되지 않은 구역조정은 지역이기주의와 지역간 갈등등을 유발할 가능성이 있으므로

- 먼저 주민건의, 주민공감대 형성등 지역주민의 입장에서 면밀한 검토과정을 거쳐 추진되어야 할 사항이라고 봄

- 앞으로 지역주민건의등 주민이 필요하다고 인정할시는 조정절차를 통하여 행정구역조정을 추진해 나갈 계획임.

질의 · 서면 답변서

질 의	이 경 진 위원	답 변	평창군수(사회진흥과장)
회 의	제37회 평창군의회(정기회) 제1차 행정감사특위('95. 11. 27)		

<질의요지>

○ 리조트골프장 농약사용후 잔량에 대한 처리 대책

<답 변>

○ 용평골프장(회원제 + 대중)의 농약사용후 잔량에 대한 처리는 유효기간이 경과하지 않은 농약은 다음년도로 이월하여 사용하고, 유효기간이 경과된 농약과 유독물질로 지정된 농약에 대하여는 구입회사에 반품처리하고 있습니다.

○ '94년 사용잔량으로 이월된 농약은 675.5kg이며, 유독물질로 지정된 에토프입제 15kg은 '95. 8. 1. 흥농농원에 반품하였습니다.

붙임 : 농약 반품처리 공문 사본 1부.

쌍 용 양 회 공 업 주 식 회 사

(0374-35-5757)

쌍양용본 : 제 A-114호 (1995.8.1)
수 신 : 홍농농원
발 신 : 쌍용양회 공업(주)
제 목 : 농약반품처리의뢰

1. 귀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귀사에서 구입한 다음과 같은 농약품목을 평창군 산흥 82131-403(95.4.27)에 의거 유독물질로 지정된바 반품하오니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 다 음 -

품 목 명	상표명	적용해충	유효성분	단위	수량	사 유
에토프 입제	모캡	잔디금뱅이	5 %	3 Kg	5봉	製剤도 유독물질임.

첨 부 : 골프장 농약사용 관련자료 통보 (평창군 산흥 82131-403. 95.4.27) 1부

쌍 용 양 회 공 업 주 식 회 사
대 표 이 사 사 장 우 덕 창

질의 · 서면 답변서

질 의	우 강 호 위원	답 변	평창군수(사회진흥과장)
회 의	제37회 평창군의회(정기회) 예결특위('95. 12. 11)		

<질의요지>

○ 청소년지도위원 활동 실적

<답 변>

○ '95년 12월 현재 청소년지도위원은 106명으로 각지역에서 청소년 탈선 · 비행 예방, 유해환경정화등 청소년지도활동에 전념하고 있습니다.

붙임 : 청소년지도위원 활동실적 1부.

'95년도 청소년지도위원 활동 실적

읍면	계		유해업소 지도계몽		캠페인등 가두계몽		청소년선도 보호		기타 활동		지도위원수
	회수	인원	회수	인원	회수	인원	회수	인원	회수	인원	
계	255	3,363	81	768	8	770	84	1,005	82	820	106
평창읍	43	513	14	145	1	98	21	195	7	75	13
미탄면	26	333	9	68	1	95	8	90	8	80	11
방림면	23	270	6	35	1	90	6	60	10	85	11
대화면	36	505	13	130	1	100	10	140	12	135	13
봉평면	28	405	7	65	1	110	9	120	11	110	15
용평면	26	364	8	70	1	84	7	115	10	95	13
진부면	41	510	13	135	1	95	14	145	13	135	15
도암면	32	463	11	120	1	98	9	140	11	105	15